

발간등록번호

11-1130000-000290-91

본 연구는 2013년도 공정거래위원회의
연구용역사업 일환으로 연구되었음

상조시장 리스크 관리방안 연구

- 최종 보고서 -

2014. 2

연구기관 : 경희대학교 산학협력단



공정거래위원회
FAIR TRADE COMMISSION

< 연구진 >

책임연구원 : 성주호(경희대학교 경영대학 교수)

연구원 : 김상만(경희대학교 경영대학 교수)

연구원 : 김형기(연세대학교 경제대학원 외래교수)

연구보조원 : 최윤호(경희대학교 경영대학 석사 4기)

연구보조원 : 이동화(경희대학교 경영대학 석사 2기)

보조원 : 장동철(경희대학교 경영대학 학사과정)

<제 출 문>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 귀하

본 보고서를 공정거래위원회의 수탁연구과제 『상조시장 리스크
관리방안 연구』의 최종보고서로 제출합니다.

2014. 02. 08

경희대학교 산학협력단 단장 : 김영진

<목 차>

<요 약 문>	i~xxviii
I. 서론	1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1
2. 연구의 범위 및 내용	2
3. 연구의 구성	5
II. 상조시장 현황	7
1. 상조시장 일반 현황	7
1) 상조회사 현황	10
2) 상조공제조합 현황	17
2. 상조시장의 특성	20
1) 상조서비스 제공 및 현행 관리 프로세스	20
2) 상조시장의 주요 특성	22
3. 상조시장의 리스크 관리 현황	26
1) 1단계(상조회사) 리스크 관리 현황	26
2) 2단계(공제조합) 리스크 관리 현황	27
3) 상조시장의 리스크 요인(종합)	32
III. 국내·외 리스크관리 체계 벤치마크	37
1. 국내 보험업의 리스크관리 체계	37
1) 규제 체계(일반)	37
2) 1단계 규제체계	38
3) 2단계 규제체계	43
4) 시사점	51
2. 일본의 상조시장 리스크관리 체계	54
3. 미국의 상조시장 리스크관리 체계	58

IV. 상조회사의 리스크관리 개선방안	60
1. 경영체계 건전화를 위한 장기적 RM방안	60
2. 경영체계 건전화를 위한 단기적 RM방안	62
V. 상조공제조합 리스크 관리방안	64
1. 공제조합 리스크관리의 필요성	64
2. 공제조합 리스크 관리를 위한 3가지 요소	68
1) 예상손실(Expected Loss) - 공제 순보증료 산출	69
2) 미예상손실(Unexpected Loss) - 시장변동성을 반영한 경제적 자본	75
VI. 공제조합의 리스크 관리 현황 진단	78
1. 한국상조공제조합	78
1) 예상손실(Expected Loss) - 공제 순보증료 산출	79
2) 미예상손실(Unexpected Loss) - 시장변동성을 반영한 경제적 자본	84
2. 상조보증공제조합	90
1) 예상손실(Expected Loss) - 공제 순보증료 산출	92
2) 미예상손실(Unexpected Loss) - 시장변동성을 반영한 경제적 자본	96
3. 공제조합의 지속가능성을 위한 리스크 관리 방안	101
VII. 규제 방향성 제시 및 결론	103
1. 상조시장 리스크관리를 위한 규제의 방향성	103
2. 결론	105
<참 고 문 헌>	109
APPENDIX 1. 일본 할부판매법상 선불식 할부판매(상조업) 관련규정	111
APPENDIX 2. 일본 호조(상조)회 보증주식회사 업무방법서	139
APPENDIX 3. 신용평가 3사 과거 10년 부도율	149
APPENDIX 4. 타 공제조합 운영사례 : 콘텐츠공제조합	151

<표 목 차>

<표 1> 상조시장 현황(누적)	7
<표 2> 상조회사의 설립 기준(할부거래법 제18조)	12
<표 3> 부채비율별 업체 수 및 선수금(단위: 백만원) 현황	14
<표 4> 공제조합 설립규정	17
<표 5> 예치기관별 가입업체, 선수금(억원), 보전비율	18
<표 6> 할부거래법 소비자피해보상보험계약 관련 규정	21
<표 7> 할부거래법 소비자피해보상 규정	22
<표 8> 공제 담보금적용비율표	28
<표 9> 신용평가 산정을 위한 산술비율(한국상조공제조합)	28
<표 10> 담보종류별 담보제공비율표	30
<표 11> 담보제공비율표	31
<표 12> 신용평가 산정을 위한 산술비율(상조보증공제조합)	31
<표 13> 경영실태평가제도 비교	40
<표 14> 보험회사 위험기준 경영실태평가제도의 각 평가요인별 정의(생보)	41
<표 15> RAAS 종합등급별 정의	43
<표 16> Solvency I과 RBC 비교	46
<표 17> RBC 지급여력금액 산출기준	47
<표 18> 보험회사 적기시정조치 단계 및 내용	49
<표 19> 예금자보호제도 가입 가능 금융사 및 가입사 수	50
<표 20> 예금자보호보제도 가입을 위한 금융기관 납입 보험료율과 법정한도	51
<표 21> 책임준비금, 공탁준비금, 자산운용에 관한 규정	57
<표 22> 상조회사 관리·감독 단계	63
<표 23> 공제조합의 설립목적	64
<표 24> 신용평가등급에 따른 선수금예치비율 예	69
<표 25> 할부거래법 공제조합의 설립	76
<표 26> 한국상조공제조합 공제규정 제17조	79
<표 27> 신용평가기관 3개사와 한국상조공제조합 신용등급체계와 적용 부도율	81
<표 28> 한국상조공제조합 담보비율	81
<표 29> 공제 순 보증요율 산출 예	82
<표 30> 공제 순 보증요율과 현행 공제조합 담보비율과의 차이	83

<표 31> 한국상조공제조합의 신용등급별 선수금 분포	85
<표 32> 신용등급별 부도율 평균 및 표준편차	86
<표 33> 적정 경제적 자본 산출을 위한 가정 요약	86
<표 34> 한국상조공제조합 적정 보유 경제적 자본 산출예시	87
<표 35> 한국상조공제조합 적정 보유 경제적 자본 산출	88
<표 36> 상조보증공제조합 신용등급 분포	90
<표 37> 신용평가기관 3개사와 상조보증공제조합 신용등급체계와 적용 부도율	93
<표 38> 신용등급별 담보비율	93
<표 39> 공제 순 보증요율 산출 예	94
<표 40> 공제 순보증요율과 현행 공제조합 담보비율과의 차이	95
<표 41> 상조보증공제조합의 신용등급별 분포	97
<표 42> 신용등급별 부도율 평균 및 표준편차	98
<표 43> 상조보증공제조합 적정 보유 경제적 자본 산출예시	99
<표 44> 상조보증공제조합 적정 보유 경제적 자본 산출	100

<그 립 목 차>

<그림 1> 소비자피해 최소화를 위한 리스크 관리(RM)의 구분	3
<그림 2> 상조시장의 누적회원 수 비중	8
<그림 3> 선수금 규모별 총 선수금 추이, 영업사원 수	9
<그림 4> 상조회사 총 자산과 업체 추이	10
<그림 5> 상조시장 누적총자산, 자산규모별 업체수	11
<그림 6> 자본금규모별 업체 수, 자본잠식업체 추이	13
<그림 7> 자산대비 부채비율별 업체수 추이	14
<그림 8> 상조회사 지급여력비율 추이와 비율별 업체 수	16
<그림 9> 상조서비스 이해관계 프로세스	20
<그림 10> 상조서비스 이해관계 구체적 프로세스	21
<그림 11> 전통적 보험리스크 관리(RM)	25
<그림 12> 상조시장 리스크 관리의 분리 : RM 1단계, RM 2단계	26
<그림 13> 예금자보호제도와 상조서비스	33
<그림 14 > 상조시장 이해관계자에 따른 리스크 관리 프로세스	36
<그림 15> 우리나라의 지급여력기준 규제의 변천사	44
<그림 16> 예금자보호제도의 구조	50
<그림 17> 상조회사의 예금보험제도 편입 구조(안)	53
<그림 18> 소비자 보호를 위한 상조업(일본)의 Risk Management Mechanism	54
<그림 19> 소비자 보호를 위한 상조업(미국)의 Risk Management Mechanism	58
<그림 20> 향후 상조회사 재무건정성 감독 체제(안) Framework	61
<그림 21> 상조회사 지급여력비율 추이와 비율별 업체 수	62
<그림 22> 공제조합의 RM 목표	65
<그림 23> 공제조합 리스크관리를 위한 3가지 요소	66
<그림 24> 공제조합 리스크 관리를 위한 요소와 관리방안	68
<그림 25> 공제 순보증료의 분리: 공제 위험보증료와 공제 저축보증료	71
<그림 26> 회계연도 말 공제조합의 수입·지출의 예	73
<그림 27> 현재 상조공제조합 보증료 산출 체계	74
<그림 28> 보험사와 상조공제조합 보험료 구조	74
<그림 29> 적정 보유 경제적 자본	76
<그림 30> 공제 순 보증요율 산출의 네 가지 시나리오	80

<그림 31> 시장환경 악화로 인한 상조회사 부도율의 변동성	84
<그림 32> 적정 보유 경제력 자본 산출의 두 가지 시나리오	85
<그림 33> 상조보증공제조합 공제 순보증금 산출 프로세스	91
<그림 34> 공제 순 보증요율 산출의 네 가지 시나리오	92
<그림 35> 적정 보유 경제적 자본 산출을 위한 두 가지 시나리오	97
<그림 36> 상조시장 전체적 RM 방안	106

I. 서론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 상조(相助)란?
- 상조서비스의 범위는 장례, 결혼, 돌잔치, 회갑칠순잔치, 의료 및 교육(기업연수, 어학연구, 예절교육) 등 그 범위가 넓고 복잡함.
- 본 연구에서는 장례 관련 약정 현물 및 약정 용역 등을 제공하는 선불식 할부거래의 장례서비스로 한정함.
- 우리나라에서 약 30여 년 전부터 시작되어온 상조서비스¹⁾는 불확실한 미래를 대비하여 관혼상제(冠婚喪祭)와 관련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사전에 일정기간 동안 약정된 금액을 분할납부(혹은 일시납부)하여 장례사고에 대비하는 장례 현물 및 장례 인적서비스를 제공하여 왔음.
- 소비자 측면에서 상조서비스는 향후 갑자기 닥쳐올 비용부담에 대비할 수 있다는 점에서 소비자의 관심을 받으며 성장해왔음.
- 그러나 산업의 외형적 측면에서의 성장과는 반대로 산업내실 측면에서는 다양한 문제들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음. 즉,
- 상조서비스는 회사들의 해지환급금 문제, 해지 거부, 사업자 도산으로 인한 소비자 피해가 급증하여 이에 대한 대책에 지속적으로 요구되어 왔음.
- 이로 인해 2007년 12월에는 상조서비스 표준약관이 제정되었고, 2010년 9월부터 할부거래법 개정안이 시행되면서 상조업은 선불식 할부거래업자로 분류되어 공정거래위원회의 감독규제를 받게 됨.

1) 1982년 4월 설립된 부산상조개발이 국내 최초의 상조회사임.

- 2010년 할부거래법 개정 전까지 상조업은 자유업에 해당하였으며 이로 인해 상조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특별한 요건을 갖추지 않더라도 상조업을 영위할 수 있었음.
 - 그러나 할부거래법 개정 후 상조업은 선불식 할부거래업자로 지정되며 일정한 요건을 갖추고 등록하게 되어 상조업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할 수 있는 기초가 마련되었음.
- 상조회사는 중·장기적인 계약기간으로 인해 계약기간 중 발생하는 회사의 재무적, 비재무적 상태가 매우 중요함.
 - 또한 상조회사의 도산으로 인한 소비자 피해를 막기 위해 설립된 공제조합(현재 2개 사)의 경우에도 현재 납입하고 있는 담보금 수준에 대한 적정성과 리스크관리에 대한 검증이 필요한 시점임.
 - 만약 담보금 수준이 적정수준 이하라면 공제조합의 담보금 수준이 높은 상위 상조회사의 부실이 발생할 경우 공제조합의 동반 부실화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음.
 -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상조시장의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해 상조시장의 리스크 관리에 대한 필요성을 제시하고 적절한 리스크 관리방안을 제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2. 연구의 범위 및 내용

- 리스크관리(Risk Management ; RM)의 궁극적 목적은 소비자 보호에 있음.
- RM을 통해 사업자의 지속가능성(sustainable management)을 확보하는 것은 사업자와의 계약관계를 가지고 있는 이해관계자들이 피해를 입지 않고 건전한 경제활동이 가능하게 하는 것임.
- 상조시장에서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는 소비자피해 사례 또한 상조회사의 도

산·영업정지 등으로 인해 장기간 정기적으로 회비를 납부해온 소비자들이 피해를 입고 있거나, 계약의 해지를 원할 경우에 정상적인 해약환급금 지급이 되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 따라서 본 연구의 가장 궁극적인 목적 또한 소비자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RM 방안이 도출되어야 할 것임.
- 소비자 피해를 최소화 할 수 있는 RM의 개념을 소비자 계약부터 피해보상 사유가 발생 할 경우의 시점까지 간단히 나타내면 아래 <그림 1>와 같음.

<그림 1> 소비자피해 최소화를 위한 리스크 관리(RM)의 구분



- RM 1단계는 상조회사의 재무건전성 제고를 위한 RM 단계임.
 - 상조시장의 경우 보험과 유사하게 사고 발생 이전에 상조회사와 계약된 금액을 분할 납부한다는 점에서 미리 납부한 선수금이 안전하게 관리되는 것이 소비자 피해를 줄일 수 있는 RM활동이라고 볼 수 있음.
- RM 2단계는 소비자 피해보상을 위해 설립된 공제조합의 재무건전성 제고를 위한 RM 단계임.
 - 사외적립 대상인 금융기관, 공제조합에 대한 재정안전성 개념까지 포함하여 소비자의 민원발생 상황(해약환급금의 미지급·지연, 상조회사의 도산 등)이 조성될 경우에 적시에 소비자피해보상이 가능한 RM 활동 또한 포함됨.

-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프로세스에 근거하여 상조시장을 두 단계로 분리하여 각 단계의 리스크 관리방안을 제시하고자 함.
- RM 1단계에서는 상조회사가 지속가능성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리스크들에 대한 탐색과 이에 대한 관리방안을 제시함. 즉, 소비자 피해를 사전에 방지하고, 건전한 경영을 통해 상조시장의 지속가능성을 담보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 연구하고자 함.
- RM 2단계에서는 공제조합의 재무안전성을 제고하고 아울러 소비자피해보상이 필요한 경우에 일정부분 선수금을 예치한 기관으로서 이를 원만히 수행할 수 있는 적정 담보금 수준 등의 리스크관리방안을 제시하고자 함.
- 이를 위한 본 연구의 구성은 다음과 같음.
- 첫 번째로 상조시장 특성에 대해 분석함.
 - 상조시장 리스크 관리방안에 대한 연구를 위해서는 상조시장에 대한 분석과 상조시장과 유사하다고 판단되는 타 업종에 대한 비교 후 상조시장만이 가지는 특성이 제시되어야만 함.
 - 상조시장만이 가지고 있는 사업적 특성을 도출한 후 그 특성에 따른 리스크 요인들을 추출함.
- 두 번째로 상조시장과 유사한 타 업종에 대한 리스크관리체계 사례에 대해 분석함.
 - 유사업종에 대한 리스크 관리체계에 대한 사례분석을 통해 상조시장에서 도출된 리스크들에 대한 관리를 위한 Benchmark로서의 활용가능성에 대해 분석함.
- 세 번째로는 이를 토대로 한 상조회사의 RM방안을 제시함.
 - 상조시장과 유사시장의 현황과 리스크, 리스크관리체계에 대한 분석을 통해 상

조시장의 리스크 관리방안을 제시함. 부연설명하면 상조회사는 소비자 보호를 위한 제1단계 RM 대상. 즉 사전적 RM이며 공제조합은 소비자 보호를 위한 제2단계 RM 대상. 즉 사후적 RM임.

○ 네 번째로는 상조공제조합의 리스크 관리방안을 제시함.

- 소비자피해보상이라는 공제조합의 설립목적에 부합할 수 있는 지속가능한 사업 영위를 위해 공제조합 재정안전성을 유지하기 위한 2단계 RM 즉, 사후적 RM 방안을 제시함.

○ 마지막으로 도출된 리스크 관리방안을 실행에 옮기기 위한 규제 체계 개편방안을 제시함(감독방향 신설 및 필요시 법개정 포함).

3. 연구의 구성

□ 본 연구는 아래와 같이 구성됨.

○ 제Ⅱ장에서는 상조시장의 현황에 대해 알아보고 상조시장의 특성, 리스크요인들에 대해 연구함.

○ 제Ⅲ장에서는 국내·외 리스크 관리체계에 대해 분석함.

- 국내의 경우 유사시장 중 하나인 보험산업, 공제산업 등에 대해 알아보고 각 산업의 특성에 따른 리스크 관리기법 등에 대해 알아봄.
- 외국의 경우 일본의 상조시장에 대한 벤치마크를 통해 해외 선진사례를 살펴봄으로서 국내 사례와 해외사례를 통해 국내 상조시장의 리스크 관리방안이 나아가야 할 방향성을 제시하고자 함.

○ 제Ⅳ장에서는 제Ⅱ,Ⅲ장을 통해 도출된 시사점을 바탕으로 상조회사의 리스크 관리방안을 제시함.

- 제 V 장에서는 상조공제조합의 리스크 관리방안을 제시하고 제 VI 장에서는 제 V 장에서 논의된 상조공제조합 리스크 관리방안을 현재 사업중인 상조보증공제조합(한국상조공제조합, 상조보증공제조합)에 적용시켜 봄으로서 현재 공제조합의 리스크관리 수준을 진단함.

- 마지막으로 VII 장에서는 연구의 결론과 시사점을 제시함.

II. 상조시장 현황

1. 상조시장 일반 현황

□ 상조시장은 2013년 5월 현재 297개의 상조업체가 개정 할부거래법의 법적 요건을 갖춘 선불식 할부거래업자로 등록되어 있음.

- 「할부계약」이란 소비자가 사업자 또는 신용제공자에게 재화의 대금(代金)이나 용역의 대가를 2개월 이상의 기간에 걸쳐 3회 이상 나누어 지급하고, 재화 등의 대금을 완납하기 전에 재화의 공급이나 용역의 제공을 받기로 하는 계약을 의미함.²⁾ 따라서 RM의 대상은 분할납(일시금 제외)에 한해 진행됨.

<표 1> 상조시장 현황(누적)

구 분	2011년 5월	2012년 5월	2013년 5월
업체 수(개)	300	307	297
가입자 수(명)	355만	351만	349만
선수금(억 원)	21,819	24,676	28,863

출처: 공정거래위원회 보도자료, 2013.08.0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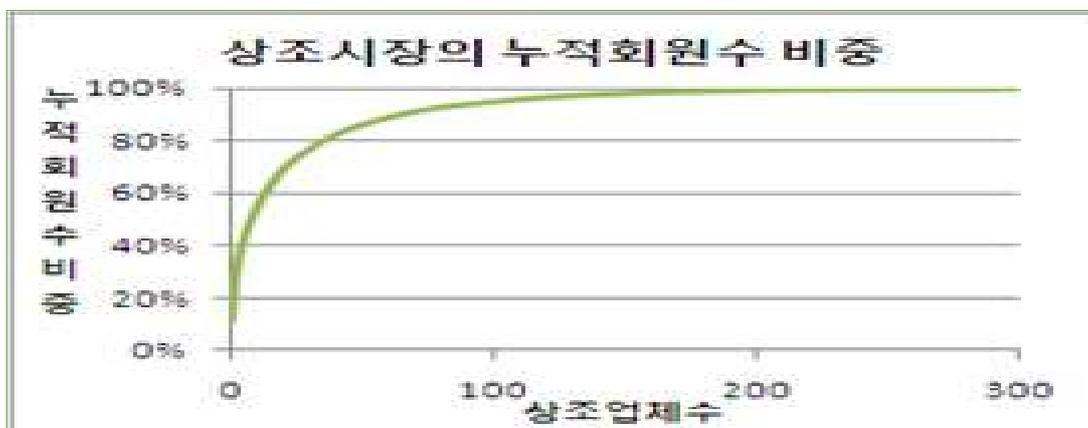
- 2013년 5월, 297개 상조업체의 가입자 수는 약 349만 명, 선수금 규모는 약 2조 8,863억 원임
- 2012년 대비 업체 수, 가입자 수는 감소(10개 업체, 2만 명)하였고, 선수금 규모는 증가(4,187억 원)하였음.
 - 업체 수의 경우 (주)보훈상조 등 6개사가 신설 되는 반면, 16개 업체가 등록 취소 또는 폐업 처리 되면서 2012년 대비 총 10곳이 감소하였음.

(1) 가입자 수 별 현황

2)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 참조.

- 상조시장의 가입자 수는 대형 상위 업체에 편중되어 있는 구조임.
- 가입자 수가 5만 명 이상인 업체 수는 '13년 5월 18개(6.1%)지만, 가입자 수는 228만 명으로 전체 가입자의 65.5%를 차지하고 있음.
 - 이들 업체의 평균 가입자 수는 약 13만 명임.
- 반면 가입자 수 1천 명 미만인 업체 수는 153개(51.5%)나 되지만, 이들 업체의 가입자 수는 4만 6,000명으로 전체 가입자의 약 1.3%에 불과함.
 - 이들 업체의 평균 가입자 수는 298명임.
- 다음 그림은 상조시장의 누적 회원 수 비중과 가입자 수 별 상조업체의 수를 도식화 한 것임(상위 회사에 대한 편중 정도를 측정함).
- 누적 회원 수 비중 그래프는 상조업체를 가입자 수 기준으로 나열하였을 때, 가장 큰 상조회사가 누적적으로 차지하는 가입자 수가 전체가입자수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어느 정도인가를 나타내는 것으로 편중 정도가 심함을 알 수 있음. 즉 규모별 편중 현상이 심함.

<그림 2> 상조시장의 누적회원 수 비중



(2) 선수금 별 현황

- 상조시장의 총 선수금은 '13년 5월 2조 8,863억 원으로 2012년 대비 4,187억 원(17%) 증가함.
- 선수금 100억 원 이상 대형업체의 선수금이 2조 1,341억 원에서 2조 5,890억 원으로 크게 증가하였음.
 - 이들 업체의 선수금 증가는 4,549억 원으로 전체 선수금 증가(4,187억 원)보다 362억 원이 많음.
- 반면 선수금 10억 원 미만인 영세업체들의 선수금은 2012년 5월(453억 원)보다 41억 원이 감소한 412억 원임.
 - 상조시장에서도 대형업체와 영세업체의 양극화(Two-Polarization)가 심화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음.

<그림 3> 선수금 규모별 총 선수금 추이, 영업사원 수



- 가입자 수와 마찬가지로 선수금 규모도 대형업체에 편중되어 있음.
- 선수금이 100억 원 이상인 업체 수는 52개(17.5%)지만, 이들 업체의 선수금은 모두 2조 5,890억 원으로, 상조업체 전체 선수금의 89.7%를 차지하고 있음.

- 이들 업체 1개당 평균 선수금은 약 498억 원임.
- 반면에 10억 원 미만인 업체 수는 155개(52.2%)이나, 이들 업체의 선수금은 모두 412억 원으로 상조업체 전체 선수금의 1.5%에 불과함.

1) 상조회사 현황

(1) 상조회사 총 자산

- 상조회사 총자산 규모는 2조 4,065억 원으로 2012년 대비 52.5%(8,281억 원) 증가함.
- 이는 총자산 100억 원 이상의 대형업체 수의 자산이 2012년에 비해 46.4%(13개) 증가한 것에 기인함.

<그림 4> 상조회사 총 자산과 업체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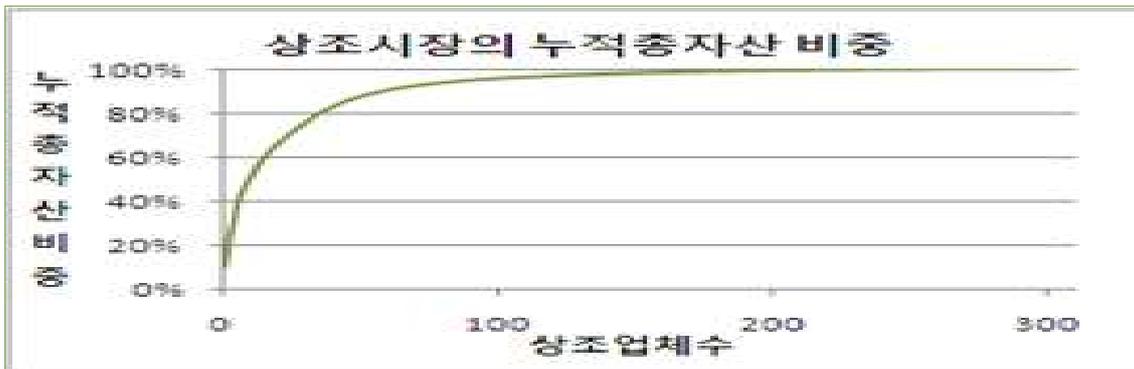
- 위의 현상과 같이 총 자산도 상위 업체에 편중되어 있게 나타남.
- 자산규모 100억 원 이상인 상조업체 수는 41개(16.1%)지만, 이들 업체의 자산 총액은 2조 570억 원으로 전체 자산의 85.5%를 차지하고 있음.
- 반면에 자산규모 10억 원 미만 상조업체 수는 120개(47.1%)나 되지만, 이들 업체의 자산총액은 520억 원으로 전체 자산의 2.2%에 불과함.

○ 자산규모 100억 원 이상인 대형업체는 자산총액 뿐만 아니라 가입자 수, 선수금 규모면에서도 전체의 80%이상을 차지함.

□ 다음 그림은 상조시장의 누적총자산 비중과 자산규모별 업체수를 도식화한 것임.

○ 좌측의 그래프는 상조업체를 자산총액 기준으로 1위부터 297위까지 나열하였을 때, 1위부터 누적적으로 차지하는 자산총액이 전체 자산총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어느 정도인가를 나타내준 것으로 곡선이 가파를수록 편중 정도가 심함을 의미함.

<그림 5> 상조시장 누적총자산, 자산규모별 업체수



(2) 상조회사 총 부채 및 자본금

□ 상조시장의 총 부채규모는 2조 8,637억 원으로 2012년 대비 39.7% (8,136억 원)증가하였음.

○ 부채규모 100억 원 이상인 상조업체 수는 52개(20.4%)지만, 이들 업체의 부채 총액은 2조 5,335억 원으로 전체의 88.5%를 차지하고 있음.

- 반면에 부채규모 10억 원 미만인 상조업체 수는 105개(41.2%)나 되지만, 이들 업체의 부채총액은 340억 원으로 전체의 1.2%에 불과함.

<표 2> 상호회사의 설립 기준(할부거래법 제18조)

제18조(영업의 등록 등) ① 선불식 할부거래업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갖추어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1. 상호·주소·전화번호·전자우편주소(영업소 및 대리점을 포함한다)·대표자의 이름·주민등록번호·주소 등을 적은 신청서
2. 자본금이 3억원 이상임을 증명하는 서류
3. 제27조에 따른 소비자피해보상보험계약등의 체결 증명 서류
4. 그 밖에 선불식 할부거래업자의 신원을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총리령으로 정하는 서류

□ 할부거래법 제18조(영업의 등록 등)에서 소비자보호를 위한 조치는 다음과 같음.

○ 등록을 위한 납입 자본금 규제: 3억원 이상 법정자본금

- 단, 상호회사의 규모를 고려하고 있지 않지 않고 등록제를 채택하고 있음
- 참고로, 우리와 유사한 일본의 경우는 상호회사의 규모별로 납입자본금을 차등 적용하고 있으며 할부거래법 제정당시에 등록제였지만 상호회사의 파산이 매년 3~4개 발생함에 따라 법 개정(1967년 개정)을 통하여 현재는 허가제를 채택하고 있음).

○ 소비자피해보상보험계약 체결 의무화: 상호계약에 따른 소비자의 선수금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로서, 상호회사의 채무 불이행 위험(default risk)을 헤지하기 위한 강행 규정으로 이해할 수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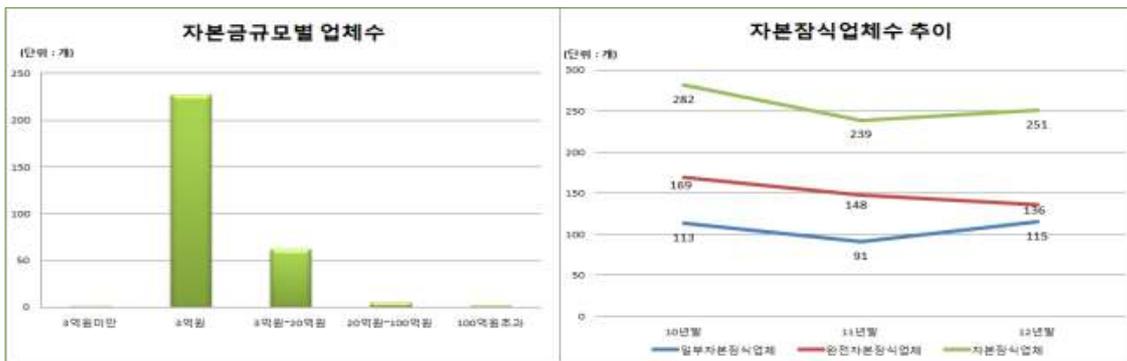
- 소비자피해보상을 위한 보험계약
- 은행과의 채무지급보증계약
- 은행, 우체국, 보험사를 통한 예치계약
- (할부거래법 제28조에 의해 설립된) 공제조합과의 공제계약
- 참고로, 우리와 유사한 일본의 경우는 “영업보증금 공탁제도” 및 “선수금보전조치”를 병행함으로써 소비자 피해를 최소화하고 있음(일본 사례에서 상술함)

○ 대부분의 업체(227개, 76%)는 법정자본금인 3억 원을 보유, 법정자본금 이상 보

유한 69개 업체의 평균 자본금 규모는 19억 원 수준임.

- 자본금 20억 원 이상인 7개 업체를 제외한 290개 업체의 평균 자본금은 3억 6,100만 원 수준임.
- 자본총계가 납입자본금에 미달하는 자본잠식업체는 총 251개 업체이며 이중 완전자본잠식 업체는 총 136개 업체로 2012년 대비 12개가 감소하였음.
- 일부자본잠식 : 자본총계가 0보다는 크고 납입자본금보다는 작은 상태
- 완전자본잠식 : 부채가 자산을 초과한 상태로 부채비율이 100% 초과
- 부채초과 현상은 고객납입금을 수익이 아닌 전액 부채로 계상하고 장래발생시 매출로 인식하는 회계처리방식에 기인한 측면이 강함.

<그림 6> 자본금규모별 업체 수, 자본잠식업체 추이



(3) 상조회사 자산 대비 부채비율

- 상조시장의 자산 대비 부채비율은 119.0%로 2012년 대비 11%p 감소하였음.
- 부채비율이 150%이상인 부실업체의 수는 전체 업체수의 29.0%로 2012년에 비해 23개 업체(4.3%)가 감소하였음.

- 규모로 살펴보면 부채비율 150%이상 업체의 선수금이 약 2,000억 원이 감소하여 상조시장의 경쟁구도 변화에 의해 재무부실 위험이 자연 감소함.

<표 3> 부채비율별 업체 수 및 선수금(단위: 백만원) 현황

구 분		0%이상 50%미만	50%이상 100%미만	100%이상 150%미만	150%이상	기타*	계
업체수 (%)	11년 말	53 (19.9)	66 (24.7)	51 (19.1)	97 (36.3)	0 (0.0)	267 (100.0)
	12년 말	43 (16.9)	62 (24.3)	63 (24.7)	74 (29.0)	13 (5.1)	255 (100.0)
선수금 (%)	11년 말	12,559 (0.5)	443,093 (18.0)	1,057,843 (43.0)	949,225 (38.5)	0 (0.0)	2,462,720 (100.0)
	12년 말	10,449 (0.4)	451,673 (15.7)	1,676,226 (58.2)	741,448 (25.7)	1,691 (0.1)	2,881,528 (100.0)

* 자산 또는 선수금 미기재업체임.

<그림 7> 자산대비 부채비율별 업체수 추이



(4) 상조회사 지급여력비율(solvency margin ratio)³⁾

□ 선수금 대비 지급여력 비율은 83.6%로 2012년 대비 4%p 개선되었음.

○ 지급여력비율은 선수금 대비 상조관련 자산비율로서 상조계약을 통해 소비자가

3) 엄밀한 의미에서 아래에 정의된 지급여력비율은 지급능력비율(solvency ratio)에 해당함. 보험권에서 사용하고 있는 재무건전성 지표인 지급여력비율은 책임준비금을 초과하여 적립하는 순자산 개념인 완충기금(buffer capital)의 충분성 여부를 측정하는 것이며, 지급여력비율이 높다는 것은 지급능력비율이 높다는 의미임.

납입한 선수금(상조회사의 관점에서 부채이며 보험회계에서는 책임준비금에 해당함)과 자본총액을 합한 금액을 고객 불입금으로 나눈 것임. 이는 장래사고 발생시, 계약 철회시 혹은 상조회사의 파산 등에 대비한 “지급보증능력”을 제공하는 지표임. 즉 상조회사의 지급여력비율을 재정의하면 아래와 같음.

- $$\text{지급여력비율}(\%) = \frac{\text{유효회원 선수금총액} + \text{순자본총계}}{\text{유효회원 선수금총액}} \times 100\%$$
 - 여기서 순자본총계는 지급여력(solvency margin)에 해당하며, 이를 충분히 확보하여야 소비자에 대한 선수금 보전 능력이 확보됨.
 - 궁극적으로 지급여력비율이 높을수록 미래에 발생할 부도·폐업(사업정지) 등 상조 관련 위험에 대응할 수 있는 지급능력이 높음을 의미함.
- 선수금 지급여력 비율이 개선 된 원인은 선수금에 비해 자산총액이 2012년에 비해 늘어난 것에 기인함.
- 현행법 상 거래형태 측면에서의 제한적 규제가 존재할 뿐 경영·재무상태에 대한 관리감독 규정은 전무한 실정임.
- 금융권에서는 매년 정기적으로 그리고 필요에 따라 수시로 금융기관의 재무상태, 경영상태를 “금융감독원”이 검증한다는 점을 고려하면 상조회사의 자산건전성 상태를 금융감독원이 평가하는 것도 하나의 대안이 될 수 있음.
- 지급여력 비율이 100% 이상으로 재무 건전성이 우수한 업체 수는 99개로 전체의 38.8%를 차지함.

<그림 8> 상조회사 지급여력비율 추이와 비율별 업체 수



(5) 소비자피해보상 법적 제도⁴⁾

□ 선불식 할부거래업자가 상조회사로 등록할 경우 계약과 관련된 선수금을 보전하기 위해 반드시 아래의 「소비자피해보상보험계약」 유형 중에서 하나 체결해야 함(할부거래법 제18조).

○ 소비자피해보상보험계약의 유형

- 소비자피해보상을 위한 보험계약
- 은행과의 채무지급보증계약
- 은행, 우체국, 보험사 등과의 예치계약
- 공제조합과의 공제계약

□ 또한 계약에 따라 **선수금보전비율**은 아래 수식과 같이 상조회사가 수취한 선수금에서 소비자에게 이미 용역 등으로 공급한 가액을 제외한 금액의 50%로 규정하고 있음.

$$\begin{aligned} \text{선수금보전금액} &= (\text{기납입 선수금총액} - \text{기 제공된 현물 및 서비스 총액}) \times 50\% \\ &= \text{잔여 선수금총액} \times 50\% \end{aligned}$$

○ 즉, 상조서비스가 제공되지 않은 상황에서 수취한 선수금의 50%(최소기준이 아니라 단일 규정으로 정의하고 있음)를 법에서 정하고 있는 금융기관과의 계약을

4) 할부거래법 제27조(소비자피해보상보험계약 등)에서 규정하고 있는 내용임.

통해 사외 예치/적립시켜야 함.

□ 따라서 현행 할부거래법에서 소비자 선수금 보호를 위한 제도적 장치(즉, 지급보증제도)는 아래와 같은 두 가지로 요약됨.

- 상조회사 사내예치를 통한 지급여력비율제도(단, 현행 법체계에서 최소 100% 이상 유지하여야 한다는 별도의 재무건전성 규정은 없음)
- 상조회사 사외예치를 통한 선수금보전비율제도(2013년은 40%, 2014년 3월부로 50%로 상향 조정됨)

2) 상조공제조합 현황

□ 상조공제조합은 할부거래법 제28조에서 설립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고 있음.

<표 4> 공제조합 설립규정

제28조(공제조합의 설립)

- ① 선불식 할부거래업자는 제27조 제1항 제4호에 따른 공제사업을 운영하기 위하여 공정거래위원회의 인가를 받아 공제조합을 설립할 수 있다.
- ② 공제조합은 **법인**으로 하며,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 ③ 공제조합에 가입한 자는 공제사업의 수행에 필요한 **출자금** 등을 공제조합에 내야 한다.
- ④ 공제조합의 기본재산은 조합원의 출자금 등으로 조성하되 **출자금은 200억 원 이상**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이어야 한다⁵⁾. 다만, 정부는 예산의 범위에서 출연(出捐)하거나 보조할 수 있다.
- ⑤ 공제조합의 설립인가 기준 및 절차, 운영 및 감독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⑥ 공제조합에 관하여 이 법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 중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제29조(공제조합의 사업)

- ① 공제조합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소비자피해보상을 위한 공제사업 및 소비자의 권익보호를 위한 공익사업
 2. 소비자피해예방과 홍보를 위한 출판 및 교육사업
 3. 시장의 건전한 발전을 위한 자율정화사업
 4.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위탁받은 사업
- ② 이 법에 따른 공제조합의 사업에 대하여는 「보험업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 공제조합은 현재 한국상조공제조합(2010.09.08 설립인가 취득), 상조보증공제

5) 할부거래법 시행령 제17조(출자금): 200억원 이상으로 단일 규정하고 있음.

조합(2010.09.18 설립인가 취득) 등 2개 공제조합이 사업을 영위 중에 있음.

- 95개사가 신용등급별로 공제조합 가입을 통해 선수금[2조 3,843억 원(전체2조 8,863억 원의 82.6%)]의 40%인 9,537억 원을 보전하고 있음
 - 2013년 최소선수금보전비율은 40%이며 2014년 3월부터는 50%로 상향 조정됨(할부거래법 제27조(소비자피해보상 보험계약 등)).
- 은행예치의 경우는 법정최소선수금보전비율 40%보다 낮은 선수금보전비율을 설정하고 있음.

<표 5> 예치기관별 가입업체, 선수금(억원), 보전비율

구 분	은행 예치	은행 지급보증	공제조합 가입	전체
업체수 (%)	203 (66.8)	6 (2.0)	95 (31.3)	304 (100.0)
선수금(A) (%)	3,617 (12.5)	1,403 (4.9)	23,843 (82.6)	28,863 (100.0)
보전금액(B)	1,394	600	9,537	11,531
선수금 보전비율(B/A)	38.5%	42.8%	40.0%	39.9%

자료: 공정거래위원회 보도자료, 2013.08.01

- 공제조합은 위 <표 5>에서 알 수 있듯이 상조회사의 31.3%가 가입해 있음에도 불구하고 선수금은 약 83%에 달하고 있음. 즉 대형 상조회사를 중심으로 공제조합 가입이 활성화되고 있음을 반증하고 있음.
- 2013년 05 기준 한국상조공제 그리고 상조보증공제 등 두 공제조합의 출자금을 포함한 담보금 총액이 2,387억원임.
 - 그러나 공제조합에 가입한 상위 5개 업체에 대한 법정선수금보전금 규모가 5,627억원인 점을 감안하면 공제조합 담보금 총액보다 두 배 가까이 큰 상황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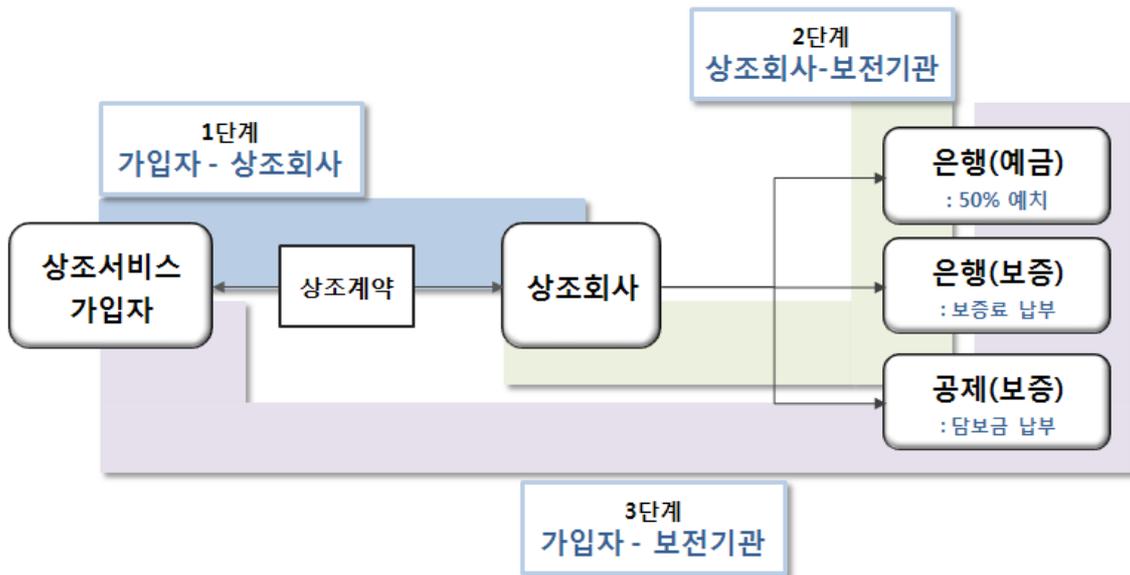
- 때문에 공제조합 가입 단계에서 상조회사에 요구하는 담보비율이 계리적 합리성에 근거하여 설정되지 않으면 향후 공제조합과 상조회사의 동반 부실화 위험이 존재하고 있는 상황임.
- 따라서 상조회사의 부도율을 반영한 외부 신용평가기관의 신용평가등급을 기준으로 합리적 담보비율을 설정하는 것이 공제조합의 리스크 관리방안일 수 있음.
- 여기서 “합리적 담보비율”은 상조회사의 신용등급(부도에 의한 공제사고율에 근거한 신용등급)을 반영한 공제 “공제 순보중요율”을 의미함(제 V-2절에서 구체적으로 다룸)

2. 상조시장의 특성

1) 상조서비스 제공 및 현행 관리 프로세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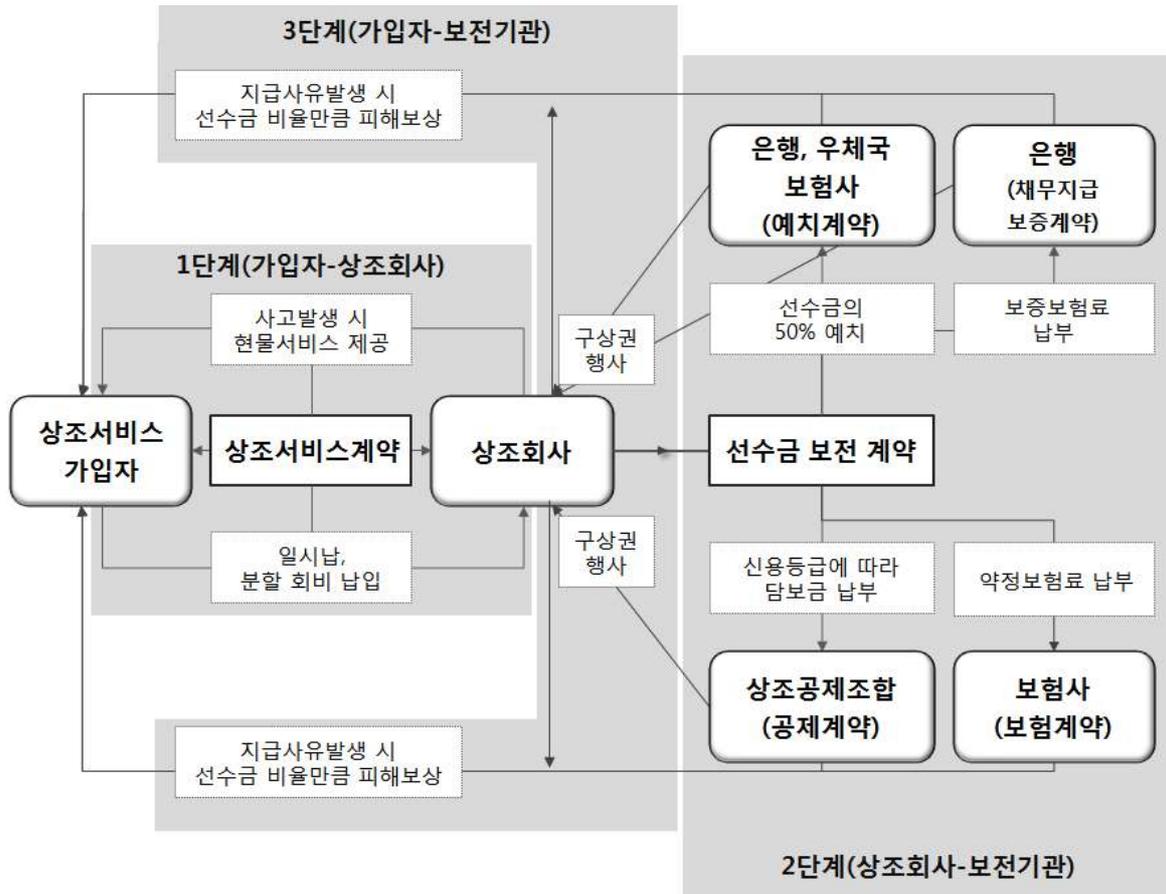
- 아래 <그림 9> 와 같이 현행 상조업의 판매 및 관리 프로세스는 이해당사자 관계에 따라 세 단계로 분류할 수 있음.

<그림 9> 상조서비스 이해관계 프로세스



- 1단계는 『가입자-상조회사』 간의 관계로서, 서비스 제공을 위한 계약체결과 회비(선수금) 납부가 이루어지는 단계임.
- 2단계는 『상조회사-보전기관』 간의 관계로서, 선수금 보전계약이 이루어지고 있는 동안 상조회사의 부도·도산으로 인한 소비자 피해를 보전하기 위한 법에 의해 규정된 사외금융기관과의 계약 관계 유지 단계임
 - 여기에서 보전기관은 해당 상조회사가 법에 규정한 사외 기관을 통하여 소비자 피해보상계약을 체결한 금융기관을 의미함.
- 위 그림을 구체적으로 표현하면 아래 그림과 같음.

<그림 10> 상조서비스 이해관계 구체적 프로세스



- 선수금보전계약자는 아래 <표 6>와 같이 할부거래법에서 규정하고 있음.

<표 6> 할부거래법 소비자피해보상보험계약 관련 규정

제27조(소비자피해보상보험계약등) ① 선불식 할부거래업자가 제18조에 따라 등록할 경우 소비자로부터 선불식 할부계약과 관련되는 재화등의 대금으로서 미리 수령한 금액(이하 "선수금"이라 한다)을 보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계약(이하 "소비자피해보상보험계약등"이라 한다)을 체결하여야 한다. <개정 2010.5.17>

1. 소비자피해보상을 위한 보험계약
2. 소비자피해보상금의 지급을 확보하기 위한 「은행법」에 따른 은행과의 채무지급보증계약
3. 소비자피해보상금의 지급을 확보하기 위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이하 "예치기관"이라 한다)과의 예치계약
4. 제28조에 따라 설립된 공제조합과의 공제계약

<시행령 제16조>

② 법 제27조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기관을 말한다.

1. 「은행법」 제2조제1항제2호 및 같은 법 제5조에 따른 금융회사
2. 「우체국 예금·보험에 관한 법률」에 따른 체신관서
3. 「보험업법」에 따른 보험회사

- 3단계는 『가입자-보전기관』 간의 관계로서, 2단계에서의 계약에 의해 소비자 피해보상 사유 발생 시(할부거래법 제27-④조에 의한 사유)에 약정된 비율만큼 예치·보증된 금액을 소비자에게 지급하는 단계임.

<표 7> 할부거래법 소비자피해보상 규정

<할부거래법 제27조>

④ 소비자피해보상보험계약등에 따라 소비자피해보상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는 자(이하 "지급의무자"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급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이를 지급하여야 한다.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지연한 경우에는 지연 배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0.5.17>

1. 선불식 할부거래업자가 폐업한 경우
 2. 선불식 할부거래업자가 「은행법」에 따른 은행으로부터 당좌거래의 정지처분을 받은 경우
 3. 제21조에 따라 등록이 말소된 경우 및 제40조에 따라 등록이 취소된 경우
 4. 그 밖에 선불식 할부거래업자의 채무불이행 등으로 인한 소비자피해보상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 ⑤ 예치기관은 제4항에 따른 지급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예치금을 인출하여 해당 선불식 할부거래업자와 선불식 할부계약을 체결한 소비자에게 우선하여 지급하여야 하며, 예치 및 예치금의 지급 등에 대한 구체적인 절차 및 방법에 대하여는 총리령으로 정한다

2) 상조시장의 주요 특성

상조시장은 할부거래법에 의해 선불식 할부거래로 분류되어 있음.

약정한 회비를 일정기간동안 납부하고, 상조회사의 지급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

상조서비스를 지급 받는다는 점에서 보험업과 유사한 면을 지니고 있음.

- 그러나 보험업과는 달리, 정해진 금액을 완납하기 전에 사망할 시에는 지불하지 못한 회비(미납 잔액)를 상조회사에 완납해야 상조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음.
 - 즉, 사후 정산하는 구조임. 따라서 장래에 제공될 장래현물 및 장래서비스와 이에 대한 회비가 동일한 收支相等(equivalence principle)의 구조라고 볼 수 있음. 보험사가 직면할 수 있는 수지불균형을 초래하는 보험료 산정 리스크(pricing risk)는 없음.
 - 엄밀하게 말하면, 미납 잔액을 일시금으로 지급하게 되면 일반 금융거래는 할인을 적용하지만 상조계약거래는 이자에 대한 별도의 개념이 없다고 볼 수 있음.
- 상조회사의 재무상태는 금융감독원의 재정검증을 받는 금융업종과 차별화되어 있음.
- 상조회사는 부채비율이 100%를 초과하는 완전자본잠식상태인 회사가 전체 상조회사의 절반을 넘는 53.3%에 달하고 있음.
- 실제로 선불식 할부거래의 특성상 고객납입금을 수익으로 인식하지 않고 부채로 처리하고 있으며 상조서비스 지급사유 발생 시 회사의 매출로 인식함.
- 따라서 상조회사는 일반적인 기업에서 사용하는 부채비율을 주된 재정건전성 지표로 활용하기에는 무리가 있으며, 안정적인 현금흐름과 영업실적, 최소한의 유동성 확보 등이 종합적으로 고려되어야 함.
- 또한 상조회사의 대부분은 영세한 사업자들로 구성되어 있음.
- 자산규모가 10억원 미만인 상조업체는 전체 상조회사 대비 47.1%(120개)에 달하나 이들의 자산총액은 전체 자산의 2.2%에 불과한 실정임.
- 때문에 적절한 리스크관리를 위한 물적·인적요건이 준비되어 있지 않은 상태라

면 열악한 재정상태로 인해 폐업·부도 등 소비자피해사례가 발생할 개연성이 높음.

- 2012년 5월부터 2013년 5월까지 소비자 피해보상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업체는 총 16개 업체임.
 - 해당 업체들은 폐업, 등록 취·말소, 파산, 당좌거래 정지 등의 처분을 받았고 이로 인해 공제조합 및 은행을 통해 피해보상금 지급을 실시하였음
- 그러나 상조회사가 대부분 영세하다는 점에서 단시간에 물적·인적·금전적 요건을 강화한다면 열악한 재정상태에 있는 상조회사의 자발적 파산으로 이어질 개연성이 높아 오히려 소비자피해가 급증할 수 있음.
- 따라서 상조업체의 영세한 현실 또한 반영하여 지속적으로 자립적인 성장이 가능한 환경이 구축되어야 함.
- 상조공제조합의 경우 타 공제조합과는 설립목적이 상이함.
- 공제조합에 가입한 가입자들의 사업에 필요한 다양한 보증, 대여사업을 수행하는 타 공제와는 달리 상조공제조합은 상조회사의 폐업·도산 등 극단적인 상황에 대한 소비자 피해보상을 목적으로 설립되어 있음.
- 따라서 선수금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을 소비자에게 보상하는 지급보증 성격의 상품만이 존재함.
- 따라서 다양한 상품판매를 통해 risk를 관리해나갈 수 있는 타 공제조합과 달리 동일한 리스크를 가지고 있는 상품만을 판매하는 형식의 구조를 띄고 있어 정밀하고 보수적인 리스크관리가 필요함.
- 즉, 보험업의 경우 담보리스크(insured risk)의 동질성(homogeneity) 그리고 대량성(large-scale), 독립성(independence)을 확보하면 리스크관리가 성공적이라고 함.

<그림 11> 전통적 보험리스크 관리(RM)



- 결론적으로 상호서비스 제공기간 간의 재무상태의 동질성이 매우 낮은 수준이고 아울러 영세 사업장의 동반 파산 등으로 인한 재무적 독립성 또한 미약한 수준임. 요약하면 참여 상호회사간의 재무적 편차가 심한 상태임. 일정 범위 이내로 재무적 편차를 줄여 나아가는 리스크관리 방안이 선행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됨.

3. 상조시장의 리스크 관리 현황

- 상조시장의 리스크 관리 측면에서 상조시장의 현황을 아래와 같이 단계별로 살펴보고자 함.

<그림 12> 상조시장 리스크 관리의 분리 : RM 1단계, RM 2단계



1) 1단계(상조회사) 리스크 관리 현황

- 상조업의 진입요건으로 자본금을 3억 원 이상을 갖추어야 하며, 진입 이후에는 고객으로부터 받은 총 선수금의 50%(현재는 40%, 2014년 3월 이후 50%로 적용)를 공제조합이나 은행 등에 예치하여 보전하도록 규제하고 있음.
- 2010년 이후, 상조업이 선불식 할부거래로 지정되어 관련규제가 도입 되었으나 아직 과도기적 단계로 판단됨.
- 자산운용에 관한 사항이나 건전성 비율에 대한 실질적인 규제가 존재하지 않음.
 - 이로 인해 대주주에 대한 신용공여(대주주의 사금고 등으로 이용)나 투기 등의 목적을 위한 무리한 자금 차입이 발생하여 업체의 부실로 이어질 수 있음.
- 진입한 상조회사의 경우 자산운용에 대한 통제는 현재 마련되지 않은 상태임.

- 다만 선수금 보전 및 자본금 규제 외에 임원과 대주주 관련 규제 및 기타 과징금 및 영업정지 사유를 정하고 있음.
 - 징역, 파산, 집행유예 등의 선고를 받은 자가 임원 및 지배주주로 있는 경우에 선불식 할부거래업자로 등록 할 수 없도록 함.
 - 소비자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설명의무, 계약해지 시 환급금 지급, 선수금 보전과 피해보상 계약에 관하여 위반행위가 발생할 시에, 시정조치를 요구할 수 있음.
 - 시정조치 요구 이후에도 위와 같은 위반행위가 반복될 시에는 1년 이내의 영업정지를 명할 수 있고, 소비자에게 심한 불편을 주는 행위나 공익을 해할 우려가 있는 행위에 대하여 과징금을 부여할 수 있음.
- 전반적으로 상조회사의 재무건전성을 제고하고 아울러 상조시장의 지속적인 발전을 도모하는 리스크 관리 방안이 필요

2) 2단계(공제조합) 리스크 관리 현황

- 국내 상조 공제조합은 한국상조공제조합, 상조보증공제조합 2 곳이 있으며 각각의 공제조합에서 자체적으로 상조회사에 대한 신용평가를 수행하여 적정 담보금 수준을 결정하고 있음.
- 신용평가율이 낮을수록 담보금 수준은 상승하며 일정 수준 이하로 평가될 경우 공제조합은 상조회사의 가입을 거부하고 있는 실정임.
- 한국상조공제조합은 다음의 식을 활용하여 담보금 수준을 설정하고 있음.
 - 담보금
 - = 선수금 × 선수금보전비율 × 담보금 적용 비율 × 담보종류별 담보 제공 비율
 - 산출 프로세스는 제VI장에서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있음.

- 담보금적용비율은 상조회사에서 자체적으로 실시한 신용평가를 기준으로 다음과 같이 적용이 되고 있음.

<표 8> 공제 담보금적용비율표

신용평가율	담보금 적용비율	신용평가율	담보금 적용비율
100%	20%	85%	30%
99%	20.5%	84%	31%
98%	21%	83%	32%
97%	21.5%	82%	33%
96%	22%	81%	34%
95%	22.5%	80%	35%
94%	23%	79%	36.5%
93%	23.5%	78%	38%
92%	24%	77%	39.5%
91%	24.5%	76%	41%
90%	25%	75%	42.5%
89%	26%	74%	44%
88%	27%	73%	45.5%
87%	28%	72%	47%
86%	29%	71%	48.5%
		70%	50%

자료: 한국상조공제조합(2014.02)

- 신용평가율은 아래 표와 같이 다섯 가지의 변수를 가중평균하여 산출함.

<표 9> 신용평가 산정을 위한 산술비율(한국상조공제조합)

신용평가 항목	계약고대비 자산비율	선수금대비 유동자산비율	정상불입 구좌비율	임직원 대여금규모	지급 수수료율
비율	50%	17%	8%	12.5%	12.5%

- 계약고대비자산비율은 계약고대비 자산총액과 향후 불입 받을 금액을 합산한 금액과의 비율임.
- 선수금대비금융자산비율은 공제계약자의 선수금규모대비 금융자산 비율임.
- 정상불입구좌비율은 공제계약자가 보유한 전체구좌 중 정상불입구좌(연체기간

이 3회차 미만인 구좌)의 비율임.

- 임직원 대여금 규모는 공제계약자가 자사의 임직원에게 대여한 금액규모임.
 - 지급수수료율은 상품판매 대비 판매원에게 지급한 수당 비율임.
- 또한, 한국상조공제조합은 담보제공 방법에 따라 상조회사가 납입해야 하는 담보금 수준에 차등을 주고 있음: 출자금(출자증권) 혹은 담보금(현금)
- 출자금(출자증권)으로 담보를 제공할 경우, 현금으로 담보를 제공할 때 보다 더 적은 양의 담보금 수준을 설정하여 상조회사들의 출자를 유도하고 있음.

<표 10> 담보종류별 담보제공비율표

신용평가율	담보종류별 담보제공비율 (%)	
	출자증권	현금
100%	50	100
99%	51	101
98%	52	102
97%	53	103
96%	54	104
95%	55	105
94%	56	106
93%	57	107
92%	58	108
91%	59	109
90%	60	110
89%	62	111
88%	64	112
87%	66	113
86%	68	114
85%	70	115
84%	72	116
83%	74	117
82%	76	118
81%	78	119
80%	80	120
79%	82	121
78%	84	122
77%	86	123
76%	88	124
75%	90	125
74%	92	126
73%	94	127
72%	96	128
71%	98	129
70%	100	130

○ 출자금을 담보금으로 대체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아울러 출자금으로 납입하도록 유도하는 현행 한국상조공제합의 문제점은 제V장 및 제VI장에서 상술하도록 함.

□ 한편 상조보증공제조합은 한국상조공제조합 보다 단순한 프로세스를 가지며 다음의 식을 활용하여 담보금을 설정하고 있음.

○ 담보금 = 선수금 × 담보제공비율

- 산출 프로세스는 제VI장에서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있음.
- 한국상조공제와는 달리 담보유형에 따라 조정율을 거치지 않고 신용등급을 활용한 담보제공비율을 선수금에 반영하여 최종 담보금을 산출하고 있음.
- 상조보증공제조합은 자체적으로 신용평가율을 산정하여 신용등급을 평가하고 이를 기준으로 등급별로 담보제공비율을 차등 설정하고 있음.

<표 11> 담보제공비율표

신용평가율(%)	신용등급	담보비율(%)
94.3 %	1등급	15.0%
91.6 %	2등급	15.5%
88.9 %	3등급	16.5%
86.2 %	4등급	17.5%
83.5 %	5등급	19.0%
80.8 %	6등급	20.0%
78.1 %	7등급	21.5%
75.4 %	8등급	22.5%
72.7 %	9등급	24.0%
70.0 %	10등급	25.0%

- 신용평가율은 계약고 대비 자산비율, 선수금 대비 유동자산 비율, 정상불입구좌 비율, 자산대비 임직원 대여금 규모, 모집수당 비율을 가중평균하여 산출함. 한국상조공제조합과 유사한 지표를 기준으로 상조회사의 신용평가를 수행하고 있으며 다음의 비율로 가중평균 함.

<표 12> 신용평가 산정을 위한 산술비율(상조보증공제조합)

신용평가 항목	계약고대비 자산비율	선수금대비 유동자산비율	정상불입 구좌비율	임직원 대여금 규모	모집수당 비율
비율	50%	12.5%	12.5%	12.5%	12.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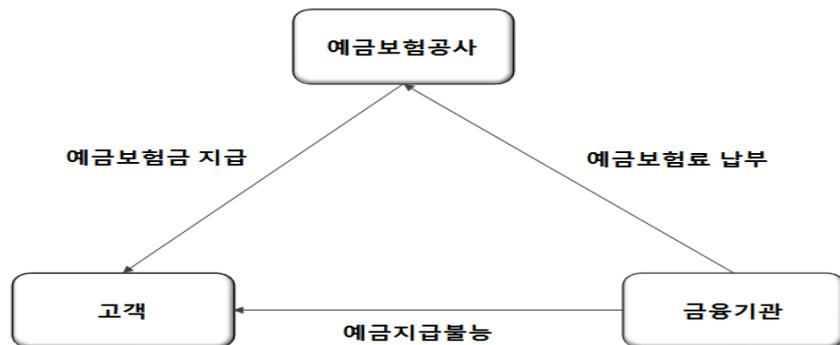
- 공제조합 자체적으로 상조회사에 대한 신용평가를 수행하여 담보금 수준을 설정하고 있으나 추가적으로 수지상등 원칙에 근거하여 적정 수준의 담보금을 산정할 필요성이 있음.
- 즉, 상조회사의 부도율을 고려하여 공제조합이 소비자에게 지급할 금액을 산정하여 해당 수준만큼의 적정 담보금을 산출해야 함.

3) 상조시장의 리스크 요인(종합)

- 상조시장의 리스크를 1단계(상조회사)와 2단계(공제조합)로 구분하여 정리하면 다음과 같음.
- 1단계의 리스크 요인은 상조회사의 재무건전성이 주된 리스크 요인임.
- 소비자피해가 발생하지 않고 정상적인 상조서비스가 제공되기 위해서는 가장 첫 번째로 상조회사가 가입자에게 상조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재무건전성이 유지되어야 함.
 - 또한 소비자가 계약기간 중 계약해지를 요구할 경우, 표준약관에 명시되어 있는 해지환급금 규정을 준수하여 정상적으로 해지환급금을 지급하고 계약을 종료시킬 수 있는 능력을 지속적으로 보유하고 있어야 함.
- 마지막으로 소비자피해방지를 위해 규정되어 있는 선수금 예치규정에 맞는 선수금 비율을 지속적으로 유지할 수 있는 능력을 확보하고 있어야 함.
 - 이러한 요인들은 결국 상조회사의 재무건전성 확보로 귀결되며, 이를 위한 리스크 관리방안이 제시되어야 함. 단, 영세한 상조회사의 현실이 반영되어 점진적인 리스크 관리방안이 도출되어야 할 것임.

- 2단계의 리스크 요인은 상조공제조합의 재무건전성을 제고하는 것임. 즉, 적절한 담보금, 자기자본을 유지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리스크 관리요인임.
- 공제조합의 역할은 금융회사의 채무불이행 위험에 대한 예금자보호기능(예금자 보호법에 의한 예금보험공사의 기능)과 유사함.
- 은행 예치의 경우 예금의 성격이므로 규정상 요구되는 선수금 비율을 모두 납입하고, 소비자피해발생 시 예치되어 있는 선수금을 소비자에게 지급하는 구조이므로 정기적으로 금융감독원의 재무건전성 지표 관리를 받은 은행은 명목상으로 채무불이행 리스크(default risk)가 매우 미약하다고 볼 수 있음.
- 그러나, 상조회사가 은행에 예치하는 일종의 법인 계약이므로 해당 은행이 파산할 경우 사후적 보전장치는 없음. 즉, 예금 등 5,000원 한도에서 부분 보장하는 예금자보호제도에 제외됨.
- 따라서 명목상으로 법인 계약이지만 경제적 약자가 상조회사의 회원인 점. 그리고 예치금은 원금과 해당이자에 대한 보장이 필요하므로 신탁예치가 아닌 점 등을 고려한다면 중장기적으로 예금자보호제도에 편입되도록 제도적 개선이 필요함.

<그림 13> 예금자보호제도와 상조서비스



- 예금자보호제도 속에 상조서비스 관련 이해관계자를 아래와 같이 대응시킬 수 있음. 즉,
 - 『고객 → 상조서비스계약자』,
 - 『예금 → 선수금』,
 - 『금융기관 → 상조회사』 그리고

『예금보험료 → 상조산업 채무 불이행 리스크를 반영한 단일 순보험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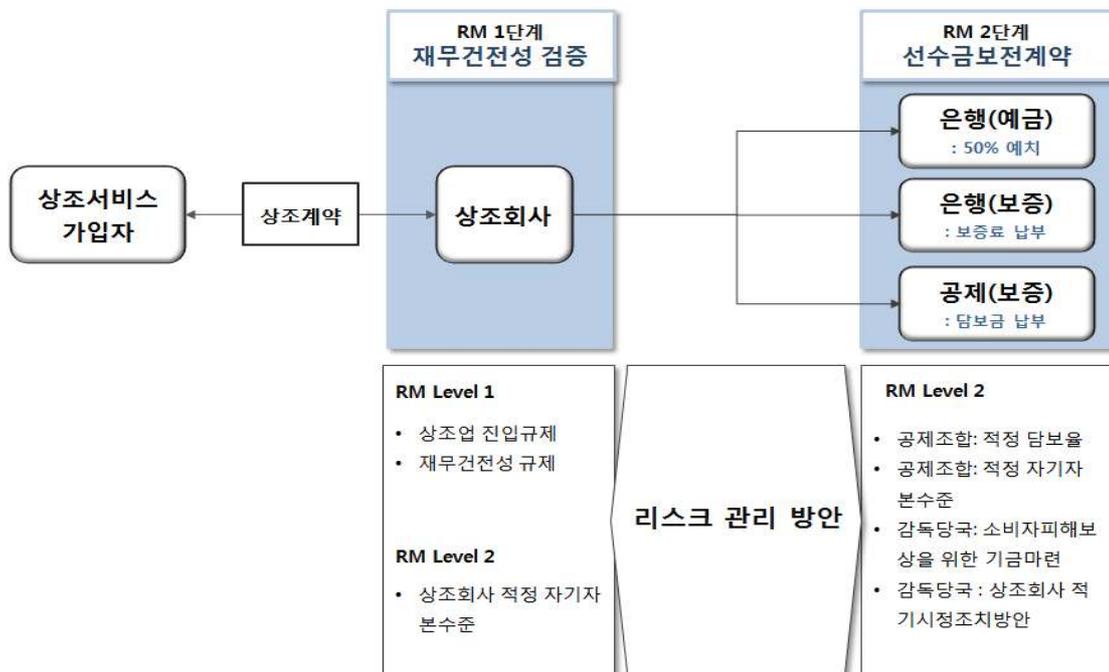
『예금보험금 → 상조회사 파산시 유효계약의 잔여 선수금 지급(단, 5천만원 지급 한도 설정)』

- 실제로 금융기관의 퇴직연금계약 또한 법인계약이지만 원리금을 보장하는 확정 기여형 퇴직연금제도는 예외적으로 예금자보호제도에서 보호되고 있음(예금자보호법 개정을 통하여 2009년 4월 27일부터 편입됨)
 - 또한 보증의 경우에도 공제조합을 제외한 예치기관(은행 등)은 관련 감독당국의 강력한 규제를 받고 있어 가입한 상조회사의 파산으로 인한 동반부실화 가능성은 매우 낮음.
 - 그러나 공제조합은 자체 신용평가를 통해 산출된 등급에 의해 선수금의 50%보다 낮은 담보비율을 설정하고 있어, 예금의 기능이 아닌 보증의 기능을 수행하고 있음(제VI장에서 구체적으로 설명함).
 - 이에 따라 상위 상조회사의 부실화가 발생하거나 다수의 상조회사가 동시다발적으로 파산할 경우 소비자 피해액이 공제조합의 보상가능금액을 초과할 가능성이 높음.
- 마지막으로 상조서비스 가입자의 대부분은 영세한 소득계층이 많을 것으로 예상된다.
- 상품가액이 수백만 원 이하이고, 중복으로 가입할 수 없는 상품으로서 향후 일어날 수 있는 상황에 대한 경제적인 안정을 담보하는 상품임.
- 때문에 소액을 분할납부하여 향후 발생할 수 있는 가정의례에 대비하여 적금상품에 가입했다고 볼 수 있음.
 - 이로 인해 상조회사의 서비스 이행불능상태 또는 해지환급금 지급불능 상태가 될 경우 금액의 크기 여부와 관계없이 소비자 민원으로 작용할 개연성이 높음.

- 그러나 상조관련 민원만을 전문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 공적 기구는 존재하고 있지 않은 실정임. 현재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에서 다른 소비자민원과 함께 처리하고 있음. 참고로, 현재 금융감독원의 관리 감독을 받은 금융기관의 소비자민원은 금융감독원 “금융분쟁조정위원회”에서 사후적으로 민원을 접수 및 처리하고 있음.
- 따라서 소비자 보호를 위한 사전적 리스크관리(재무건전성 관련) 및 사후적 리스크관리(민원관련)의 중요성은 매우 높다고 볼 수 있음.
- 최우선적으로 사후단계의 리스크를 관리에 앞서 공제조합의 지속가능한 사업을 영위하기 위한 적정담보금과 자기자본 수준(지급능력 유지)을 설정해야 함.
-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상조시장 전반의 리스크 요인들에 대한 현행 규정은 거의 없다고 볼 수 있음.
- 현행법 상 거래형태 측면에서의 제한적 규제가 존재할 뿐 경영·재무 상태에 대한 관리감독 규정은 전무한 실정임.
 - 현행 등록제에는 일정 자본금, 선수금보전계약 등의 요건만 갖출 경우 쉽게 선불식 할부거래사업자로 등록할 수 있어 부실업체 진입의 차단이 어려운 상태임.
 - 실제로 2013년 5월 기준 2조 8,863억 원의 선수금 중 선수금보전계약에 따른 40%를 제외한 나머지 1조 7,300억 원에 대해서는 규제 공백상태에 놓여 있음.
- 또한 등록업체의 재무상태(부채, 지급여력 비율 등)가 악화되더라도 자산운용을 통제하거나 경영개선(증자를 통한 재무건전성 제고 등)을 유도할 법적근거가 없음.
- 2012년 회계감사 결과 ‘국민상조’ 등 3개 업체가 ‘기업존속 불확실’ 진단을 받는 등 대형업체의 재무부실 또한 심각하지만 이를 통제할 수 있는 적절한 수단이 없는 상황임.

- 다만 상조업체들이 민간기업이고 보험법 등을 통해 허가요건, 설립관련 규제 등 상당부분이 법에 의해 규제받는 금융회사와는 차이가 존재
- 공제조합 또한 자체 신용평가를 통한 담보금 예치 비율 산정과정을 제외하고는 적절한 리스크 관리 수단이 없는 상황임.
- 이러한 상조시장의 특성을 반영한 상조시장의 전체적인 리스크 관리 내용을 정리하면 아래 그림과 같음.

<그림 14 > 상조시장 이해관계자에 따른 리스크 관리 프로세스



- 결론적으로, 상조시장의 이해관계자 중 상조회사, 상조공제조합의 현재 리스크 관리체계는 다소 미흡한 수준으로 이에 대한 리스크관리체계의 확립이 매우 중요하다고 볼 수 있음.
- 상조회사의 경우 부도·도산 시 서비스 가입자뿐만 아니라 공제조합까지 연쇄적인 피해를 입을 수 있다는 점에서 지속적인 재무건전성이 요구됨.
 - 공제조합의 경우 소비자피해보상이라는 목적에 부합할 수 있는 담보금을 확보하여 소비자의 신뢰를 받을 수 있는 재정안전성을 확보해야 함.

Ⅲ. 국내·외 리스크관리 체계 벤치마크

- 우선 상조시장 리스크관리체계를 구축하기에 앞서 유사업종으로 분류할 수 있는 보험산업의 리스크관리체계를 살펴보고 다음으로 일본, 미국 등의 상조시장 리스크관리 체계에 대해 순차적으로 살펴보고자 함.

1. 국내 보험업의 리스크관리 체계

1) 규제 체계(일반)

- 금융시장의 변동성 증대, 복잡하고 다양한 금융기법들의 출현으로 인해 보험회사 리스크관리의 중요성은 최근 매우 증대되어 왔음.
- 특히,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보험회사에 대한 자본적정성 규제가 크게 강화되면서 향후 정밀한 리스크 측정을 통한 자본적정성 유지가 중요해질 것으로 예측되고 있음.
- 이에 따라 금융감독원은 2003년 3월부터 사전적, 예방적 감독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리스크 중심 감독체계가 시작되었음.
- 보험산업의 경우 상호회사와 같이 선수금 예치 등에 대한 프로세스가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상조시장에 그대로 적용시키기는 어려우나, 상조시장의 각 이해관계자에게 요구되는 리스크 관리방안을 기준으로 판단하였을 때 아래와 같이 구분할 수 있음.
- 본 연구의 1단계(상조회사)에 대한 보험업의 리스크 관리는 보험산업의 진입에 대한 규제체계와 건전성 평가를 위한 정성평가인 RAAS로 대표할 수 있음.
 - 2007년 4월 리스크 평가제도(Risk Assessment and Application System ; RAAS)가 도입되어 기존의 경영실태평가와 2011년 4월부터 병행 실시된 후 2012년 말부터 본격적으로 실시됨.

- 2단계(공제조합-소비자피해보상)는 자기자본규제를 위한 정량평가인 RBC와 예금자보호제도로 구분할 수 있음.
 - 위험기준 자기자본제도(Risk Based Capital ; RBC)제도를 2009년 4월 도입하여 기존의 EU식 지급여력제도와 병행 실시하였으며, 2년 뒤인 2011년 4월부터 본격 시행됨.
 - 예금자보호제도는 금융기관이 영업정지나 파산 등으로 고객의 예금을 지급하지 못하게 될 경우 해당 예금자는 물론 전체 금융제도의 안정성도 큰 타격을 입게 됨에 따라 이러한 사태를 방지하기 위하여 고객들의 예금을 보호하는 제도임.
- 따라서 다음 절에서는 상조시장의 1-2단계 프로세스를 기준으로 보험산업의 리스크관리 현황에 대해 살펴보고자 함.

2) 1단계 규제체계

가. 보험업 진입규제

- 보험업법 제4조(보험업의 허가)에서는 보험업을 영위하고자 할 경우, 보험종목별로 금융위원회의 허가를 받아야한다고 명시⁶⁾하고 있음.
- 제4조 제6항에서는 보험업의 허가를 받을 수 있는 법적형태를 주식회사, 상호회사 및 외국보험사로 제한하고 있음.
- 보험업법 제6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주식회사 및 상호회사의 사업허가 요건은 자본금 및 기금 요건, 전문 인력과 전산설비 등의 물적 시설 요건, 사업계획의 타당성, 대주주 요건으로 나눌 수 있음.

6) 보험종목별 허가제도는 2000년 보험업법 개정에 도입되었음, 개정 전에는 생명보험업과 손해보험업 두 가지로 구분하여 보험업을 허가해 왔음

○ 자본금 및 기금 요건

- 보험업 개시요건으로 300억 원의 자본금 또는 기금 납입을 규정하고 있으며, 일부 보험종목만을 취급하는 회사의 경우 최저 50억 이상의 범위 내에서 대통령령으로 자본금 또는 기금 달리 할 수 있음(보험업법 제9조 제1항).
- 다만 전화·우편·컴퓨터통신 등 통신수단을 이용하여 보험을 모집하는 보험회사는 일반적인 보험업 개시요건 자본금 또는 기금의 2/3 상당하는 금액 이상을 납입함으로써 보험업을 시작할 수 있음(보험업법 제9조 제2항).
- 여기서 통신판매전문회사란 보험료의 90% 이상을 전화, 우편, 컴퓨터 통신 등을 통하여 모집하는 회사임.

○ 전문 인력 및 물적 시설 요건

- 전문 인력·물적 시설의 세부요건으로는 준법감시인, 선임계리사, 손해사정사, 전산전문 인력, 그 밖에 영업·계약·보전·보험금 지급 등 보험업무 수행에 필요한 전문 인력을 갖추어야 함(보험업감독규정 제2-6조).
- 만약 손해사정업무, 보험계약 심사 관련 조사 업무, 보험금 지급심사 관련 보험사고 조사업무, 전산설비의 개발·운영 및 유지·보수에 관한 업무 중 하나를 외부위탁 하는 경우 그 업무와 관련된 전문 인력과 물적 시설을 갖춘 것으로 인정하고 있음.

○ 사업계획의 타당성

- 보험업법감독규정에서는 사업계획의 세부요건에 관한 기준을 다음과 같이 구분하고 있음(감독규정 별표3).
 - 사업계획서는 합리적이고 실현가능성 있게 작성될 것.
 - 지급여력비율 100%를 지속적으로 유지할 수 있을 것.
 - 지급여력비율 유지 및 사업계획의 추진에 소요되는 자금은 차입(후순위채무

포함)으로 조달하여서는 아니 되며, 조달자금의 출처가 명확할 것.

- 내부통제기준이 마련되어 있을 것.

나. 위험기준 경영실태평가제도 (Risk Assessment and Application System ; RAAS)

□ 위험기준 경영실태평가제도는 기존의 경영실태평가 제도를 보완하여 건전성을 판단하는 지표로 개발되었음.

- 기존의 경영실태평가는 평가시점의 자산건전성 및 보험금 지급능력(지급여력)을 중심으로 평가가 이루어짐. 이로 인해 보험회사의 리스크에 대한 평가가 불가능하고, 재무실적의 변화에 따른 리스크를 체계적으로 반영할 수 없었음.
- 이와 달리 위험기준 경영실태평가제도는 과거 경험데이터를 활용하여 미래에 일어날 수 있는 리스크를 측정하여 미래의 손실 가능성을 중심으로 평가가 이루어짐.
- 보험업법 시행령 제66조 “경영실태 및 위험에 대한 평가”에 의거하여 경영실태 평가와 위험평가로 구분하여 별도로 운영되고 있음.

<표 13> 경영실태평가제도 비교

	과거 경영실태평가	현행 위험기준 경영실태평가
접근방식	과거 회귀적(Backward Looking) 규정위주(Rule Based) 포괄적 접근	미래지향적(Forward Looking) 리스크 중심(Risk Based) 리스크별 접근
감독방식	사후평가 및 사후교정	사전예방
중점지표	경영성과	미래 손실 가능성
활용방식	현장검사	상시 감시
평가주기	종합검사 주기	연 또는 종합검사 주기
조치방식	위규사항 제재	취약부분에 대한 사전조치

- 평가대상은 모든 보험회사(외국보험회사 국내지점 포함)를 대상으로 하되, 영업 개시 후 만 2년 미경과시 및 소규모 또는 정리절차 진행 등으로 평가의 실익이 적다고 판단되는 경우 감독원장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평가대상에서 제외가 가능함.
- 위험기준 경영실태평가에서는 보험회사의 리스크와 경영부실요인을 평가하기 위해 보험사의 리스크를 <표 14>와 같이 7가지로 분류하고 각 부분별로 계량·비계량평가를 통해 종합적인 리스크 등급을 산정함.
 - 경영관리리스크(비계량평가만 실시), 보험리스크, 금리리스크, 투자리스크, 유동성리스크, 자본적정성, 수익성
- 비계량평가의 경우, 평가항목별 점검사항(Check list)을 개발하여 이를 중심으로 평가함.

<표 14> 보험회사 위험기준 경영실태평가제도의 각 평가요인별 정의(생보)

구분	주요내용	계량평가항목	비계량평가항목
① 경영관리 리스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이사회, 경영진 및 내부통제의 적정성 등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리스크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이사회, 경영진 적정성 • 리스크관리체계의 적정성 • 비재무리스크관리의 적정성 • 내부통제의 적정성 • 일반관리의 적정성 • 보험사기 방지실태의 적정성 • 소비자보호 업무의 적정성
② 보험리스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보험회사의 고유 업무인 보험계약의 인수 및 보험금 지급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리스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보험가격리스크 : 보험료 산출 시 적용된 예정 위험률과 실제 발생위험률간의 차이로 인한 손실의 발생 또는 손익의 변동 가능성 - 준비금리스크 : 지급준비금과 실제 보험금 지급액간의 차이로 인한 손실의 발생 또는 손익의 변동 가능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보험가격리스크 비율 • 손해율(위험보험료 대 사망보험금 비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보험리스크 관리의 적정성 • 손해율 분석 및 관리의 적정성

③ 금리리스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미래의 이자율 변동과 자산·부채 만기구조의 차이 등으로 보험회사의 순자산가치가 하락할 위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금리리스크 비율 • 부담이자 대 투자영업이익 비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금리리스크 관리의 적정성 • 자산-부채 종합관리 및 준비금 관리의 적정성 	
④ 투자리스크	시장리스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가, 금리, 환율 등 시장가격 변수의 변동에 따른 단기매매 자산의 가치하락으로 인한 손실위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신용·시장 리스크비율 • 변액보증리스크 비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신용리스크 관리의 적정성 • 시장리스크 관리의 적정성 • 자산건전성 분류의 적정성 • 대주주와의 거래 적정성
	신용리스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거래상대방의 채무불이행 또는 신용등급 변화 등에 따른 자산 가치의 하락위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부실자산비율 • 대손충당금 적립률 	
⑤ 유동성리스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미래에 현금의 지급능력이 부족하여 지급불능 상태에 빠지거나 비정상적인 조달비용 상승으로 인한 손실위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유동성리스크 비율 • 유동성 비율 • 수지차비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유동성리스크 관리의 적정성 • 유동성 변동요인의 적정성 • 자금조달 및 운용구조의 합리성 	
⑥ 자본적정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예상하지 못한 손실이 발생할 경우 이를 충당할 수 있는 적정 수준의 자기자본을 보유하지 못함으로써 지급여력비율이 규제수준(100%)에 미달하게 될 위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급여력비율 • 기본자본지급여력비율 • 자기자본지급여력비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급여력비율 변동요인의 적정성 • 자본적정성 관리정책의 타당성(위기상황분석 포함) • 자본구성의 적정성 및 향후 자본증식 가능성 	
⑦ 수익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손익구조변동 위험, 수익성 개선 또는 지속가능성 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리스크 대 수익비율 • 운용자산이익률 • 영업이익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손익구조 변동요인의 적정성 • 리스크 대비 손익 관리정책의 적정성(내재가치 분석 포함) • 수익성 개선 또는 지속가능성 	

자료 : RAAS 해설서(금융감독원) 재구성

○ 7개의 평가부분은 5등급 체계(1~5등급)로 평가하고, 종합등급은 크게 5등급으로 평가함.

〈표 15〉 RAAS 종합등급별 정의

평가등급	정의
1등급 (우수) (Strong)	리스크가 손실로 현실화될 가능성이 매우 낮으며 손실로 현실화되더라도 전반적인 재무상태에 악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매우 낮음
2등급 (양호) (Satisfactory)	리스크가 손실로 현실화될 가능성이 낮으며 손실로 현실화되더라도 자체적인 자본 및 리스크관리체계 등이 양호하여 전반적인 재무상태에 악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낮음
3등급 (보통) (Less than Satisfactory)	리스크가 손실로 현실화될 가능성이 다소 있으며 리스크관리체계가 일부 미흡하여 리스크가 손실로 현실화될 경우 재무상태에 악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다소 잠재되어 있음.
4등급 (취약) (Deficient)	리스크가 손실로 현실화될 가능성이 다소 높고 동 리스크를 확인 및 감시하는 통제기능이 취약하거나 손실을 흡수할 수 있는 자기자본 등이 취약하여 전반적인 재무상태에 상당한 악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음.
5등급 (위험) (Critically deficient)	리스크가 손실로 현실화될 가능성이 매우 높거나 일부 현실화 되었을 뿐 아니라 리스크관리체계 및 손실흡수능력이 취약하여 전반적인 재무상태에 중대한 악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높거나 악영향이 일부 현실화됨

자료 : RAAS 해설서, 금융감독원

- 2011년 4월에는 기존의 경영실태평가와 리스크 평가제도 일원화를 추진하여 평가부분을 간소화시키고, 다음절에서 설명할 자기자본규제인 RBC제도와의 연계를 강화하고자 하고 있음.

3) 2단계 규제체계

- 보험산업에서 2단계는 적정수준의 자기자본 유지를 요구하는 자기자본규제와 보험사의 지급불능사태 발생 시 원리금보장상품에 한하여 제공되는 예금자보호제도로 나눌 수 있음.

가. 자기자본규제(Solvency I , Risk Based Capital ; RBC)

- 자기자본규제(지급여력기준)제도란 금융회사에 예상하지 못한 손실이 발생하더라도 이를 충당할 수 있는 자기자본을 보유하도록 하는 제도로서,
 - 자기자본비율이 높을 경우 보험사의 안정성을 확보할 수 있으나, 너무 높을 경우 자기자본을 증가시키기 위한 발행비용과 투자의 기회비용을 잃을 수 있음.
 - 따라서 지속적으로 적정수준의 자기자본을 유지하는 것이 자기자본규제의 목적임.
- 보험회사에서 지급여력은 보험계약자에 대한 보험금지급의무를 이행을 위해 필요한 자산(책임준비금) 외에 추가로 보유하도록 한 순자산을 의미함
 - 즉, 지급여력금이란 보험회사가 예측할 수 없는 리스크의 발생에 대비할 수 있는 일종의 충격흡수장치(buffer)또는 잉여금(surplus)이라고 할 수 있음.
 - 다만 지급여력비율이 100%에 미달한다고 하더라도 바로 지급불능상태에 빠지는 것은 아니나, 보험계약자를 보호하기 위해 필요한 최소 자기자본비율을 의미함.
- 우리나라의 경우 1991년 3월 도입된 담보력 확보기준이 지급여력제도의 시초이며 이후 아래와 같은 과정을 거쳐 현재에 이르게 됨.

<그림 15>우리나라의 지급여력기준 규제의 변천사



- 특히, EU식 지급여력제도(Solvency I)제도는 보험산업의 리스크를 고려한 지급여력기준을 적용하여 자본적정성을 규제하기 시작하였고, 더욱 정밀한 리스크

관리를 위해 현재 RBC(Risk Based Capital)제도가 시행중에 있음.

① EU식 지급여력기준(Solvency I)

- 1998년 외환위기 발생 이전에는 지급여력과 해약식 책임준비금을 비교하여 지급여력을 평가(생보)하거나, 보유위험료가 보험계약자 잉여금의 일정 비율을 초과하지 못하도록 규제하는 방식(손보)으로 지급여력을 규제해왔음.
- 그러나 1998년 외환위기 이후 금융회사에 대한 감독수준을 국제기준에 부합되도록 개선할 필요성과 IMF의 권고에 따라 1995년 5월부터 EU에서 적용하고 있던 지급여력 제도(solvency I, EU식 지급여력제도)를 도입함.
- Solvency I 은 준비금 혹은 보험금의 일정비율을 규제자본으로 설정하는 방식.
 - 책임보험금의 4%, 위험보험금의 0.3% 수준을 더한 수치에 일정비율(100%)을 곱하여 지급여력기준을 산정하는 방법으로서 100%이상 유지해야 함.
 - 단, 당시 보험회사는 일정비율을 감당할 수 있는 회사가 없어 매년 20%씩 5년간 단계적으로 상향조정됨.
- Solvency I 도입으로 인해 1999년 이후 15개 생보사와 3개 손보사가 계약이전, M&A를 통해 구조조정이 이루어지는 등 보험 산업의 건전성을 확보할 수 있는 초석이 되었음.
 - 보험사의 재무건전성 악화에 대한 조치수단인 적기시정조치와 연계를 통해 보험사의 재정건정성을 확보하고자 하였음.
- 또한 지급여력비율을 산출하는 방식이 간단하고 용이하다는 장점으로 인해 과거에 많이 사용되어 왔음.

② 리스크기준 자기자본제도(RBC ; Risk Based Capital)

- 기존의 규제방식인 solvency I 은 단순하여 운용의 편리성은 있으나 보험회사가 최근 직면하게 된 다양한 리스크를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필요한 자본금을 산출하지 못한다는 한계점이 대두되었음.
- 이로 인해 유럽은 solvency I 을 보완하기 위한 solvency II 를 진행 중에 있으며, 미국, 캐나다, 호주, 일본 등은 solvency I 에서 위험기준 자기자본규제 방식인 RBC방식으로 전환하였음.
- 우리나라 또한 2009년 4월부터 2년간 시범운영 후 2011년 4월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되었음.
- 기존의 규제방식인 Solvency 1과 현행 규제방식인 RBC의 주된 차이점은 아래 표와 같음.

<표 16> Solvency I과 RBC 비교

구분	Solvency 1	RBC 비율	차이점
분자	지급여력금액(①)	가용자본(①)	
분모	지급여력기준금액(②) - 보험위험액 · (생보) 위험보험금× 0.3% 내외 · (손보) 보유보험료×17.8% 수준 - 자산운용위험액 · 책임준비금 × 4%	요구자본*(②) - 보험위험액 - 금리위험액 - 신용위험액 - 시장위험액 - 운영위험액	- 보험·금리·시장·신용 위험액 정교화 - 운영위험액 추가
산식	(①/②)×100	(①/②)×100	

주) 요구자본 = $\sqrt{\text{보험}^2 + (\text{금리} + \text{신용})^2 + \text{시장}^2} + \text{운영위험액}$

자료 : 금융감독원 RBC 해설서

- RBC제도는 Unexpected Loss가 발생하거나 자산가치가 하락하더라도 보험사가 보험계약자에 대한 채무를 충분히 이행할 수 있도록 보험금지급 의무의 이행을 위해 필요한 자산(책임준비금) 외에 추가로 순자산을 보유하도록 규제하는 제도임.

- RBC비율은 지급여력금액을 지급여력기준금액으로 나눈 비율로서 보험회사의 재무 건전성을 측정하는 핵심지표로 현재 보험업권에서는 RBC비율을 100% 초과 유지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지급여력기준금액은 보험회사가 채무이행을 위해 보유해야 하는 기준액으로 경험통계 및 위험도 등을 감안하여 합리적으로 산출한 금액임.
 - 또한 자산운용별로 리스크를 보험리스크, 금리리스크, 신용리스크, 시장리스크, 운영리스크로 세분화함으로써 금융시장의 변동 등에 적절히 대응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 RBC 제도는 <표 11>와 같이 가용자본(available capital)과 요구자본(required capital)을 산출하여 가용자본을 요구자본으로 나눈 RBC비율로 본적정성을 평가함.
 - 가용자본은 보험회사가 예상치 못한 손실에 직면할 경우 이를 보전하여 지급능력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는 버퍼(buffer)로 자본금과 잉여금 등으로 구성됨.
 - 반면, 요구자본은 보험회사가 직면해 있는 보험·금리·시장·신용·운용위험액의 규모를 측정하여 산출된 필요 자기자본을 의미함.
- 가용자본은 기본자본에서 보완자본을 차감한 다음 자산성이 없는 차감자본을 공제하고 자회사 자본부족분을 반영하여 산출됨.

<표 17> RBC 지급여력금액 산출기준

구분	주요 항목	
	생보사	손보사
지급여력금액	• 합산항목(1) - 차감항목(2) + 자회사 자본부족(3)	
(1) 합 산 항	기본 자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자본금, 자본잉여금(누적적우선주와 신종자본증권 발행금액은 제외), 이익잉여금, 기타포괄손익누계액 • 신종자본증권 발행금액 중 자기자본의 15% 이내 • 관계기업 또는 종속기업(집합투자기구는 제외) 투자주식에 지분법을 적용한

목		평가금액에서 장부가액을 차감한 금액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순보험료식 보험료적립금에서 해약공제액 및 부채적정성평가 관련 추가적립 금액을 차감한 금액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저축성보험료 중 해지 시 환급될 금액을 초과하여 적립된 금액
	보완 자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정상·요주의로 분류된 자산의 대손충당금 및 대손준비금 • 후순위채무액·신종자본증권 발행금액 중 자기자본의 15%를 초과하는 금액 • 계약자이익배당준비금, 배당보험소실보전준비금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계약자배당안정화준비금 • 계약자지분조정의 매도가능금융 자산 평가손익 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비상위험준비금 관련 이연법인세부채
(2)차감항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미상각신계약비, 영업권 등 시장성을 측정하기 곤란한 무형자산 • 선급비용, 이연법인세자산, 지급이 예정된 현금배당액 • 지분법적용 관계·종속기업 투자주식의 장부가액이 공정가액을 초과하는 금액 • 신용위험 변동으로 인한 금융부채의 누적미실현평가손익 • 미처리결손금 등으로 자본재 적립하지 못한 고정이하 보유자산에 대한 대손준비금 상당액 • 주식할인발행차금, 자기주식(종속기업인 사무집합투자기구에서 투자한 자기주식포함), 부의 지분법자본변동 		
(3) 자회사 자본부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자본적정성 기준에 따라 산출한 자본부족 금액 중 지분율 상당액 • 자본적정성 기준이 없는 자회사의 순자산 부족 금액 중 지분율 상당액 		

자료: 보험회사 위험기준 자기자본제도 해설서, 금융감독원(2012.10)

③ 적기시정조치

□ 금융위원회는 금융기관의 부실화를 예방하고 건전한 경영을 유도하기 위하여 해당금융기관이나 임원에게 적기시정조치의 내용을 권고, 요구 또는 명령하거나 이행계획을 제출할 것을 명하도록 포괄적으로 규정하고 그 기준을 고시하도록 되어있음.

□ 보험회사의 적기시정조치를 발동하기 위한 재무건전성 판정은 보험업법 제123조의 재무건전성 유지와 시행령 제65조의 재무건정성 기준에 근거하여 보험업감독규정에서는 보험산업의 적기시정 조치에 대해 규정하고 있음.

□ 이에 의하면 재무건정성을 지급여력비율과 경영실태로 평가하여 총 3단계(경영개선 권고, 경영개선 요구, 경영개선 명령)의 조치를 내리고 있으며 이를 이행하지 않을 시 보험업 전부정지 또는 보험업 허가를 취소할 수 있음.

○ 위에서 언급하였듯이 현재 지급여력비율은 RBC 기준으로 산출되고 있음.

□ RBC에서 요구하고 있는 지급여력비율이 기준에 미치지 못하거나 위험기준 경영실태평가 기준에 부합하지 못하는 경우에 적기시정조치를 통해 보험회사의 재정건전성을 유지하도록 규제하고 있음.

<표 18> 보험회사 적기시정조치 단계 및 내용

구분	적용기준	조치사항	이행기간
경영개선 권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급여력비율 50~100% 미만 • 경영실태평가등급 3등급 이상으로 지급여력 또는 자산 건전성 4등급(취약)인 경우 	자본금조정, 사업비감축, 요율조정 등 자구노력조치	1년
경영개선 요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급여력비율 0~50% 미만 • 경영실태평가등급 4등급(취약) 이하인 경우 	점포폐쇄제한, 보험업일부정지, M&A 및 계약이전 계획 수립	1년6개월
경영개선 명령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부실금융기관 지정 • 지급여력비율 0% 미만 	주식소각, 6월 이내 보험업 전부정지, 계약이전, 양도, M&A	금융위가 정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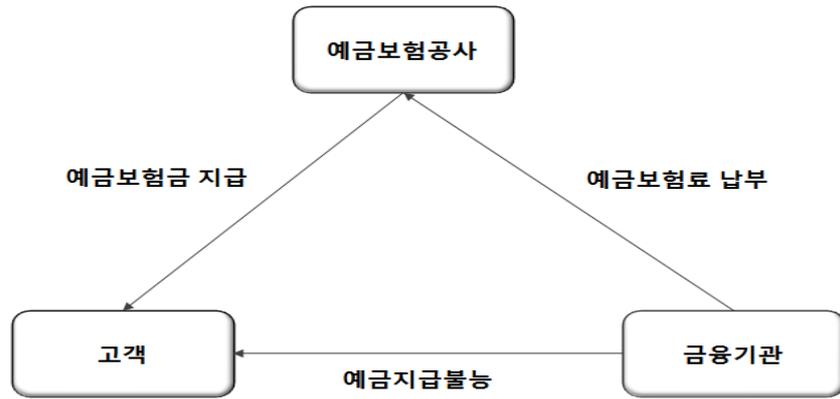
주) 거래금융사고, 부실채권발생으로 단계별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에도 적기시정조치를 적용함.

자료: 보험산업 진입 및 퇴출에 관한 연구(2012), 보험연구원

나. 보험계약자보호제도 : 예금자보호법

□ 예금자보호법은 금융기관 개인 소비자(법인은 해당사항 없음)가 금융회사의 영업정지 또는 파산 시 예금자보호법에 의해 예금보험공사가 평상시 피보험기관인 금융회사로부터 받아 적립해둔 예금보험료로 지급불능이 된 금융회사를 대신하여 예금 등을 지급하는 제도임.

<그림 16> 예금자보호제도의 구조



- 예금자보호법에 의해 예금보험료를 수취하고 예금지급 불능사태 발생시 보험금을 지급하는 주체는 예금보호공사임.
- 예금자보호제도에 가입할 수 있는 금융회사는 아래 표와 같음.

<표 19> 예금자보호제도 가입 가능 금융사 및 가입사 수

구분		국내	외국	기타	계
은행		17	40	0	57
투자매매업자·투자중개업자	증권	50	12	0	62
	자산운용	43	6	0	49
	선물	2	0	0	2
	기타	4	1	0	5
	합계	99	19	0	118
보험회사	생명보험	18	7	0	25
	손해보험	15	7	0	22
종합금융회사		1	0	0	1
상호저축은행 및 상호저축은행중앙회		90	0	0	90
계		240	73	0	313

자료 : 예금보험공사(2014.02)

□ 가입한 금융기관이 납부해야 할 보험료는 아래 표와 같음.

<표 20> 예금자보호제도 가입을 위한 금융기관 납입 보험료율과 법정한도

구분	은행	증권	보험	종금	저축은행
보험료율	0.08	0.15	0.15	0.15	0.4
법정한도	0.5				

자료 : 예금보험공사(2014.02)

□ 보험회사의 파산 등으로 지급불능상태가 발생할 경우 금융회사별 1인당, 모든 예금보호 금융상품의 원금과 이자를 포함하여 최고 5천만 원 한도로 보호받을 수 있음⁷⁾. 단, 원금손실이 가능한 투자형 상품(신탁상품, 변액보험 등)은 보호대상이 아니며 아울러 개인 금융소비자를 보호하는 법의 취지에 따라 법인 계약 또한 보호대상이 안됨.

□ 예금보험은 개인 예금자를 보호를 위한 공적보험이기 때문에 금융회사가 납부한 예금보험료만으로 예금을 대신 지급할 재원이 부족할 경우에는 예금보험공사가 직접 채권(예금보험기금채권)을 발행하는 방법을 통해 재원을 조성하게 됨.

4) 시사점

□ 중장기 과제로 은행 예치금에 대해서 현행 예금자보호제도 적용을 검토할 필요성이 있음.

○ 상조회사가 은행에 예치하는 일종의 법인 계약이므로 해당 은행이 파산할 경우 제도적 보증장치는 없음.

○ 그러나 경제적 약자가 상조회사의 회원이며 아울러 예치금은 원금과 해당이자에 대한 원리금보장형 상품이므로 신탁자산으로 보기 어려움. 이러한 점을 강조한다면 예금자보호제도에 편입될 개연성은 충분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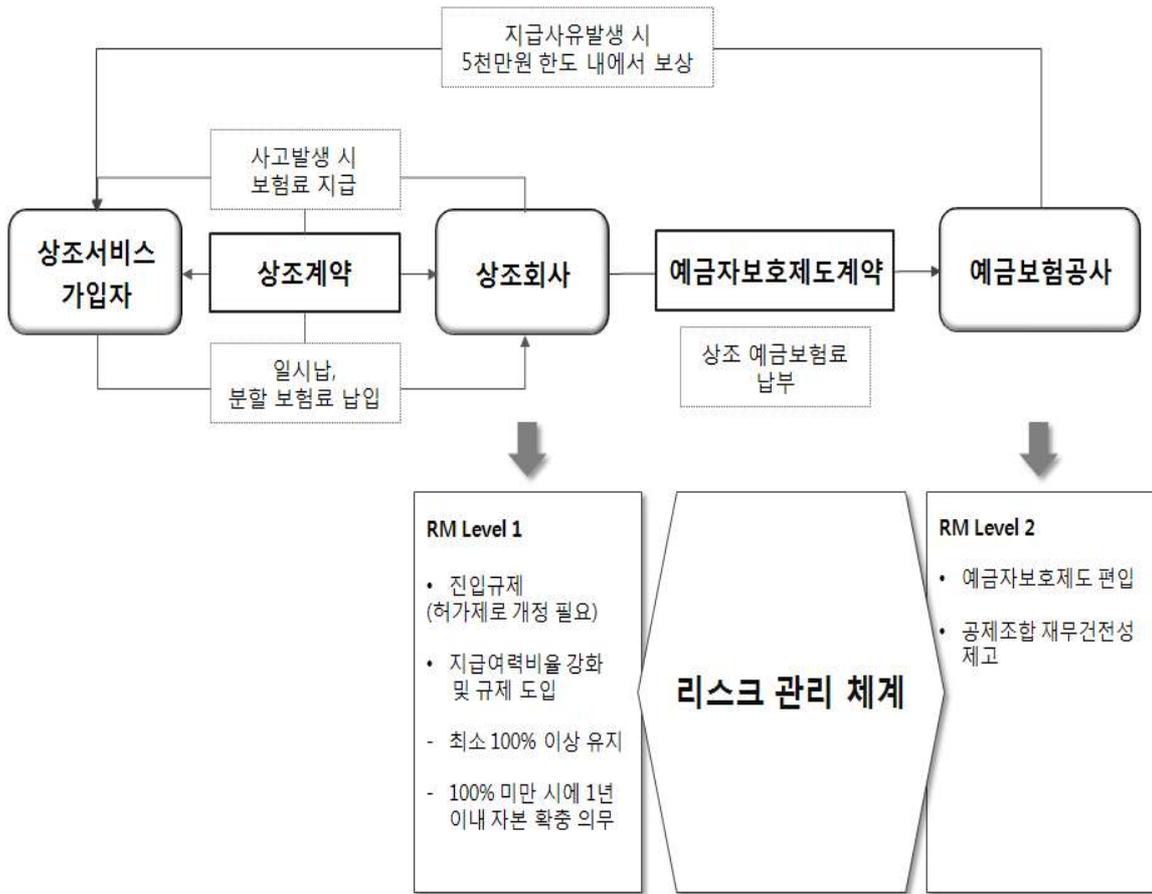
7) 예금자보호법 제30조 및 제32조

□ 다음으로 상조회사의 대부분의 회원이 소액의 선수금을 예치하는 경제적 약자라는 점을 감안한다면, 상조회사 자체를 예금보험제도에 편입하는 방안을 모색할 수 있음(아래 그림 참조). 이는 향후 금융감독원의 감독 체계에 편입될 가능성을 열어 두는 효과가 있기에 우선적으로 다음 사항을 강제화할 필요성이 있음.

- 현행 지급여력비율에 대해 최소 기준을 적용
: 100% 이상 유지 의무를 부여함. 이에 미달할 경우 일정기간 이내에 자본확충하는 재정안정화 계획서 제출의무를 부여하는 방안 등
- 상조시장 진입규제를 강화
: 현행 등록제를 허가제로 개정할 필요성이 있으며 납입 자본금(현행 규정은 상조회사의 규모와 관계없이 획일적으로 3억원 이상을 요구하고 있음)의 적정성에 대한 검토가 필요함.
- 상조공제조합의 재무건전성 제고
: 공제조합의 납입자본금(현행 규정은 공제조합의 규모와 관계없이 획일적으로 200억원 이상을 요구하고 있음)의 적정성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며 또한 담보금 수준의 적정성에 대한 검토가 요구됨(제VI장에서 상술함)

□ 마지막으로 RASS제도, RBS제도 등은 상조시장이 단일상품 시장이라는 점 그리고 금융감독원과 같은 정기적 재무건전성 검증기관이 없다는 점 등을 감안한다면 이들 제도는 현 단계에서 도입을 검토할 필요성은 없다고 판단됨. 이상의 논의를 도식화하면 다음과 같음.

<그림 17> 상조회사의 예금보험제도 편입 구조(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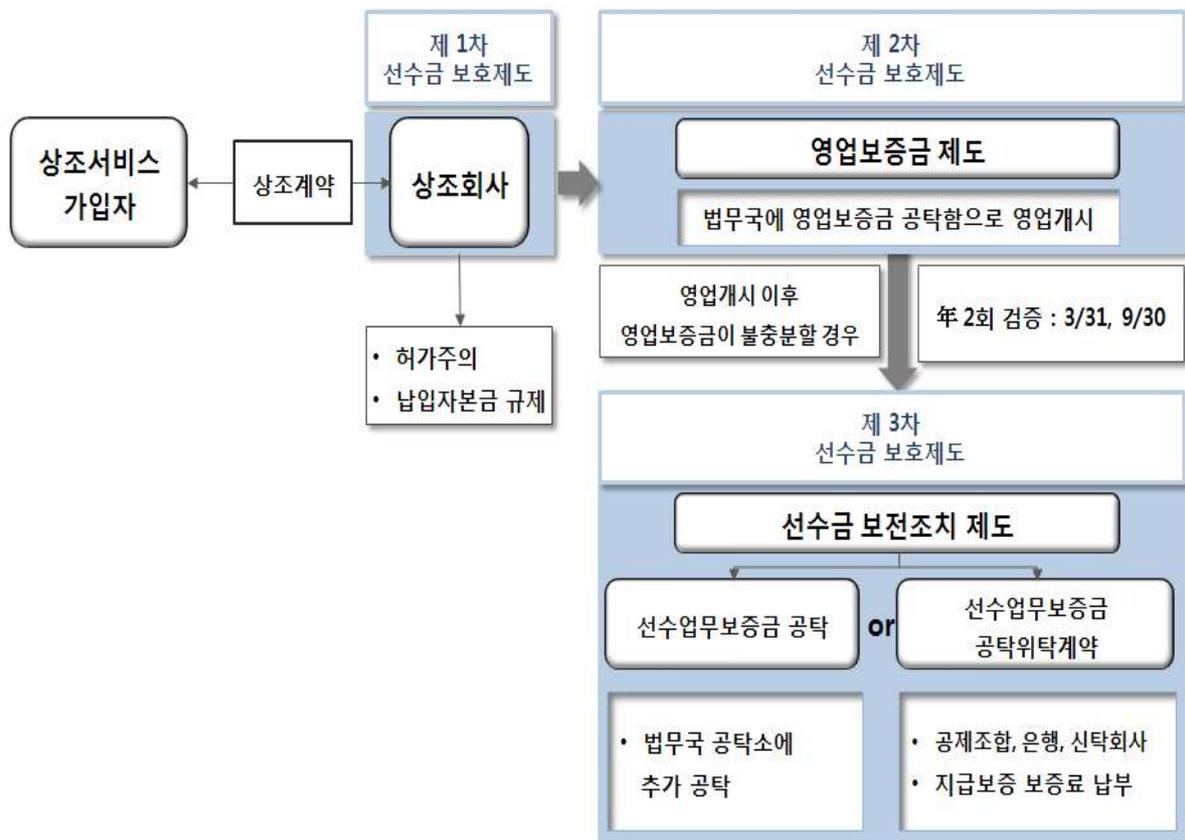
2. 일본의 상조시장 리스크관리 체계⁸⁾

□ 일본의 상조시장은 우리나라 유사하게 상조회사를 유사금융기관으로 정의하여 높은 진입장벽과 지속적인 재정안정성을 검증하는 것이 특징임.

○ 아래 그림에서 알 수 있듯이, 소비자의 선수금을 보호하는 제도적 장치는 3단계로 구성되어 있음.

- 제1차 선수금 보호제도: (상호회사 영업규모별) 납입자본금 규제
- 제2차 선수금 보호제도: (상호회사 영업규모별) 영업보증금 공탁제도
- 제3차 선수금 보호제도: (영업보증금이 불충분 경우) 선수금보전조치제도

<그림 18> 소비자 보호를 위한 상조업(일본)의 Risk Management Mechanism



8) 자세한 사항은 APPENDIX 4 참고

- 상조시장의 진입규제는 상조서비스 가입자가 납부한 선수금을 보호하기 위한 1차적 장치로서 회사 설립요건, 자본금요건, 영업개시 요건으로 구분할 수 있음.
 - 설립요건은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음.
 - 첫 번째 요건은 개인이 아닌 법인이어야 함(등록제가 아니고 허가주의 채택).
 - 두 번째 요건은 총자산에서 총부채를 차감한 금액(즉, 순자산)이 납입자본금의 90% 이상의 금액이어야만 함(즉, 납입자본금의 자본 잠식은 최대 10%까지만 허용한다는 의미).
 - 최소 납입자본금 요건은 영업 규모에 따라 차등적용(「할부판매법」 시행령 제3조)
 - 50개 이상의 영업소(대리점)를 보유한 업체: 1억 엔
 - 10~50개 미만의 영업소(대리점)를 보유한 업체: 5천만 엔
 - 10개 미만의 영업소(대리점)를 보유한 업체: 2천만 엔
 - 마지막으로 영업 개시 요건은 다음과 같음.
 - 영업개시를 위해서는 정부 법무국의 공탁소에 일정 금액의 영업보증금을 공탁해야 하며 그 사본을 경제산업성 장관에 제출함. 즉,
 - 주된 영업소(대도시 등)의 경우: 한 개 당 10만 엔
 - 기타 영업소, 대리점의 경우: 한 개 당 5만 엔
 - 만약 추가적으로 영업소를 개설할 경우 추가적으로 위에 해당하는 영업보증금을 공탁해야 하며 영업소를 철수할 경우 철수하는 영업소 수 만큼의 보증금을 되돌려 받을 수 있음.
- 일본 상조회사의 선수금 보전조치는 年 2회 상조회사의 재정안정성 즉, 영업보증금의 적정성을 검증하는 규제를 두고 있음.
 - 3월 31일, 9월 30일 2회에 걸쳐 영업보증금의 적정성을 검증하게 되는데, 적정한 수준의 기준은 해당 시점에서 수취한 선수금의 50%를 영업보증금으로 공탁하였는지를 검증함. 이를 위반 시에 선수금보전조치를 강구하여 경제산업성 장관에게 보고하지 않으면 검증 기준일로부터 50일이 경과한 후에는 새로운 상조계약을 체결할 수 없음.

- 만약 영업보증금이 선수금의 50%에 미치지 못할 경우 추가공탁 또는 공제조합, 은행, 신탁회사 등 특정 금융기관에 선수금을 보전하는 공탁위탁계약을 체결해야 함. 이를 위반할 경우 경제산업성 장관의 상조업의 허가를 취소 혹은 3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신규 상조계약을 금지할 수 있음.
 - 한편 영업보증금이 선수금의 50%를 초과할 경우 초과분에 대해서는 계약을 해제할 수 있음.
- 즉, 일본 상조회사의 선수금 보전조치는 우리나라와 유사하게 최소한 선수금의 50%를 사외에 적립하는지를 검증하는 것으로 볼 수 있음.
- 일본의 경우 우리나라의 공제조합 성격을 가지고 있는 호조회 보증주식회사(이하 일본 공제조합으로 표기함.)의 경우 업무방법서 상에 다양한 규제가 적용되어 있음.
- 일본 공제조합은 전체 수탁한도가 『자기자본+ 수탁사업기금』 합계액의 25배로 지정되어 있음(업무방법서 제4조)
- 또한, 전체 한도뿐만 아니라 회원사 1개사 당 수탁한도도 지정되어 있음.
- 『자기자본+ 수탁사업기금』의 50% 이하의 율을 곱한 금액의 합계액에 상당하는 금액으로 규제됨(업무방법서 제 5조)
- 공제로 또한 수탁금액에 대해 연이율 0.1%~1.0%의 범위 내에서 정한 위탁수수료를 계약기간에 곱해 산출한 위탁수수료로 수취할 것을 규정하고 있음(업무방법서 제9조)
- 마지막으로 책임준비금, 공탁준비금, 자산운용 등에 대한 규정 또한 존재하고 있어 자체적인 리스크 관리방안을 마련하고 실행에 옮기고 있음.

〈표 21〉 책임준비금, 공탁준비금, 자산운용에 관한 규정

〈책임준비금 관련 규정〉

〈제12조〉 당 회사는 사업연도 말에 아직 경과하지 않은 공탁위탁계약이 있는 때에는 다음 각 호에 열거하는 금액 중 어느 것인가 많은 금액을 사업연도 별로 책임준비금으로 계상해야 하는 것으로 한다.

1. 당해 공탁위탁계약의 계약기간 중 아직 경과하지 않은 기간에 대응하는 위탁수수료의 총액에 상당하는 금액
2. 당해 사업연도에 수령한 위탁수수료 총액에서, 당해 수수료에 관련한 공탁위탁계약에 기초하여 공탁한 선수업무 보증금(당해 선수업무 보증금의 공탁에 의한 위탁자로부터의 수입금을 제외함), 당해 위탁수수료에 관련한 공탁위탁계약을 위해 적립해야 할 공탁준비금 및 당해 사업연도의 사업비 합계액을 공제한 잔액에 상당하는 금액

〈공탁준비금 관련 규정〉

〈제13조〉 당 회사는 결산기 별로 다음 각 호의 하나에 열거하는 금액이 있는 경우에는 공탁준비금으로서 당해 각 호에 열거하는 금액을 적립한다.

1. 공탁위탁계약에 기초하여 공탁해야 할 선수업무 보증금의 금액 중 결산기까지 그 공탁이 끝나지 않은 것이 있는 경우에는 그 금액
2. 공탁위탁계약에 기초하여 공탁할 의무가 생긴 것으로 인정되는 선수업무 보증금의 금액이 있는 경우에는 그 공탁해야 하는 것으로 인정되는 금액
3. 현재 선수업무 보증금의 금액에 대해 소송이 계속되고 있기 때문에 공탁하지 않은 것이 있는 경우에는 그 금액

〈자산운용 관련 규정〉

〈제14조〉 당 회사는 그 재산을 다음에 열거하는 방법에 의해 운용하는 것으로 한다.

1. 현금, 우편저금, 은행예금 또는 금전신탁
2. 국채, 지방채, 특수채, 금융채, 사채, 저당증권 또는 대부신탁의 수익증권
3. 투자신탁의 수익증권, 유가증권의 신탁 또는 주식
4. 외화예금(다만 외환 예약이 있는 것) 또는 엔화 표시 외국채
5. 매매입조건부 매매 운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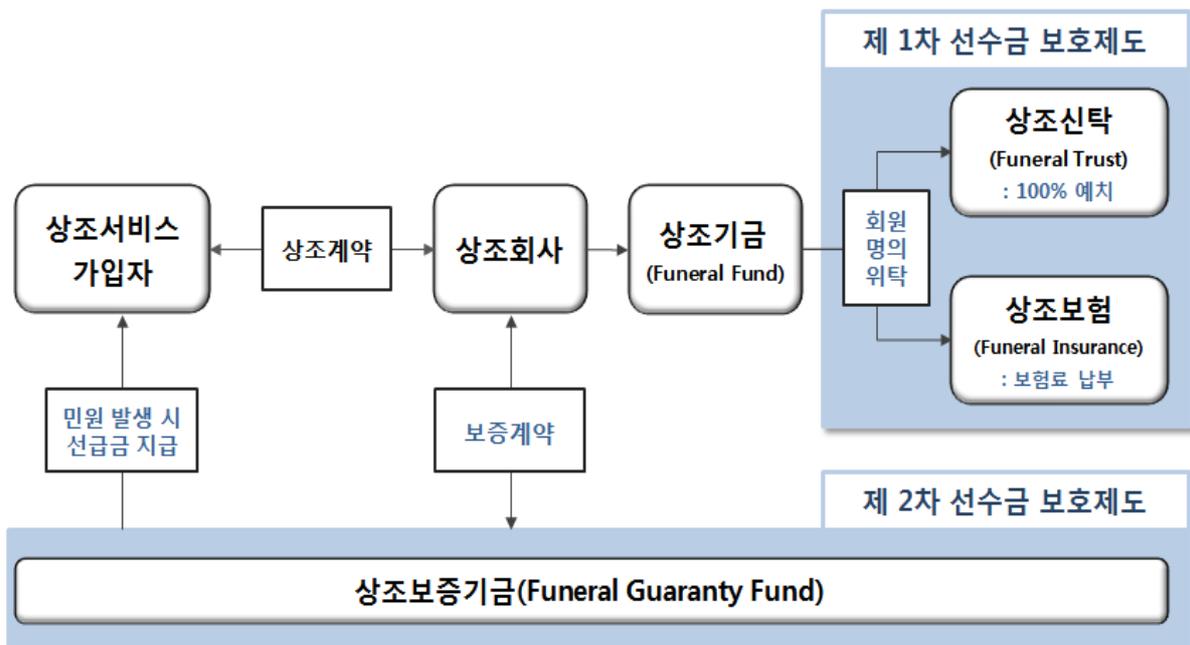
다만 제3호~제5호의 운용비율은 전 운용자산(위의 제1호~제5호 해당분)의 20%를 초과할 수 없는 것으로 한다.

자료 : 일본 호조(상조)회 보증주식회사 업무방법서(2014.02)

3. 미국의 상조시장 리스크관리 체계

- 미국의 상조시장은 한국, 일본과 달리 상조회사를 금융회사로 보지 않는다는 점에서 리스크 관리체계가 매우 상이한 면을 보이고 있음.
- 상조회사를 금융회사로 보지 않고 장례·현물 서비스 제공자로 규정하고 상조서비스 가입자와 상조기금(Funeral Fund)과의 중개인의 형태로 정의하고 있음.
- 때문에 상조회사가 수취한 수수료는 상조신탁으로 100% 예치를 하거나, 계약상 상조서비스 가입자에게 제공해야 할 현물 및 서비스에 준하는 금액에 해당하는 보험계약을 체결하게 됨.
- 이를 통해 상조서비스 가입자가 소비자 피해를 입을 가능성을 아래 그림과 같이 수수료보호제도를 2중으로 구성하여 원천적으로 봉쇄하고 있음.

<그림 19> 소비자 보호를 위한 상조업(미국)의 Risk Management Mechanism



- 또한 상조회사는 수수료의 일정액을 상조보증기금(Funeral Guaranty Fund)과

의 보증계약으로 활용해야 함.

- 이를 통해 상조서비스 가입자가 해당 상조회사의 서비스 불만, 계약철회 등에 대한 태만 등의 민원유발사례가 발생할 경우 직접 상조보증기금에 반환청구를 할 수 있음.
- 상조보증기금은 정부가 운영하는 지급보증기구이며, 가입자에게 선급금을 지급할 경우 상조회사에 대한 대위권을 가짐.

IV. 상조회사의 리스크관리 개선방안

- 국내 상조업의 경우 일본과 유사한 금융기관의 형태를 띠고 있기 때문에 본 연구에서는 상조회사의 재무건전성을 유지하기 위한 리스크 관리방안에 대해 논의하고자 함.
- 미국의 경우 상조회사를 금융회사로 보지 않고, 장례·현물 서비스 제공자로 보기 때문에 상조회사 재무건전성에 대한 리스크 관리방안은 논의의 여지가 없음.

1. 경영체계 건전화를 위한 장기적 RM방안

- 리스크관리(Risk Management ; RM)의 궁극적 목적은 소비자 보호에 있음.
- RM을 통해 상조회사의 지속가능성(sustainable management)을 확보하는 것은 상조서비스 가입자와의 선의 성실계약을 수행하는 것임. 아울러 상조산업의 건전 육성이라는 정부 정책에 부응하는 조치로 이해할 수 있음.
 - 사업자의 지속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지속적으로 상조회사에 대한 재무건전성 감시, 감독이 필요함.
- 따라서 향후 상조회사의 리스크관리는 다음과 같이 전개되어야 함.
 - 현재의 선수금 보전계약과 경영상 필요한 계량평가항목을 중심으로 재정건전성을 확보하는데 초점을 맞출 필요
 - 이러한 재정건전성 평가를 위해서는 금융감독원이 금융회사와 유사하게 상조회사의 자산평가를 하는 것이 큰 도움이 될 것임.
 - 추가적으로 방만한 경영을 막기 위한 경영리스크, 즉 비계량 평가를 통한 리스크 관리체계가 이루어져야 함.

- 또한 상조회사의 규모가 클수록 부도, 파산이 발생하였을 경우에 상조소비자와 공제조합이 부담해야 하는 손실의 범위 및 크기가 증가하기 재무건전성 규제가 병행되어야 함.
- 예를 들어, 일본처럼 상조업의 규모에 따라 납입자본금의 규모를 차등적으로 적용하는 방안을 모색할 수 있음. 또한 일본의 선행 사례를 고려한다면 현행 등록제를 허가제로 전환하는 법 개정이 필요할 수 있음.
 - 일본의 경우는 처음에 등록제였지만 매년 3-4개 상조회사의 파산으로 사회적 불안정성을 해소하기 위해 법개정(1967년)을 통하여 허가제로 전환하였음.
- 마지막으로 경영, 재무, 규모 등의 평가를 기준으로 상조회사의 특성 및 상황에 맞게 적절한 시정조치를 수행함으로써 감독 업무의 효율화를 제고할 필요가 있음.

<그림 20> 향후 상조회사 재무건정성 감독 체제(안) Framework



- 그러나 현재 우리나라에서 이러한 시스템을 도입하는 것은 빠른 규제변화로 인한 부작용을 일으킬 수 있음.
- 현재 선수금보전계약의 비율이 지속적으로 상승하고 있음(2013년 40%, 2014년 50%)

- 따라서 이러한 시스템은 전문적인 규제기관이 생기거나 현재의 규제가 정착화 되고 상조시장이 자생력을 가지고 성장할 수 있는 시점이 되어야만 가능함.

2. 경영체계 건전화를 위한 단기적 RM방안

- 현재 상조회사에 적용할 수 있는 RM 방안은 상조회사가 충분히 달성할 수 있으면서도 최소한의 재정안전성을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이 적용되어야 함.

- 상조회사의 재정안전성은 지급여력비율을 활용하여 확보할 수 있음

- 지급여력비율은 2013년 평균적으로 83.6%이고, 지속적으로 상승하고 있음.
- 지급여력 비율이 100% 이상으로 재무 건전성이 우수한 업체수는 99개로 전체의 38.8%를 차지함.

<그림 21> 상조회사 지급여력비율 추이와 비율별 업체 수



- 따라서 보편적으로 인식되고 있는 지급여력비율을 상조회사 재정안전성의 주요 지표로 활용할 수 있음.

- 예를 들어, 보험권에서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RAAS 시스템의 적기시정조치를 단순화하여 다음 표와 같이 그룹핑하여 관리하는 방안을 고려할 수 있음.

<표 22> 상조회사 관리·감독 단계

그룹	조치 기준 (매 회계연도 말 현재)	관리수준
경영개선권고	지급여력비율이 50% 이상 100% 미만	하
경영개선요구	지급여력비율이 0% 이상 50% 미만	중
경영개선명령	지급여력비율이 0% 미만	상

- 보험산업의 경우 경영개선권고의 경우 1년, 경영개선요구의 경우 1년 6개월, 경영개선명령의 경우 금융위가 직접 정하고 있음.
- 다만 중소상조회사들의 회계처리능력이 미숙한 점, 보험회사는 보험업법에 재무건전성 기준이 명시된 점 등을 고려하면 보험산업과 큰 차이가 있으므로 그러한 부분에 대한 검토가 선행될 필요
 - 이를 위해 금융감독원이 자산상황에 대하여 검사를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함.
- 또한 상조회사의 재무건전성 확보를 위한 방안으로 외부회계감사 의무화(선수금 5억원 이상) 및 일정 자산운용 방법에 대한 규제를 도입할 필요
- 297개(2013.5월기준) 상조회사 중 「주식회사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에 의한 회계감사를 받아야 하는 업체는 41개사(2012.12말 기준, 자산총액 100억 이상)에 불과하고, 나머지 업체는 사실상 공신력있는 회계를 받지 않아 재무상태에 대한 검증이 사실상 불가능한 상황임.
- 또한, 중소형 상조회사들이 선수금을 임직원 대한 대출, 지배주주 등에 대한 신용공여 등으로 사용하여 재무건전성이 악화된 경우도 상당수 있을 것으로 보임
- 다음 장에서 우리는 상조회사의 부실화에 대비해 설립된 공제조합의 RM 측면을 살펴보기로 함.

V. 상조공제조합 리스크 관리방안

1. 공제조합 리스크관리의 필요성

- 공제조합은 상조업의 예금보험공사 역할을 하는 기관으로 공제조합의 재정적 안정성은 상조시장 소비자 보호와 밀접한 관련이 있음.
- 현재 한국상조공제조합, 상조보증공제조합 등 2개 社가 사업을 영위 중에 있음.
- 예금보험공사의 경우 나라에 의해 재정적인 보증을 받아 안정적이지만 공제조합의 경우 재정적인 안전장치가 없기 때문에 상품(보증)에 대한 리스크 관리는 필수적임.
- 이에 따라 공제조합은 아래 표와 같은 설립목적에 부합하고, 사업의 지속가능성 제고를 위한 리스크관리체계가 마련되어야 함.

<표 23> 공제조합의 설립목적

할부거래법 제29조(공제조합의 사업) ① 공제조합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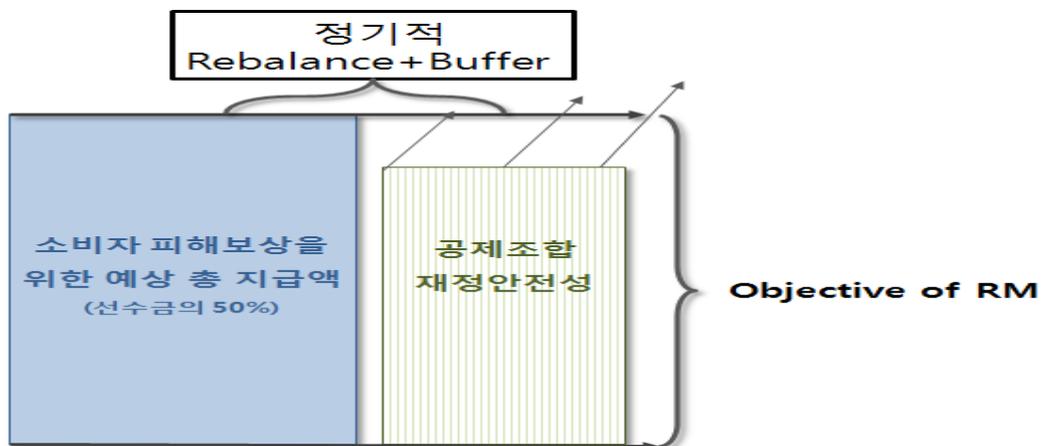
1. 소비자피해보상을 위한 공제사업 및 소비자의 권익보호를 위한 공익사업
2. 소비자피해예방과 홍보를 위한 출판 및 교육사업
3. 시장의 건전한 발전을 위한 자율정화사업
4.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위탁받은 사업

- 이에 따라 상조공제조합은 개정 할부거래법의 시행(2010. 9)에 따라 재정안정성을 담보하기 위한 출자금(200억원 이상)으로 사업을 시작하였으며 지속적으로 소비자 보호를 위해 노력해오고 있음.
- 그러나 공제조합은 상조회사와 소비자피해보상보험계약에 필요한 선수금의 50%를 모두 수취하지 않고 자체적인 신용평가에 따른 담보비율 만큼만을 수취하고

있는 상황에 있음.

- 만약 상호회사와의 소비자피해보상보험계약에서 선수금의 50%를 모두 수취할 경우 공제조합은 소비자피해보상 사태가 발생하는데 따르는 리스크가 없음.
- 즉, 선금금의 50% 수준을 영업보증금으로 공탁하는 일본의 경우와 동일한 효과임.
- 그러나 현재 공제조합의 사업형태는 예치의 개념이 아닌 보증의 개념으로서 이는 보험계약의 개념과 같이 위험률이 반영되어야 하는 사업임.
- 따라서 공제조합은 아래 그림과 같이 소비자 피해보상을 위한 총 지급액(공제조합 가입 상호회사 총 선수금의 50%)을 감내할 수 있는 재정안전성을 점진적으로 확보해나가는 노력이 요구됨. 즉, 장기적으로 재정균형이 이루어져야 하고 더 나아가 일정 수준의 완충기금(buffer capital)을 확보하는 방안을 의미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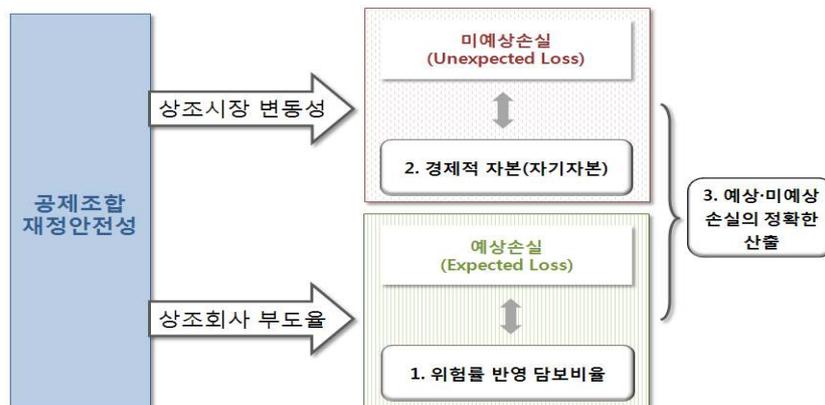
<그림 22> 공제조합의 RM 목표



- 공제조합이 재정안전성을 유지하기 위해 보유해야 할 재원은 공제조합이 예측할 수 있는 예상손실(Expected Loss)과 예측하지 못한 미예상손실(Unexpected Loss)의 합으로 볼 수 있음.
- 예상손실은 과거의 통계자료를 바탕으로 **평균적**으로 발생했던 보증금 지급액으로서 이에 상응하는 보증료의 수입이 있어야 함.

- 미예상손실은 과거의 통계자료를 바탕으로 시장 상황이 좋지 않을 경우(worst scenario)에 대비하기 위한 추가적인 기금(buffer)으로 볼 수 있으며 이를 경제적 자본(economic capital)이라고 함.
- 이렇게 공제조합이 재정안전성을 유지하기 위해 향후 발생할 손실(소비자피해보상)을 두 가지 유형으로 분리하는 것은 다음과 같은 의미를 내포하고 있음.
- 첫째, 예상손실(Expected Loss)은 상호회사의 부도율을 반영하여 장래에 예측되는 지급금액과 현재 상호회사에게 수취해야 할 수취금액을 동등하게 맞춤으로서 관리할 수 있음.
- 둘째, 외부 시장환경의 변동성 증대로 인한 미예상손실(Unexpected Loss)을 관리하기 위해 공제조합은 예상치 못한 손실에 대한 흡수장치, 즉, 충분한 자기자본(경제적 자본)을 보유하고 있어야 함.
- 셋째, 두 가지 손실은 서로 독립적으로 관리되어야 하며 이에 대한 관리·감독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야만 함.
- 따라서 공제조합 리스크관리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점검해야 할 요소는 아래 그림과 같이 현재 공제조합이 충분한 자기자본, 적절한 담보비율, 그리고 이에 대한 적절한 관리 등 세 가지 요소로 분리할 수 있음.

<그림 23> 공제조합 리스크관리를 위한 3가지 요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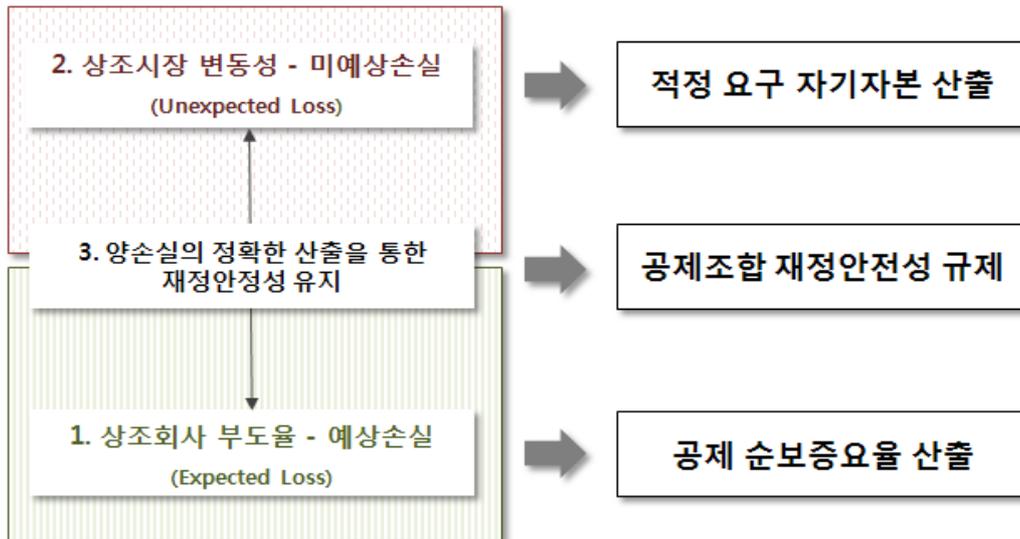


- 본 절에서는 그림과 같이 공제조합(2개 社)이 사업 수행에 적합한 리스크관리 체계를 갖추고 있는지를 진단하고 소비자피해보상을 정상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리스크 관리방안을 제시하고자 함.
- 따라서 첫 번째로 공제조합이 위 그림과 같이 예상손실(Expected Loss)과 미예상손실(Unexpected Loss)을 어떻게 산출해야 할 것인지에 대해 논의하고 일본의 사례를 통해 공제조합의 재정안전성에 대한 규제의 방향성을 제시함.
- 두 번째로 이러한 산출방법을 공제조합 2개 社에 적용하여 세 가지 리스크 관리요소를 어떻게 관리하고 있는지를 진단함.
- 마지막으로 현행 공제조합 리스크관리 현황 진단을 통해 향후 공제조합의 지속가능성 제고를 위한 시사점을 제시함.

2. 공제조합 리스크 관리를 위한 3가지 요소

- 공제조합 리스크 관리를 위한 3가지 요소를 제안하기에 앞서 전체적인 리스크관리 방안을 요약하면 아래 그림과 같음.

<그림 24> 공제조합 리스크 관리를 위한 요소와 관리방안



- 첫 번째로 살펴볼 부분은 예상손실(Expected Loss)임.
- 현재 공제조합이 조합사의 신용상태에 따라 요구하는 담보비율은 조합사의 공제 사고율(부도율)이 포함되지 않는 개념으로서 본 절에서는 공제사고율을 적용한 공제 순보증료 산출에 대해 제안함.
 - 이는 계리적 공정 요율산정 원칙(Actuarially Fair Pricing Principle)에 입각하여 산출되어야 함.
- 두 번째로 살펴볼 부분은 미예상손실(Unexpected Loss)임.
- 과거 시장환경에 대한 통계적 데이터를 통해 시장환경이 악화될 경우를 대비한 경제적 자본(Economy capita)의 역할로서 적정 요구 자기자본(출자금 개념) 산출에 대해 제안함.

- 마지막으로 공제조합의 재정안전성을 담보하기 위해 점진적, 단계적인 규제의 필요성에 대해 제시함.
- 일본의 경우 공제조합의 재정안전성을 담보하기 위해 자체적인 규제를 적용하고 있음. 따라서 이를 살펴본 후 단계적인 공제조합의 지속가능성을 담보하기 위한 방안. 즉, 상조시장의 건전한 성장을 도모하기 위한 규제의 필요성을 제시함.

1) 예상손실(Expected Loss) - 공제 순보증료 산출

-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공제조합은 타 예치기관과 달리 상조회사가 보유한 선수금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을 모두 수취하지 않고 있음.
- 선수금의 50%를 모두 예치하지 않고 신용등급에 따라 차등적으로 선수금의 일정비율을 예치할 것을 요구하고 있으며 이러한 일정비율을 담보비율이라고 함.
 - 두 공제조합은 신용평가를 통해 산출되는 등급이 상이하고, 각 등급에 적용되는 담보비율 또한 상이함.

<표 24> 신용평가등급에 따른 선수금예치비율 예

신용등급	담보비율
1등급	15.0%
2등급	15.5%
3등급	16.5%
4등급	17.5%
5등급	19.0%
6등급	20.0%
7등급	21.5%
8등급	22.5%
9등급	24.0%
10등급(신규사업자)	25.0%

자료: 상조보증공제조합(2014.02)

- 따라서 공제조합이 상호회사의 채무불이행 리스크(부도율)를 감안하여 보증료를 산출한다면 선수금 50% 보증에 따르는 리스크는 다음과 같이 산출되어야 함.
- 현행 적용되는 신용등급은 상호회사의 재무상태를 평가하여 공제조합이 자체적으로 산출한 신용등급임.
- 또한 신용등급별 부도율이 적용되어야 하지만 상호업체의 부도율 관련 통계자료가 충분히 축적되지 못해 현재 공제조합은 신용등급별 부도율을 적용하고 있지 않음.
- 따라서 공제조합의 담보비율로 인한 리스크는 아래와 같은 수식으로 나타낼 수 있음(단, 현금 유출 및 유입에 따른 발생 이자는 무시함).

- 공제조합의 보증 $Risk = \sum_{j=1}^n C_j \times \{q_j \times B_j - P_j\}$

B_j = 상호회사 신용등급별(j) 선수금 보전비(즉, 선수금의 50%)

P_j = 상호회사 신용등급별(j) 공제 위험보증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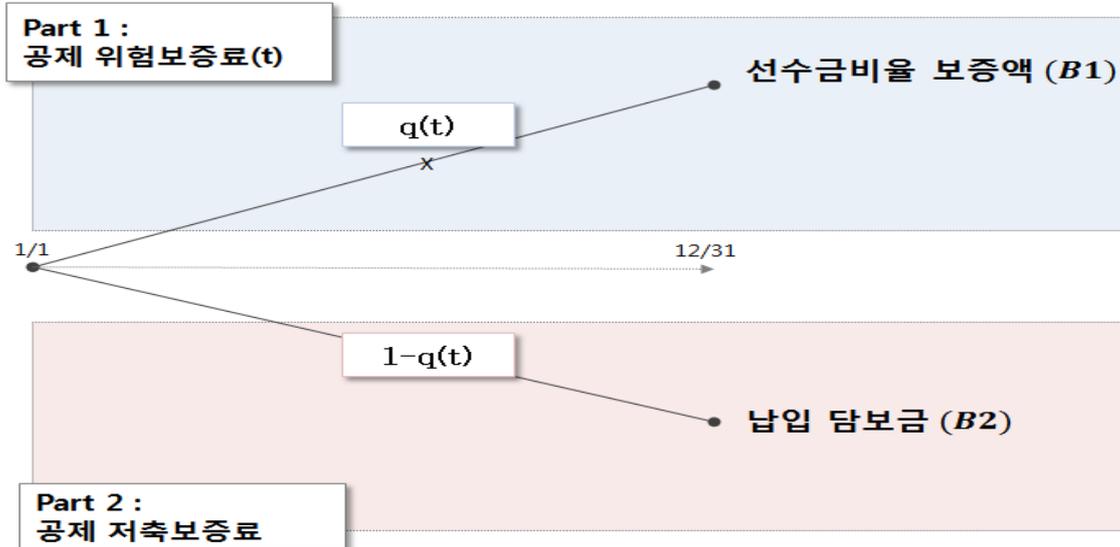
C_j = 신용등급별(j) 공제조합 가입 상호회사 수

q_j = 상호회사 신용등급별(j) 공제사고율(즉, 부도율)

- 공제조합은 향후 점진적으로 각 상호회사의 가입 시점에서 공제사고율(상호회사 부도율)을 반영하여 상호회사별로 적정한 공제 순보증요율을 산출하고, 차등적으로 적용하는 리스크관리(RM)방안이 적용되어야 함.
- 일본은 공제조합과의 공탁위탁계약 체결 시에 수탁금액에 대해 연이율 0.1%~1.0%의 범위 이내에서 계약기간에 비례하여 공제 위험보증료를 산출함.
- 이는 보험회사의 1년 갱신부 보험료 체계와 같은 공제보증요율 체계가 구성되어야 함을 의미하고, 이러한 원칙에 부합하는 1년 갱신부 보험료체계는 다음과 같이 구성되어야 함.

- 아래 그림과 같이 공제조합이 수취해야 할 보증료는 공제 위험보증료와 공제 저축보증료로 분리하여 수취해야 함.

<그림 25> 공제 순보증료의 분리: 공제 위험보증료와 공제 저축보증료



주) $q(t)$ 는 t 회계년도의 신용등급별 평균 공제사고율(상조회사 부도율)을 의미함.

- 또한 이는 계리적 공정 요율산정 원칙(Actuarially Fair Pricing Principle)에 입각하여 산출되어야 함.
- 1년 갱신부 보증료 체계에 따라 공제조합의 보증료를 산출할 경우 1월 1일 시점에서 상조회사가 1년 갱신부 공제 순보증료로 납부해야 할 금액을 아래와 같이 나눌 수 있음.
- 단, $q(t)$ 는 각 상조회사 신용등급별 평균적인 공제사고율이 적용되어야 함.

$$\bullet \text{ 공제 위험보증료}(t) = \frac{q(t) \times B_1}{\sqrt{1 + \text{할인율}}}$$

주) B_1 은 연 중앙에서 지급됨을 가정

주1) 순보험료에서 위험보험료(Risk Premium)에 해당됨.

$$\bullet \text{ 공제 저축보증료}(t) = \frac{[1 - q(t)] \times B_2}{1 + \text{할인율}}$$

주) 순보험료에서 저축보험료(Saving Premium)에 해당됨.

- **참고)** 일반적으로 1년 이내의 계약에 대해서는 할인율을 적용하지 않는 것이 원칙이지만 상호회사와 공제조합 간의 공제계약은 1년 단위 갱신부 계약이고 다발성으로 발생하는 특성을 고려하여 엄밀한 계리적 산출을 위해 할인율을 적용하였음. 그러나 편의상 할인율을 적용하지 않는 것 또한 일반성을 위배하지 않음.

○ 따라서 1월 1일 시점에서 납부해야 할 금액은 아래와 같이 구성됨.

- 공제 순보험료(t) = 공제 위험보험료(t) + 공제 저축보험료(t)

□ 12월 31일 공제조합에서 보유하고 있어야 할 공제 순보험료 적립금은 아래와 같음.

- 공제 위험보험료 적립금 = $q(t) \times B_1 \times \sqrt{1 + \text{할인율}}$

- 공제 저축보험료 적립금 = $[1 - q(t)] \times B_2$

□ 연말에 공제조합의 수입·지출 결산구조는 아래그림과 같음.

○ 즉, 연도 말 시점(계약 후 1년)에서 수입이 지출보다 클 경우 공제조합은 지속적인 수익구조를 창출할 수 있으나 지출이 더욱 클 경우 공제조합의 부실화는 심화될 수 있음.

○ 따라서 이러한 수입과 지출의 균형을 맞출 수 있도록 매년 정기적으로 공제 순보험료의 재산정이 요구됨.

<그림 26> 회계연도 말 공제조합의 수입·지출의 예

**순 보증료 및 보증금
수입·지출 계산서**

(연도 말 기준)

수입	지출
$\sum_{j=1}^{10} \left(\begin{array}{c} \text{공제 위험보증료 적립금}(j) \\ + \\ \text{공제 저축보증료 적립금}(j) \end{array} \right) \times n_j$	$\sum_{j=1}^{10} \text{선수금비율 보증액}(B1_j) \times m_j$

예 주) n_j = 연시에 공제가입한 신용등급별(j) 상호회사 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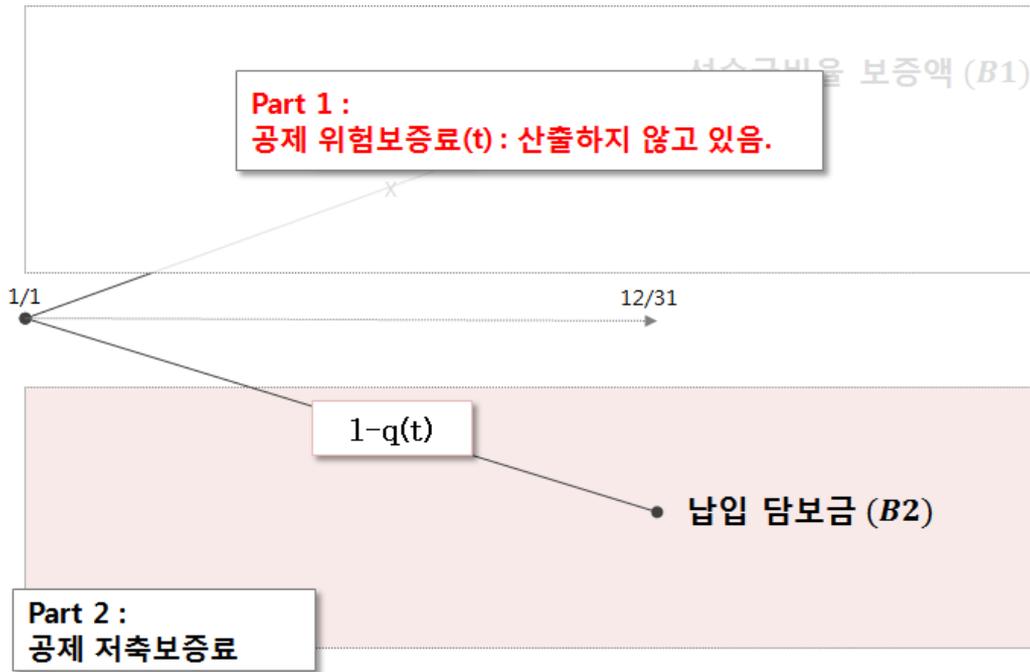
m_j = 연중 신용등급별(j) 공제사고 상호회사 수

- 따라서 공제 순보증요율을 산출하기 위한 산출식은 아래 식과 같이 상호회사의 부도확률을 감안한 공제 위험보증료와 보증기간 간 부도 미발생확률을 감안한 공제 저축보험료로 구성되어야 함.

$$\bullet \text{ 공제 순 보증요율} = \frac{\text{부도율} \times \text{선수금보전비율}}{\sqrt{1 + \text{할인율}}} + \frac{(1 - \text{부도율}) \times \text{담보비율}}{1 + \text{할인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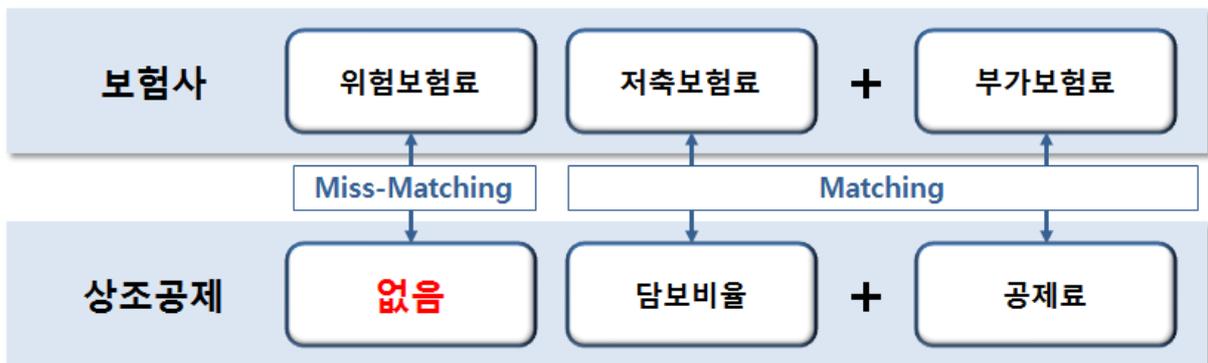
- 그러나 현재 공제조합에서 적용되는 담보비율은 위 식의 부도율에 해당하는 $q(t)$ 가 반영되지 않은 상태에서 산출되고 있음.
- 아래 그림과 같이 상호회사가 공제조합에 납입하여야 할 공제 위험보증료가 없이 공제 저축보험료만 산출되고 있는 상태임을 의미함(연도말 결산시점 기준).
- 이는 할부거래법 개정(2010년)된지 얼마 지나지 않아 상호회사의 부도율과 관련된 통계자료가 충분하지 않기 때문에 공제조합이 부도율을 측정하기에는 시기상조인 측면이 존재하기 때문임.

<그림 27> 현재 상조공제조합 보증료 산출 체계



- 만약 공제조합이 충분한 통계자료와 전문성 없이 부도율을 측정할 경우, 과소평가나 과대평가로 인해 공제조합은 예상손실(Expected Loss)액 추정의 오류로 인한 더욱 큰 손실로 거대한 미예상손실(Unexpected Loss)이 발생하거나 공제조합에 불필요한 재정적 부담을 지울 수 있음.
- 따라서 향후 상조회사의 등급별 부도율 측정이 가능해지면 공제조합은 각 신용등급별 부도율을 반영하여 위험보험료에 해당하는 현금 유입이 이루어져야 함. 이를 그림으로 나타내면 아래와 같음.

<그림 28> 보험사와 상조공제조합 보험료 구조



- 다음절에서는 시장의 변동성을 반영하는 추가적 완충기금(즉, 출자금)에 대한 논의 또한 신용등급별로 차등 설정에 대한 논의를 다루도록 함.
- 예금보험공사의 경우 각 보험사에 대해 동일한 요율을 적용하고 있으나 이는 보험사의 재정건전성을 강하게 규제하고 있는 금융감독원이 존재하고 있어 보험사들이 일정 수준의 지급여력비율을 유지하도록 하고 있는 반면,
- 상호회사들의 경우 이를 감독하는 기관이 존재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기타 공제조합(콘텐츠 공제조합, 소프트웨어 공제조합 등)에서처럼 각 상호회사 신용평가별로 차등적인 담보비율(즉, 공제 순 보증요율)이 설정되어야 함.
- 수수료(공제료)의 경우 원칙적으로 공제조합의 운영비에 해당하여 경영상 문제에 해당하지만, 소비자피해보상 사유 발생시 피해보상금으로도 사용되므로 일정 부분 위험보험료의 성격이 있다고 볼 수 있음.

2) 미예상손실(Unexpected Loss) - 시장변동성을 반영한 경제적 자본

- 공제조합은 시장 상황이 좋지 않아 추가적으로 발생하게 되는 보증금 지급액(미예상손실)에 대비하여 완충기금 성격을 가지고 있는 경제적 자본(Economic Capital)을 추가로 적립해야 함.
- 부연하면 보험업계 또한 보험업에서는 2011년 4월부터 RBC제도를 본격적으로 시행하여 미예상손실이 발생하여도 보험계약자에 대한 채무를 이행할 수 있도록 추가적으로 순자산을 보유하도록 규제하고 있음.
- 현재 할부거래법에서는 공제조합 설립 시 최소 200억 원 이상의 출자금을 조성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이는 법에서도 공제조합의 재정건전성을 담보하기 위한 최소한의 자본금을 요구하는 것으로 해석됨.
- 즉, 출자금은 경제적 자본 개념으로 이해할 수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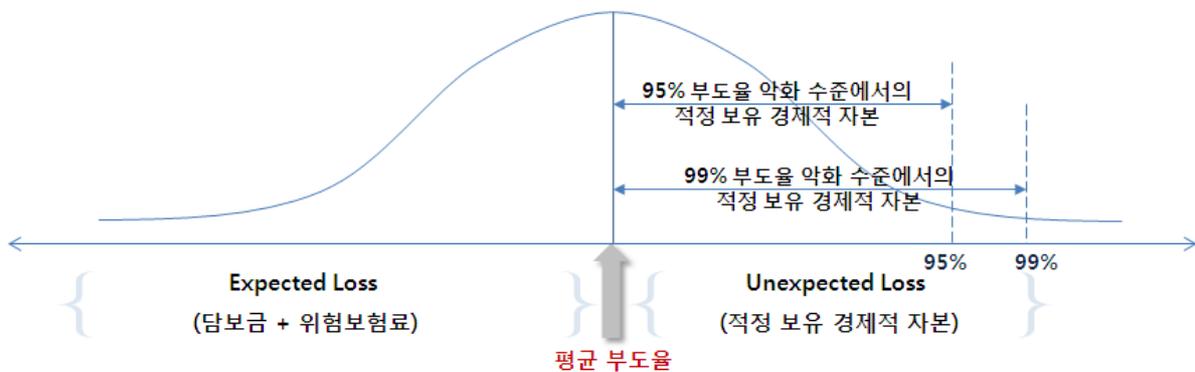
<표 25> 할부거래법 공제조합의 설립

- 제28조(공제조합의 설립) ① 선불식 할부거래업자는 제27조제1항제4호에 따른 공제사업을 운영하기 위하여 공정거래위원회의 인가를 받아 공제조합을 설립할 수 있다.
- ② 공제조합은 법인으로 하며,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 ③ 공제조합에 가입한 자는 공제사업의 수행에 필요한 출자금 등을 공제조합에 내야 한다.
- ④ 공제조합의 기본재산은 조합원의 출자금 등으로 조성하되 출자금은 200억원 이상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이어야 한다. 다만, 정부는 예산의 범위에서 출연(出捐)하거나 보조할 수 있다.
- ⑤ 공제조합의 설립인가 기준 및 절차, 운영 및 감독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⑥ 공제조합에 관하여 이 법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 중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 따라서 공제조합은 향후 단계적으로 아래 그림과 같이 평균적인 부도율이 아닌 변동성으로 인한 시장 환경이 급격히 악화될 경우를 대비한 추가적인 금액을 적립해야 함.

○ 단, 공제 순보증요율을 산출할 경우 각 신용등급별 평균적 부도율을 적용하는 것이 합리적이거나, 시장환경의 변동성을 감안해야 하는 미예상손실(Unexpected Loss)은 변동성, 즉 부도율의 표준편차가 적용되어야 함.

<그림 29> 적정 보유 경제적 자본



- 현재 공제조합은 회원사가 증가할 경우 일정 수준의 출자금을 유지 혹은 증가하도록 강제하는 사후적 규제가 없는 상황임.
- 그렇기 때문에 향후 점진적으로 주기적으로 미예상손실액을 산출하여 보유하고 있는 경제적 자본 수준이 적정한지 검증할 필요가 있으며, 부족분에 대해서는 추가적인 적립을 하는 리스크 관리방안이 필요함.
- 다만 법상 최소 200억 이상 출자하도록 강제했기 때문에 뒤 분석결과에서 나타나듯이 미예상손실을 훨씬 웃도는 수준의 출자금을 보유하고 있고, 공제료, 이자수입을 통한 이익잉여금이 빠른 속도로 증가하고 있음.
- 공제조합은 시장환경의 악화로 인한 부도율의 변동성을 반영하여 미예상손실 산출을 통해 적정 요구 자기자본을 확보해야 함.
- 또한 운영리스크관리(Operation RM)를 위해 일본 호조회 보증주식회사(이하 일본 공제조합)의 업무방법서를 참조할 필요성이 있음. 즉,
 - 전체 수탁한도 = (자기자본+ 수탁사업기금) × 25배
 - 상조회사 한 개 당 수탁한도 = (자기자본+ 수탁사업기금) × 50%

VI. 공제조합의 리스크 관리 현황 진단

- 지금까지 살펴본 리스크 관리요소는 세 가지로 구분할 수 있음.
- 첫째, 예상손실(Expected Loss): 공제 순보증요율 산출
- 둘째, 미예상손실(Unexpected Loss): 경제적 자본(Economy Capital). 즉 적정 수준의 자기자본(출자금 개념) 보유 여부 검증
- 셋째, 두 손실을 정확히 산출하여 재정안전성을 관리하기 위한 적정수준의 규제·관리방안.
 - 다만 법상 최소출자금을 200억원 이상으로 규정하고 있어 미예상손실과 관련된 경제적 자본이 200억원 이하를 요구하는 경우 예상손실과 미예상손실의 분리관리가 불가능하여 일정 수준 혼합될 수 밖에 없음
- 본 절에서는 현재 사업을 영위중인 두 공제조합(한국상조공제, 상조보증공제)의 리스크관리 현황을 위 세 가지 요소를 통해 진단함으로써 현재 공제조합의 리스크관리 현황을 진단함.

1. 한국상조공제조합

- 한국상조공제조합은 2013년 현재 62개의 상조회사가 가입되어 있으며, 회원 총선수금을 기준으로 약 79%의 높은 점유율을 보여주고 있음.
- 실제로 한국상조공제조합은 출자금(출자증권)을 담보금(현금)의 용도로 납입하는 것이 가능해(공제규정 제17조) 리스크관리 측면에서 예상손실과 미예상손실을 정확하게 산출하는 것이 더 중요해짐.

<표 26> 한국상조공제조합 공제규정 제17조

- ① 공제계약신청자가 공제거래약정을 체결할 경우에는 법 제27조 제2항 및 부칙 제5조에 따른 선수금 보전금액에 조합이 정한 공제담보금적용비율과 담보종류별담보제공비율을 아래 산식에 따라 산출된 금액을 담보금액으로 정하며, 공제담보금적용비율은 별표3과 같고 담보종류별담보제공비율은 별표2와 같으며, 최저담보금액은 1억원으로 한다.
- 담보금 = 선수금보전금액 × 공제담보금적용비율 × **담보종류별담보제공비율**
- ② 공제계약신청자가 공제거래약정을 체결할 경우에는 제1항의 산식에 따라 산출된 담보금액에 상응하는 **출자증권 또는 현금**을 조합에 담보로 제공하여야 한다.

- 이러한 방식은 2010년 법개정을 통해 상조업을 선불식할부거래업으로 규제를 시작하면서 소비자보호를 위한 공제조합을 설립하고자 할 때 공제조합의 재무안전성을 확보하고자 많은 출자금 제공을 유도하기 위한 조치로 보임.
- 이론적으로는 최악의 시나리오를 가정하여 만약 상위 조합 회원사의 공제사고 발생 시 예상손실을 초과하는 손실이 발생하고, 더 나아가 미예상손실로 인한 적립금이 충분히 적립되지 않았을 경우에는 향후 공제조합의 재정안정성에 문제를 초래할 수 있음.
- 그렇기 때문에 한국상조공제조합의 예상손실과 미예상손실의 정확한 산출을 통한 향후 단계적, 점진적인 리스크관리방안을 실행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고 볼 수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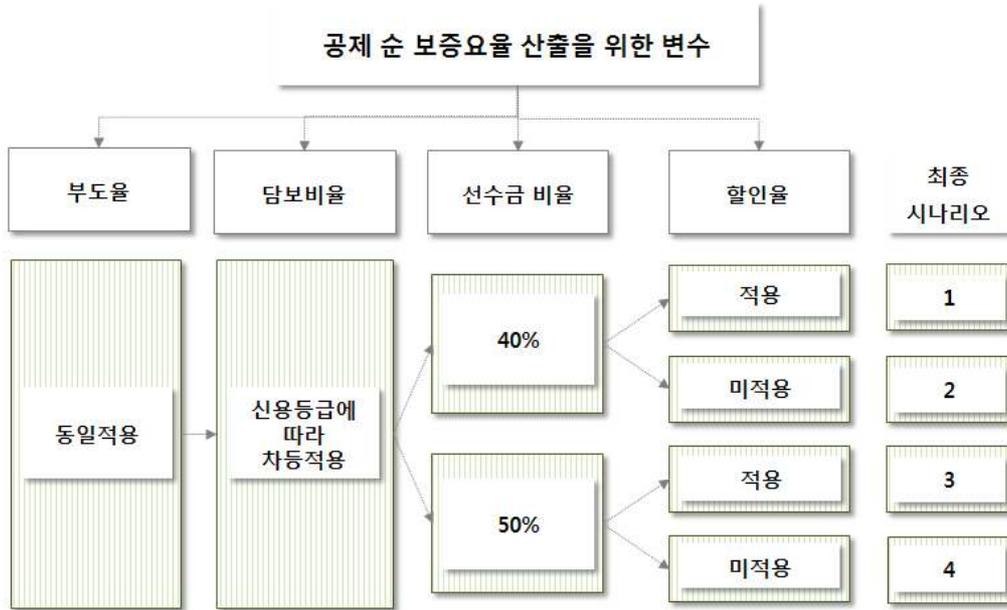
1) 예상손실(Expected Loss) - 공제 순보증료 산출

- 공제 순 보증요율을 산출하는 수식은 아래와 같이 공제 위험보증요율(우향의 좌측)과 공제 저축보증요율(우향의 우측)로 구성됨.

$$\bullet \text{ 공제 순 보증요율} = \frac{\text{부도율} \times \text{선수금보전비율}}{\sqrt{1 + \text{할인율}}} + \frac{(1 - \text{부도율}) \times \text{담보비율}}{1 + \text{할인율}}$$

- 공제 순 보증요율 산출을 위해 필요한 변수는 아래와 같은 네 가지로서 이에 따라 최종적인 시나리오는 네 가지로 구성됨.

<그림 30> 공제 순 보증요율 산출의 네 가지 시나리오



- 네 가지 변수 각각의 세부적 가정은 아래와 같음.

- 첫째, 부도율은 신용등급별로 산출하며, 한국신용평가(주), 한국기업평가(주), Nice신용평가(주) 3사 과거 10년 부도율(2004~2013)의 평균값을 적용함.
- 단, 연구의 편의상 한국상조공제와 신용평가 3개사의 신용등급체제가 상이하므로 아래 표와 같이 배정함. 이에 합리적 근거는 상조회사의 재무제표 평가 그리고 상조회사의 대외 신용평가 과정을 거쳐야만이 가능한 상황이므로 배정 근거는 임의 가정으로 설정함.

<표 27> 신용평가기관 3개사와 한국상조공제조합 신용등급체계와 적용 부도율

신용평가 3사 신용등급 체계	한국상조공제조합 신용등급 체계	신용평가사 평균 부도율
AAA	95%~100%	0.0%
AA	92%~94%	0.0%
A	89%~91%	0.06%
BBB	86%~88%	0.87%
BB	83%~85%	5.26%
B	80~82%	5.5%
CCC	77%~79%	18.1%
CC	74%~76%	23.6%
C	70%~73%	29.0%

주1) CC등급의 부도율은 과거 통계자료가 없어 C등급과 CCC등급의 최종 적용 부도율을 활용하여 직선보간법으로 산정하였음.

주2) 외부 신용평가사의 등급(AAA~C)과 한국상조공제조합 신용평가율(100~70%) 간의 매칭은 연구의 필요에 의한 연구자의 판단에 의한 분류이며 이에 대한 과학적 합리성/객관성은 향후 추가적인 연구가 필요함.

○ 둘째, 비율은 현재 한국상조공제조합이 적용하고 있는 신용등급별 선수금 보전 비율에 따라 아래 표와 같이 산출됨.

<표 28> 한국상조공제조합 담보비율

구분	선수금보전비율 (40%)	선수금보전비율 (50%)
AAA	8.70%	10.90%
AA	10.10%	12.60%
A	11.10%	13.80%
BBB	12.70%	15.80%
BB	14.40%	18.00%
B	16.20%	20.20%
CCC	18.50%	23.20%
CC	21.30%	26.60%
C	24.65%	30.70%

주) 각 수치는 신용등급별(AAA, ..., C)별 평균치임

○ 셋째, 선수금 보전비율은 40%일 경우와 50%일 경우를 각각 모두 적용함.

- 넷째, 할인율은 적용, 미적용 두 가지 시나리오로 구분되며 할인율을 적용할 경우, 2013년 12월 31일 기준 5년 만기 국고채 연 이자율 3.23%를 적용함.
- 한국상조공제조합의 공제 순보증요율을 산출요약은 아래 표와 같음.

<표 29> 공제 순 보증요율 산출 예

한국상조공제조합 - A 신용등급 상조회사의 공제 순보증요율						
○ 산출을 위한 변수						
• 선수금비율 : 50%						
• 부도율 : 0.06%						
• 납부유형 : 현금						
• 담보비율 : 13.84%						
• 할인율 : 적용						
○ 산출식						
$\frac{\text{부도율} \times \text{선수금보전비율}}{\sqrt{1 + \text{할인율}}} + \frac{(1 - \text{부도율}) \times \text{담보비율}}{1 + \text{할인율}} = \text{공제 순 보증요율}$						
∴ 위 식에 각 변수를 대입하면,						
$\frac{0.06\% \times 50\%}{\sqrt{1.0323}} + \frac{(1 - 0.06\%) \times 13.84\%}{1.0323} = 13.43\%$						
○ 공제 순보증요율과 현재 담보비율과의 차이(납입 시점 기준)						
신용 등급	부도율	① 담보비율	② 공제 위험 보증요율	③ 공제 저축 보증요율	④ 순 공제 보증요율 (②+③)	①-④ 부족 담보비율
A	0.06%	13.84%	0.03%	13.40%	13.43%	0.41%

- 현재 한국상조공제조합에서 요구하는 A등급 상조회사 담보비율은 13.84%로 적정 예상손실액보다 0.41%p 높은 담보비율을 요구하는 것으로 나타남.
- 두 번째로 모든 변수들이 변화할 때 위와 같은 공제 순 보증요율 산출프로세스에 따라 산출된 현재 부족 담보비율은 아래 표와 같이 요약됨.

<표 30> 공제 순 보증요율과 현행 공제조합 담보비율과의 차이

선수금(%)	40%		50%	
	유 (1)	무 (2)	유 (5)	무 (6)
할인율 (시나리오)				
AAA	0.27%	0.00%	0.34%	0.00%
AA	0.31%	0.00%	0.39%	0.00%
A	0.33%	-0.02%	0.41%	-0.02%
BBB	0.16%	-0.24%	0.20%	-0.30%
BB	-0.89%	-1.35%	-1.11%	-1.68%
B	-0.80%	-1.32%	-1.00%	-1.65%
CCC	-3.30%	-3.89%	-4.13%	-4.86%
CC	-3.77%	-4.42%	-4.71%	-5.53%
C	-3.76%	-4.49%	-4.70%	-5.61%

- <표 30>에서 보듯이 약 97%의 조합 회원사가 BBB등급 이상이므로 예상손실을 충분히 커버하는 수준의 공제 순보증금을 내고 있는 것으로 보여짐.
- 단, 현재 산출된 공제 순 보증요율에는 회수율⁹⁾이 반영되어 있지 않아, 보수적 관점에서 산출되었음을 유의해야 함.
- 참고로, 자본재공제조합(48.5%), 전문건설공제조합(46.22%), 소프트웨어공제조합(54.94%) 등의 공제조합은 상당량의 회수율을 보이고 있어, 단순한 현재 담보비율이 부족하다고 해서 공제조합의 재무건전성이 악화된다고 보기는 무리가 있음.

9) 보증사고 발생 시 공제조합은 채권자에게 보증사고액을 대신 지급하고 향후 채무자(사업자)에게 사고액 만큼을 구상하게 되는데, 이때 보증사고로 인한 지급액 중 구상된 금액의 비율을 의미함. 예를 들어 보증사고 시 구상액 없이 전손이 발생하게 될 경우, 회수율은 0%임. 회수율을 구상율로 표현하는 경우도 있음.

2) 미예상손실(Unexpected Loss) - 시장변동성을 반영한 경제적 자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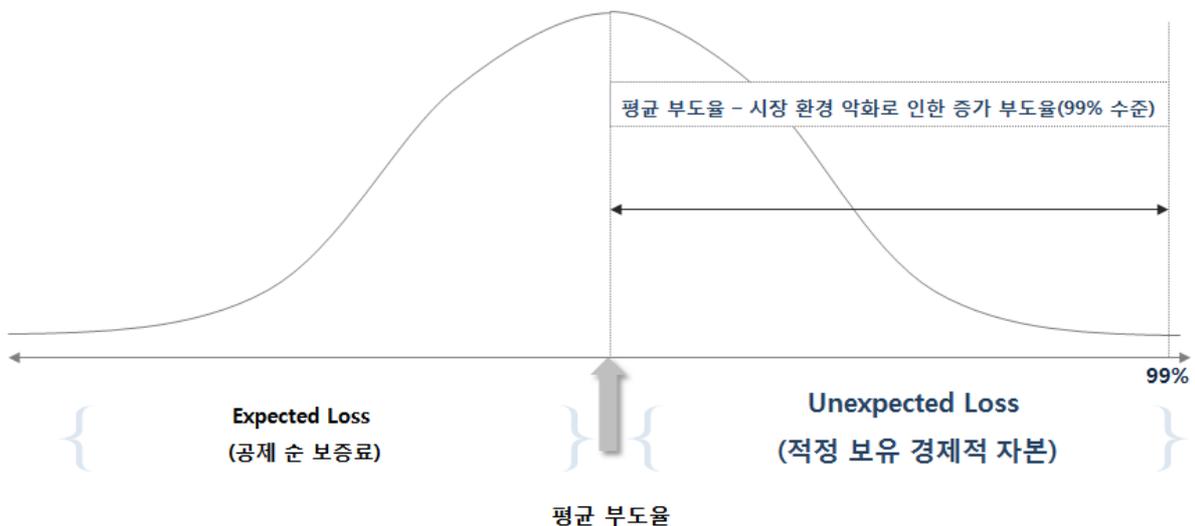
- 예측하지 못한 미예상손실(Unexpected Loss)은 공제 순보증금에서 사용한 평균적인 부도율이 아닌, 변동성이 반영된 부도율을 사용하여 시장환경이 악화될 경우 필요할 것으로 예측되는 적정 수준의 자기자본이 산출되어야 함.
- 따라서 적정 수준의 경제적 자본(자기자본)은 아래와 같이 변동성이 반영된 상조회사의 부도율과 평균적 상조회사의 부도율의 차분으로 산출됨.

- 적정 보유 경제적 자본

$$= \frac{\text{연초 총 보증선수금} \times (\text{연 상위 99\% 상조회사 부도율} - \text{연평균 상조회사 부도율})}{\sqrt{1 + \text{할인율}}}$$

- 주1) 위 식에서 상위 99% 상조회사 부도율은 [평균상조회사 부도율 + 2.33 × 상조회사 부도율 표준편차]로 산출되며 그림으로 나타내면 아래와 같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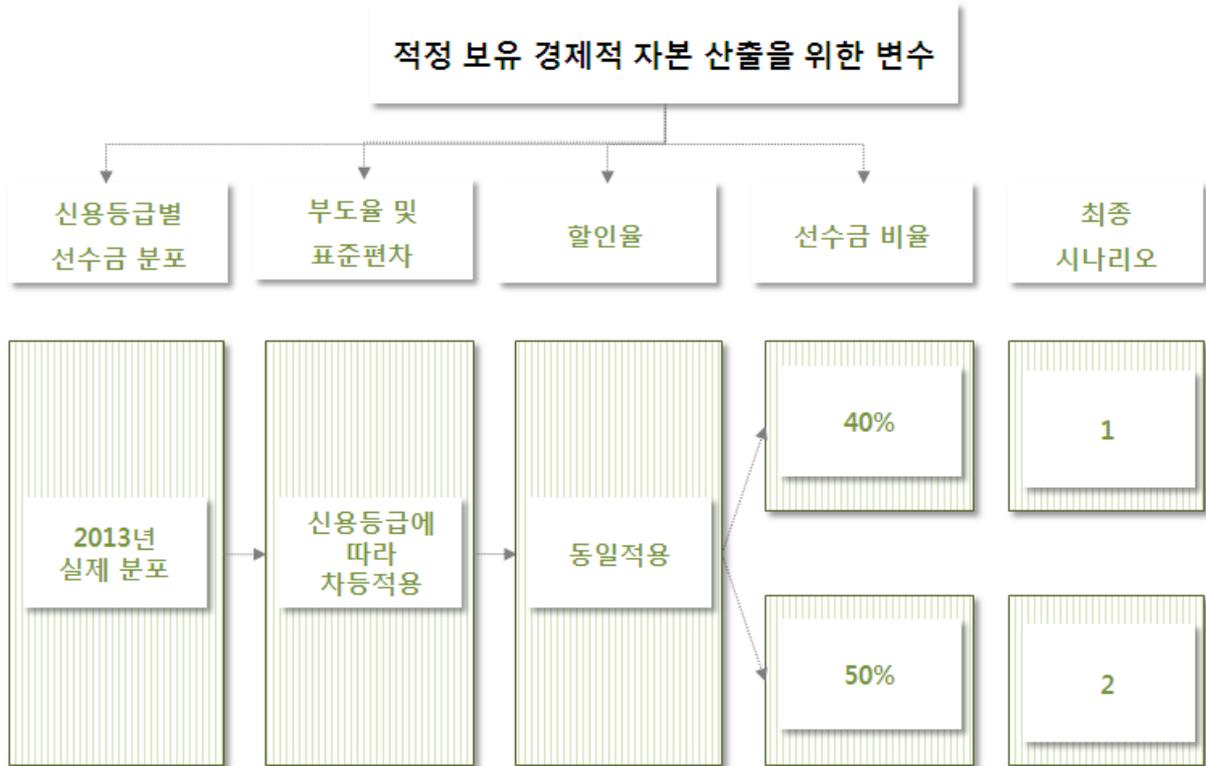
<그림 31> 시장환경 악화로 인한 상조회사 부도율의 변동성



- 주2) 또한 연초 총 보증선수금은 한국상조공제 조합사의 총 선수금 × 법적 선수금보전비율(2013년 40%, 2014년 50%)로 산출됨.

- 적정 보유 경제적 자본 산출을 위해 필요한 변수는 아래 그림과 같이 다섯 가지이며 선수금 비율에 따라 두 가지 시나리오로 분류됨.

<그림 32> 적정 보유 경제력 자본 산출의 두 가지 시나리오



□ 다섯 가지 변수 각각의 세부적 가정은 아래와 같음.

○ 첫째, 신용등급별 선수금 분포는 2013년 기준 실제 한국상조공제조합에 가입한 가입사들이 보유하고 있는 실제 선수금 분포를 신용등급별 선수금 분포로 적용 하였음.

<표 31> 한국상조공제조합의 신용등급별 선수금 분포

구분	AAA	AA	A	BBB	BB	B	CCC	CC	C
비중	54%	17.9%	12.2%	15.8%	0.1%	0%	0%	0%	0%

주) 한국상조공제조합 가입 62개 회원사의 신용등급을 반영한 분포임.

○ 둘째, 신용등급별 부도율 및 부도율 표준편차는 신용평가 3개사 과거 10년 부도율의 평균값과 표준편차를 적용함.

<표 32> 신용등급별 부도율 평균 및 표준편차

구분	AAA	AA	A	BBB	BB	B	CCC	CC	C
부도율	0.0%	0.0%	0.06%	0.87%	5.26%	5.5%	18.1%	23.6%	29.0%
표준편차	0.0	0.0	0.002	0.012	0.044	0.044	0.252	0.275	0.298

주) CC등급의 부도율 평균 및 표준편차는 과거 자료가 없어 C등급과 CCC등급의 부도율을 활용하여 직선보간법으로 산정하였음.

- 셋째, 할인율은 2013년 12월 31일 기준 5년 만기 국고채 연 이자율 3.23%를 적용함.
- 넷째, 선수금 보전비율은 40%일 경우와 50%일 경우를 각각 모두 적용함.
- 다섯째, 한국상조공제조합 가입사의 총 보유 선수금은 2013년 기준 약 1조 7,516억 원을 적용함.
- 이를 정리하면 아래 표와 같음.

<표 33> 적정 경제적 자본 산출을 위한 가정 요약

변수	가정
신용등급별 선수금 분포	한국상조공제조합 가입사 보유 선수금 분포 (2013년)
신용등급별 부도율 및 부도율의 표준편차	한신평, 한기평, NICE 3사 과거 10년 부도율의 평균값과 표준편차
할인율	3.23%
선수금 보전비율	40%, 50%
한국상조공제 가입사의 총 보유 선수금	1조 7516억 원

- 한국상조공제조합의 적정 보유 경제적 자본 산출결과 예시는 아래 표와 같음.
- 신용등급이 A인 상조회사들의 파산가능성에 대비하기 위해 한국상조공제는 약 6.7억 원의 자기자본을 보유해야 하는 것으로 나타남.

- 각 신용등급의 부도율과 표준편차에 따라 등급별로 보유해야 하는 적정 보유 경제적 자본(자기자본)은 달라지며 이를 모두 합한 금액 이상의 자기자본을 확보하고 있어야만 공제조합은 최소한의 재정안전성을 담보하고 있다고 볼 수 있음.

<표 34> 한국상조공제조합 적정 보유 경제적 자본 산출예시

- 한국상조공제조합 가입사 중 신용등급 A 상호회사들의 파산가능성에 대비하기 위해 필요한 적정 보유 경제적 자본금
- 공제조합 가입사 총 보유선수금: 약 1조 7,516억
 - 신용등급 비중 : 12.2%
 - 신용등급별 부도율 및 부도율의 표준편차 : 부도율(0.06%), 표준편차(0.002)
 - 선수금보전비율 : 50%
 - 할인율 : 3.23%
- 산출 수식
- 적정 보유 경제적 자본(신용등급별)
- $$= \frac{\text{연초총보증선수금} \times \text{신용등급분포} \times (\text{연상위 99\% 상호회사 부도율} - \text{연평균상호회사 부도율})}{\sqrt{1 + \text{할인율}}}$$
- 주) 연초 총 보증선수금 = 공제조합 가입사 총 보유 선수금 × 선수금보전비율
주) 상위 99% 상호회사 부도율 = 평균상호회사 부도율 + 2.33 × 상호회사 부도율 표준편차
- ∴ 위 식에 각 변수를 대입하면,
- $$\frac{\text{약}1\text{조}7,516\text{억} \times 12.2\% \times 50\% \times (0.06\% + 2.33 \times 0.002 - 0.06\%)}{\sqrt{1.0323}} = \text{약}4.35\text{억원}$$

- 또한 각 등급별로 산출된 적정 보유 경제적 자본은 아래 표와 같음.
- 아래 표 중 AAA, AA의 경우 부도율이 0%이기 때문에 경제적자본은 필요치 않은 것으로 나타남.
- B이하 신용등급은 현재 한국상조공제에 가입된 회사가 없기 때문에 경제적 자본이 필요치 않은 것으로 나타남.
- 이에 따라 현재 가입사들의 신용등급 분포와 추가적인 변수들을 감안하였을 때 A, BBB, BB 신용등급을 보유한 상조회사들의 파산가능성에 대비하여 경제적 자본을 보유해야 하는 것으로 나타남.

<표 35> 한국상조공제조합 적정 보유 경제적 자본 산출

구분	분포	신용등급별 공제가입사 총보유선수금 (백만원)	부도율	등급별 표준 편차	적정 경제적 자본(억원)	
					선수금보전 비율 40%	선수금보전 비율 50%
AAA	54.0%	945,267	0%	0	-	-
AA	17.9%	312,745	0%	0	-	-
A	12.2%	214,415	0.06%	0.002	3.48	4.35
BBB	15.8%	276,640	0.87%	0.012	29.40	36.75
BB	0.1%	2,546	5.26%	0.044	1.02	1.28
B	0.0%	-	5.5%	0.043	-	-
CCC	0.0%	-	18.1%	0.252	-	-
CC	0.0%	-	23.6%	0.275	-	-
C	0.0%	-	29%	0.298	-	-
					33.9	42.38

- 한국상조공제조합 가입 회원사당 평균적으로 약 0.54억원(40%인 경우) 그리고 약 0.68억원(50%인 경우)의 경제적 자본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남.

- 단, 주의해야 할 점은 위 경제적 자본은 현재 한국상조공제가 보유한 자기자본에 추가적으로 적립해야 할 부분이 아니라는 점임.

- 따라서 현재 공제조합 설립을 위한 법정 최소 납입자본금이 200억원이며, 실제 672억원(12년 기준)을 출자금으로 보유하고 있고 이익잉여금의 수준이 100억원(2012년 기준)이 넘는다는 점을 고려하면 경제적 자본은 부족하지 않다고 볼 수 있음.

- 이익잉여금 수준이 빠르게 증가[44억원(11년) → 100억원(12년)]하고 있어 매년 재정건전성이 강화될 것으로 예상.

2. 상조보증공제조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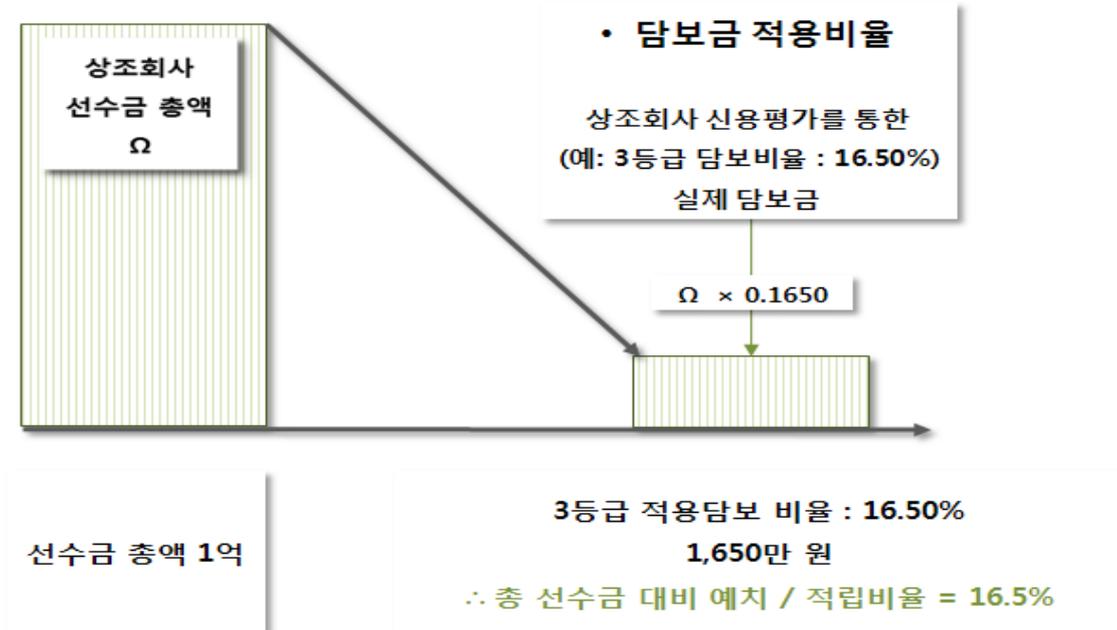
- 상조보증공제조합은 2013년 현재 32개의 상조회사가 가입되어 있으며, 회원 총 선수금을 기준으로 약 21%의 낮은 점유율을 보이고 있음.
- 또한 한국상조공제조합과는 달리 신용등급이 낮은 상조회사의 분포가 많아 리스크 관리의 중요성이 높음.
- 규모는 작지만 부도가 예상되는 등급의 가입사들이 많아 적절한 담보금 및 경제적 자본 적립에 대한 관리가 필요함.
- 아래표는 2013년 기준 상조보증공제조합의 가입하고 있는 회사들의 신용등급 분포임.

<표 36> 상조보증공제조합 신용등급 분포

상조보증공제조합 신용등급	신용등급 별 상조회사수	비율
1등급	6	18.8%
2등급	2	6.3%
3등급	12	37.5%
4등급	2	6.3%
5등급	4	12.5%
6등급	4	12.5%
7등급	1	3.1%
8등급	1	3.1%
9등급	0	0.0%

- 상조보증공제가 현재 요구하는 담보금 프로세스와 담보금 산출 예시는 아래 그림과 같음.
- 단, 아래 그림의 예시는 상조보증공제 신용등급이 3등급 등급(일반 신용등급의 A)로 산출된 결과임.

<그림 33> 상조보증공제조합 공제 순보증금 산출 프로세스



□ 위 그림을 통해 상조보증공제가 현재 요구하는 담보금은 아래와 같은 산식을 통해 계산되고 있음을 알 수 있음.

○ 담보금 = 선수금 총액 × 담보제공비율

• 이로 인해 총 선수금 대비 예치비율은 법적 규제 선수금에 비해 낮은 수준으로 산출되고 있음.

□ 이로 인해 신용등급이 낮은(부도율이 높은) 조합사 다수의 부도가 발생할 경우 예상손실을 초과하는 손실액이 발생할 수 있으며, 더 나아가 연쇄 부도가 발생하였을 경우 공제조합의 재정적 안정성에 문제를 초래할 수 있음.

□ 그렇기 때문에 상조보증공제조합은 예상손실과 미예상손실에 대비하여 적절한 수준의 담보금과 경제적 자본을 적립하는 것이 중요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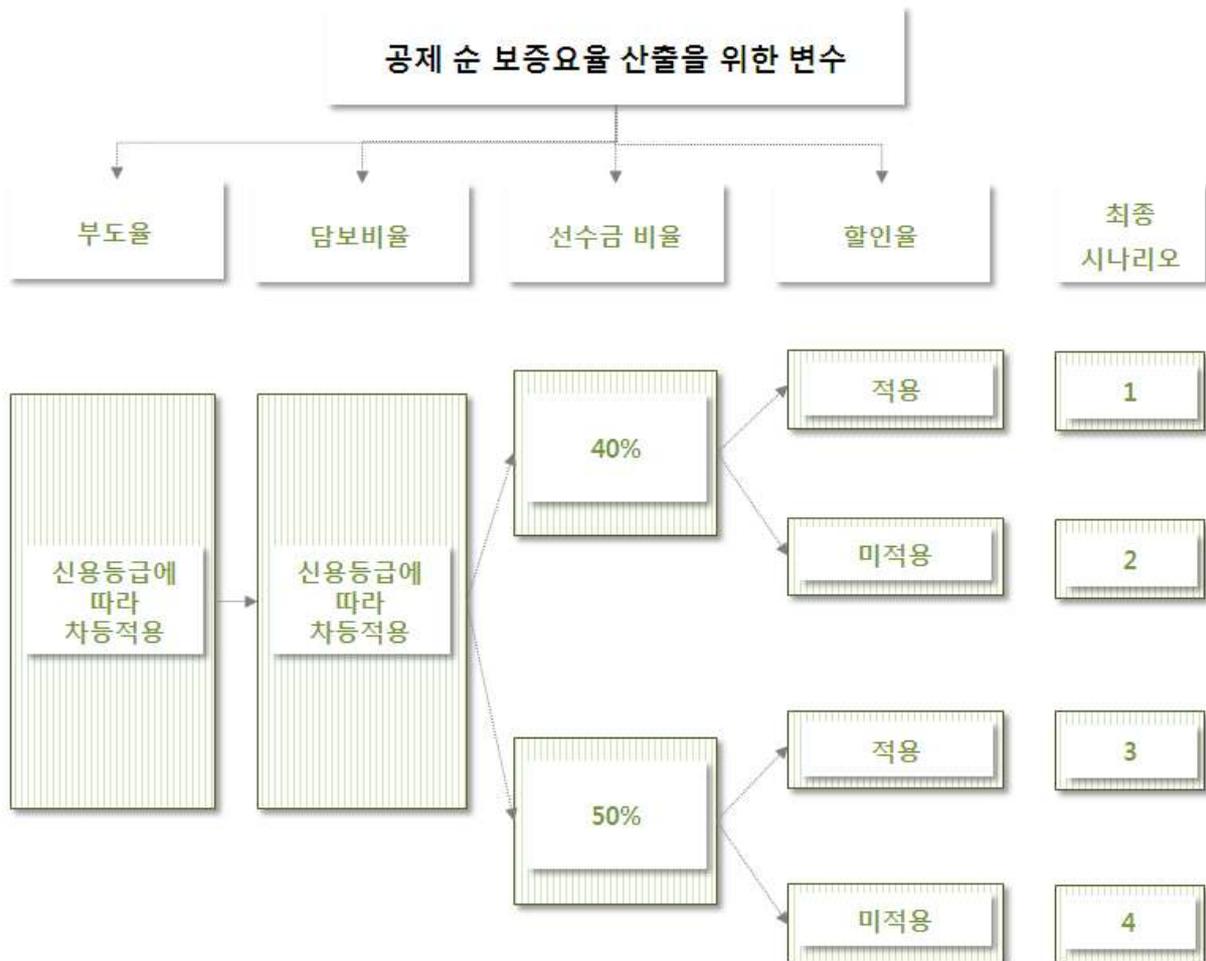
1) 예상손실(Expected Loss) - 공제 순보증료 산출

□ 공제 순 보증요율을 산출하는 수식은 아래와 같이 공제 위험보증요율(우향의 좌측)과 공제 저축보증요율(우향의 우측)로 구성됨.

$$\bullet \text{ 공제 순 보증요율} = \frac{\text{부도율} \times \text{선수금보전비율}}{\sqrt{1 + \text{할인율}}} + \frac{(1 - \text{부도율}) \times \text{담보비율}}{1 + \text{할인율}}$$

□ 공제 순 보증요율을 산출을 위해 필요한 변수는 아래와 같은 네 가지로서 이에 따라 최종적인 시나리오는 네 가지로 구성됨.

<그림 34> 공제 순 보증요율 산출의 네 가지 시나리오



□ 네 가지 변수의 세부적 가정은 아래와 같음.

○ 첫째, 선수금 보전비율은 40%일 경우와 50%일 경우를 각각 모두 적용함.

○ 둘째, 부도율은 신용등급별로 산출하며, 한국신용평가, 한국기업평가, Nice신용평가 3사 과거 10년 부도율의 평균값을 적용함.

- 단, 상조보증공제와 대표적 신용평가 3사의 신용등급체제가 상이하므로 이를 아래 표와 같이 매칭시켜 신용평가 3사의 등급기준을 따름.

<표 37> 신용평가기관 3개사와 상조보증공제조합 신용등급체제와 적용 부도율

신용평가 3사 신용등급 체계	상조보증공제조합 신용등급 체계	최종 적용 부도율
AAA	1등급	0%
AA	2등급	0%
A	3등급	0.06%
BBB	4등급	0.87%
BB	5등급	5.26%
B	6등급	5.5%
CCC	7등급	18.1%
CC	8등급	23.6%
C	9등급	29%

주1) 산출근거는 APPENDIX 4 참조

주2) CC등급의 부도율은 과거 자료가 없어 C등급과 CCC등급의 부도율을 활용하여 직선보간법으로 산정하였음.

주3) 외부 신용평가사의 등급(AAA~C)와 상조보증공제조합 신용평가체계(1~10등급) 간의 매칭은 연구의 필요에 의한 연구자의 판단에 의한 분류이며 이에 대한 과학적 합리성/객관성은 향후 추가적인 연구가 필요함.

○ 셋째, 담보비율은 상조공제조합 약관을 참조하여 아래 표와 같이 적용함.

<표 38> 신용등급별 담보비율

구분	AAA	AA	A	BBB	BB	B	CCC	CC	C
담보비율	15%	15.5%	16.5%	17.5%	19%	20%	21.5%	22.5%	24%

- 넷째, 할인율은 적용, 미적용 두 가지 시나리오로 구분되며 할인율을 적용할 경우, 2013년 12월 31일 기준 5년 만기 국고채 연 이자율 3.23%를 적용함.
- 이러한 네 가지 가정을 요약하면 아래 표와 같음.
- 상조보증공제조합의 공제 순 보증요율을 산출요약은 아래 표와 같음.

<표 39> 공제 순 보증요율 산출 예

상조보증공제조합 - A 신용등급 상조회사의 공제 순보증요율						
○ 산출을 위한 변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선수금비율 : 50% • 부도율 : 0.06% • 담보비율 : 16.50% • 할인율 : 적용 						
○ 산출식						
$\frac{\text{부도율} \times \text{선수금보전비율}}{\sqrt{1 + \text{할인율}}} + \frac{(1 - \text{부도율}) \times \text{담보비율}}{1 + \text{할인율}} = \text{공제 순 보증요율}$						
위 식에 각 변수를 대입하면,						
$\frac{0.06\% \times 50\%}{\sqrt{1.0323}} + \frac{(1 - 0.06\%) \times 16.5\%}{1.0323} = 16.00\%$						
○ 공제 순보증요율과 현재 담보비율과의 차이						
신용 등급	부도율	① 담보비율	② 공제 위험 보증요율	③ 공제 저축 보증요율	④ 순 공제 보증요율 (②+③)	①-④ 부족 담보비율
A	0.06%	16.50%	0.03%	15.97%	16.00%	0.50%

- 위 예시와 같이 A 상조회사의 경우, 공제 위험보증요율은 0.03%, 공제 저축보증요율은 15.97%로 산출되어 공제 순보증요율은 16.00%로 산출되었음.
- 현재 상조보증공제조합에서 요구하는 A 상조회사 담보비율은 16.5%로 적정 예상손실액 보다 0.5%p 높은 담보비율을 요구하는 것으로 나타남.
- 두 번째로 모든 변수들이 변화할 때 위와 같은 공제 순 보증요율 산출프로세스에 따라 산출된 현재 부족 담보비율은 아래 표와 같이 요약됨.

<표 40> 공제 순보증요율과 현행 공제조합 담보비율과의 차이

선수금(%)	40%		50%	
	유 (1)	무 (2)	유 (3)	무 (4)
할인율 (시나리오)				
AAA	0.47%	0.00%	0.47%	0.00%
AA	0.48%	0.00%	0.48%	0.00%
A	0.50%	-0.01%	0.50%	-0.02%
BBB	0.35%	-0.20%	0.27%	-0.28%
BB	-0.51%	-1.10%	-1.03%	-1.63%
B	-0.48%	-1.11%	-1.02%	-1.66%
CCC	-2.69%	-3.36%	-4.48%	-5.17%
CC	-3.44%	-4.13%	-5.76%	-6.49%
C	-3.93%	-4.65%	-6.79%	-7.55%

- <표 36>에서 보듯이 68.9%의 조합 회원사가 BBB(4등급) 이상이므로 <표 40>의 결과에서 알 수 있듯이 상당수의 조합회원이 적정 담보비율을 초과하는 수준의 공제 순보증금을 내고 있는 것으로 보여짐.
- 단, 현재 산출된 공제 순 보증요율에는 회수율이 반영되어 있지 않아, 보수적 관점에서 산출되었음을 유의해야 함.
- 참고로 자본재공제조합(48.5%), 전문건설공제조합(46.22%), 소프트웨어공제조합(54.94%) 등의 공제조합은 상당량의 회수율을 보이고 있어, 단순한 현재 담보

비율이 부족하다고 해서 공제조합의 재무건전성이 악화된다고 보기에는 무리가 있음.

2) 미예상손실(Unexpected Loss) - 시장변동성을 반영한 경제적 자본

□ 상조공제조합의 경제적 자본 산출 프로세스는 한국상조공제조합의 경제적 자본 산출 프로세스와 동일하며 다음의 산식을 통해 산출됨.

○ 적정 보유 경제적 자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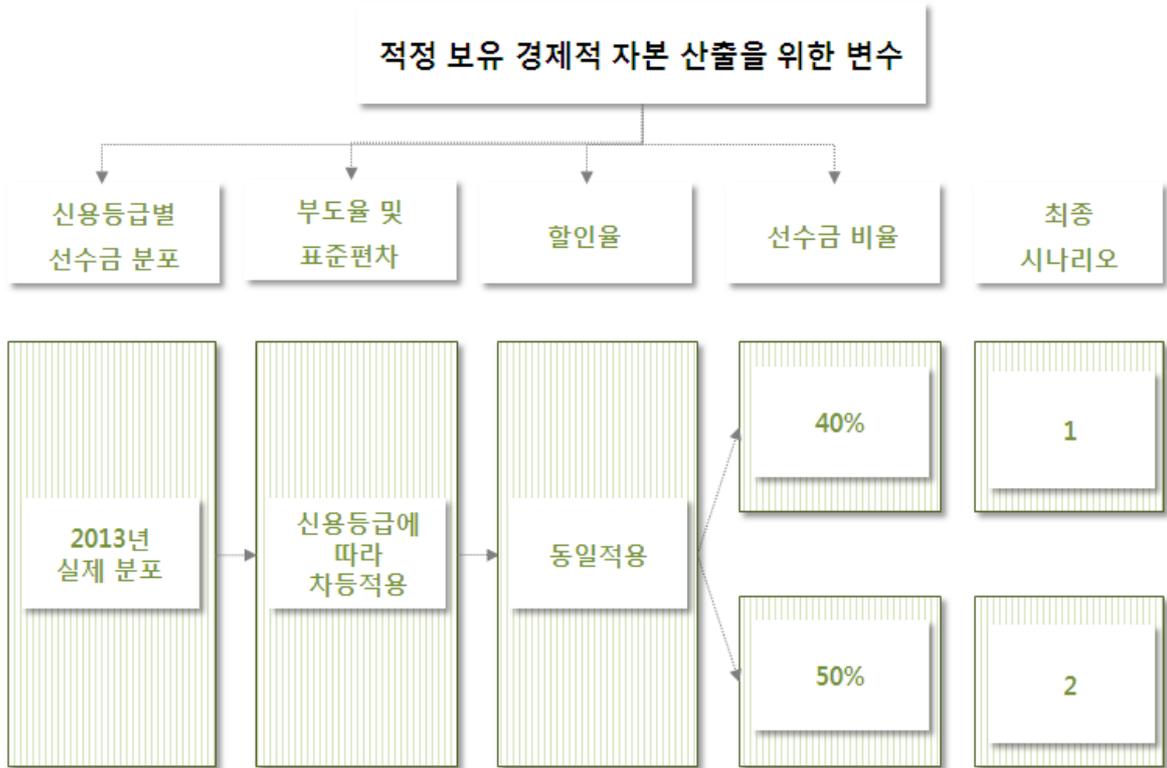
$$= \frac{\text{연초 총 보증 선수금} \times (\text{연 상위 99\% 상조회사 부도율} - \text{연 평균 상조회사 부도율})}{\sqrt{1 + \text{할인율}}}$$

주1) 위 식에서 상위 99% 상조회사 부도율은 평균상조회사 부도율 + 2.33 × 상조회사 부도율 표준편차로 산출됨.

주2) 또한 연초 총 보증 선수금은 상조보증공제 조합사의 총 선수금 × 법적 선수금보전비율(2013년 40%, 2014년 50%)로 산출됨.

□ 적정 보유 경제적 자본 산출을 위해 필요한 변수는 아래 그림과 같이 다섯 가지이며 선수금 비율에 따라 두 가지 시나리오로 분류됨.

<그림 35> 적정 보유 경제적 자본 산출을 위한 두 가지 시나리오



- 첫째, 신용등급별 선수금 분포는 2013년 기준 실제 상조보증공제조합에 가입한 32개 가입사들이 보유하고 있는 실제 선수금 분포를 신용등급별 선수금 분포로 적용하였음.

<표 41> 상조보증공제조합의 신용등급별 분포

구분	AAA	AA	A	BBB	BB	B	CCC	CC	C
비중	37.7%	1.7%	53.3%	1.5%	3.6%	1.8%	0.3%	0.1%	0%

- 둘째, 신용등급별 부도율 및 부도율 표준편차는 한국신용평가, 한국기업평가, Nice신용평가 3사 과거 10년 부도율의 평균값과 표준편차를 적용함.

<표 42> 신용등급별 부도율 평균 및 표준편차

구분	AAA	AA	A	BBB	BB	B	CCC	CC	C
부도율	0%	0%	0.06%	0.87%	5.26%	5.5%	18.1%	23.6%	29%
표준편차	0	0	0.002	0.012	0.044	0.044	0.252	0.275	0.298

주) CC등급의 부도율 평균 및 표준편차는 과거 자료가 없어 C등급과 CCC등급의 부도율을 활용하여 직선보간법으로 산정하였음.

- 셋째, 할인율은 2013년 12월 31일 기준 5년 만기 국고채 연 이자율 3.23%를 적용함.
- 넷째, 선수금 보전비율은 40%일 경우와 50%일 경우를 각각 모두 적용함.
- 다섯째, 상조보증공제조합 가입사의 총 보유 선수금은 2013년 기준 약 4,717억 원을 적용함.
- 상조보증공제조합의 적정 보유 경제적 자본 산출결과 예시는 아래 표와 같음.
- 신용등급이 A인 상조회사들의 파산가능성에 대비하기 위해 상조보증공제는 약 3.29억 원의 경제적 자본(출자금)을 보유해야 하는 것으로 나타남.
- 각 신용등급의 부도율과 표준편차에 따라 등급별로 보유해야 하는 적정 보유 경제적 자본은 달라지며 이를 모두 합한 금액 이상의 출자금을 확보하고 있어야만 공제조합은 최소한의 재정안전성을 담보하고 있다고 볼 수 있음.

<표 43> 상조보증공제조합 적정 보유 경제적 자본 산출예시

○ 상조보증공제조합 가입사 중 신용등급 A 상조회사들의 파산가능성에 대비하기 위해 필요한 적정 보유 경제적 자본금

- 공제조합 가입사 총 보유 선수금: 약 4,717억
- 신용등급 분포 : 53.3%
- 신용등급별 부도율 및 부도율의 표준편차 : 부도율(0.06%), 표준편차(0.002)
- 선수금보전비율 : 50%
- 할인율 : 3.23%

○ 산출식

- 적정 보유 경제적 자본(신용등급별)

$$= \frac{\text{연초총보증선수금} \times \text{신용등급분포} \times (\text{연상위 99\% 상조회사부도율} - \text{연평균 상조회사부도율})}{\sqrt{1 + \text{할인율}}}$$

주) 연초 총 보증선수금 = 공제조합 가입사 총 보유 선수금 × 선수금보전비율

주) 상위 99% 상조회사 부도율 = 평균상조회사 부도율 + 2.33 × 상조회사 부도율 표준편차

∴ 위 식에 각 변수를 대입하면,

$$\frac{\text{약 } 4,717\text{억} \times 53.3\% \times 50\% \times (0.06\% + 2.33 \times 0.002 - 0.06\%)}{\sqrt{1.0323}} = \text{약 } 5.10\text{억 원}$$

□ 또한 각 등급별로 산출된 적정 보유 경제적 자본은 아래 표와 같음.

○ 아래 표 중 AAA, AA의 경우 부도율이 0%이기 때문에 경제적자본은 필요치 않은 것으로 나타났음(단, 공제조합 자체의 신용등급을 외부 신용평가사의 신용등급으로 전환한 것이므로 이에 대한 객관성은 차후 검토 사항임).

○ 이에 따라 현재 가입사들의 신용등급 분포와 추가적인 변수들을 감안하였을 때

A, BBB, BB, B, CCC, CC 신용등급을 보유한 상조회사들의 파산가능성에 대비하여 경제적 자본을 보유해야 하는 것으로 나타남.

<표 44> 상조보증공제조합 적정 보유 경제적 자본 산출

구분	분포	등급별선수금 (백만원)	부도율	등급별 표준편차	적정 경제적 자본(억원)	
					선수금보전 비율 40%	선수금보전 비율 50%
AAA	37.7%	177,816	0%	0	-	-
AA	1.7%	7,792	0%	0	-	-
A	53.5%	251,579	0.06%	0.002	4.08	5.10
BBB	1.5%	7,208	0.87%	0.012	0.76	0.95
BB	3.6%	17,014	5.26%	0.044	6.87	8.59
B	1.8%	8,314	5.5%	0.043	3.32	4.15
CCC	0.3%	1,382	18.1%	0.252	3.20	4.00
CC	0.1%	618	23.6%	0.275	1.56	1.95
C	0.0%	-	29%	0.298	-	-
					19.79	24.74

- 상조보증공제조합 가입 회원사당 평균적으로 약 0.61억원(40%인 경우) 그리고 약 0.77억원(50%인 경우)의 경제적 자본이 필요함.
- 현재 공제조합 설립을 위한 법정 최소 납입자본금(출자금)이 200억원이고 12년 현재 325억원을 보유하고 있고, 이익잉여금이 11억원(2012년 기준)을 넘는다는 점을 고려하면 경제적 자본이 부족하지 않다고 평가할 수 있음.
- 이익잉여금 수준이 빠르게 증가[6억(11년) → 11억(12년)]하고 있어 매년 재정 건전성이 강화될 것으로 예상.

3. 공제조합의 지속가능성을 위한 리스크 관리 방안

- 공제조합의 지속가능성을 제고하기 위한 리스크 관리 방안은 두 가지로 제안할 수 있음.
- 첫 번째로 적정 담보비율 및 경제적 자본을 산출하여 공제조합을 운영한 이후에도 지속가능성을 분석하기 위해서는 매년 사후적으로 손해율(Loss Ratio)¹⁰⁾ 분석을 할 필요가 있음.
- 손해율 산출에 필요한 산식은 다음과 같이 정의됨. 즉,

손해율(LR)

$$= \frac{(\text{공제사고 발생 상조회사}) \text{법정 선수금 보전금 지급총액} + (\text{공제사고 미발생 상조회사}) \text{담보금 총액}}{\text{공제 순보증료 수입총액}}$$

- 공제조합은 보증상품 목표손해율 구간(Target Loss Ratio Band)을 설정하고, 이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운영 관리해야함.
- 공공성이 강조되는 “자동차보험”의 경우 금융감독원 지침에 의하면 Off-line 경우의 예정손해율은 73%, On-line 경우의 목표손해율은 85%로 설정하고 있음.
 - On-line의 목표손해율이 더 높게 설정되는 주된 이유는 언더라이팅 기능이 미비함에 기인함.
- 상조공제조합의 경우, 모집인의 수가 적고 On-line Marketing에 의존하는 비율도 높아 초기 목표손해율을 85%로 설정하여 운영을 하고 이후 점진적으로 조정하여 운영함.
- 연도 말에는 상조회사 보증에 대한 손익 분석 결과를 기초로 하여 차 년도에 적

10) 공제조합의 연도별 손해율은 상조회사 보증으로 부터 유입된 연도별 금액(Cash Inflow) 대비 유출된 연도별 금액(Cash Outflow)의 비율이다. 여기서 유입된 금액은 공제 순 보증료 수입총액을 의미하고, 유출된 금액은 공제사고로 인해 지출된 법정선수금 보전금 지급총액과 공제사고가 발생하지 않은 상조회사의 담보금 총액을 의미한다. 결국 손해율이 100%를 넘어갈 경우 상조회사 보증으로 인하여 유출된 돈이 유입된 돈 보다 많은 것을 의미하며 이 경우 net value는 (-)이 되게 된다. 그렇기 공제조합은 목표로 하는 적정 손해율을 설정하여 목표 손해율이 유지되도록 운영해야 한다.

용할 공제 순보증요율, 적정 보유 경제적 자본을 정기적으로 조정함(actuarial regular control).

- 다만 현재 보험과 달리 관련 경험치 데이터 축적이 미비하고 조합의 전문성을 고려할 때 중장기적으로 접근할 필요가 있음
- 손해율분석 오류로 적정담보비율 산정이 잘못될 경우 조합의 재무건전성에 큰 타격 우려가 있음
- 두 번째로 우리는 공제조합의 신용평가에 대한 적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신용평가(안)을 제안할 수 있음(적정 공제 위험보증료 산출을 위해 필수 요건임).
- 대외적으로 공신력이 있는 신용평가기관(예: 한국기업평가)의 평가등급을 기초로 하거나, 조합원에 대한 신용평가는 공제조합 자체 신용평가등급을 결정하면서 신용평가기관의 평가등급기준을 반영하는 방안이 있음.
- 또한 공제조합 설립의 요건 혹은 향후 공제조합의 재무건전성을 유지·관리하고 신용평가능력을 강화하기 위해 회계사 고용 등 전문성을 제고하려는 노력 필요.

VII. 규제의 방향성 제시 및 결론

1. 상조시장 리스크관리를 위한 규제의 방향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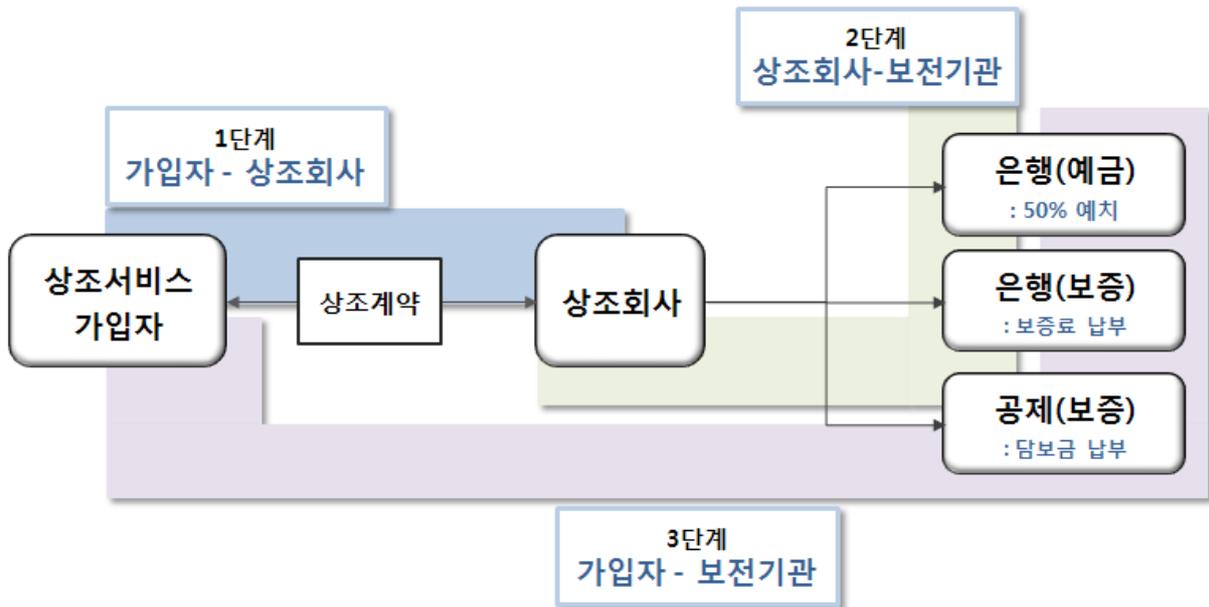
- 상조시장의 건전하고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해서는 상조회사, 상조공제조합의 재정안전성이 담보되어야 함.
- 현재까지의 규제 또한 상조업의 발전과 맞물려 상조서비스 표준약관(2007년), 할부거래법 개정(2010년) 등이 이루어지며 많은 노력이 있어왔음.
- 따라서 향후 상조업의 성장을 위해 본 연구에서 제시한 상조시장(상조회사, 상조공제조합)의 리스크 관리방안이 적용되기 위해서는 향후 점진적이고 단계적으로 본 연구에서 제안한 RM방안이 정착되도록 유도해야 할 필요성이 있음.
- 본 연구에서는 상조회사 리스크 관리를 위한 규제 방향성을 단기적·장기적으로 분리하여 제시하였으며 이를 위해 관련법의 개정을 통해 지급여력비율을 일정 수준으로 유지해야 할 것임. 예를 들어 최소 지급여력비율을 100%로 유지·관리할 의무를 부여하는 방안을 점진적으로 도입할 필요가 있음.
- 아울러 일본처럼 등록제에서 허가제로 개선하는 법 개정을 신중히 검토할 필요성이 있음.
- 상조공제조합의 경우 가장 먼저 각 공제조합(한국상조, 상조보증)이 각각의 기준에 의거하여 산출되는 신용등급의 대외적 공신력을 확보하는 것을 검토하여야 함.
- 만약, 신용등급의 신뢰도 확보가 어려울 경우 본 연구에서는 외부 신용평가사의 신용등급을 활용할 것을 제안함.
- 실제로 타 공제조합(콘텐츠공제조합, 소프트웨어공제조합 등)의 경우 신용평가

사와의 MOU체결을 통해 각 공제조합이 속한 산업환경에 맞는 신용평가기준을 마련하고 이를 활용하고 있음.

- 또한 시장의 영세함으로 인해 외부 신용평가사의 신용등급이 너무 낮게 산출된다면, 공제조합의 자체적 기준을 통해 외부 신용등급을 조정할 수 있음.
- 상조공제조합은 상호부조(cross subsidization, mutuality)적 성격으로 영세한 사업자들 또한 가입할 수 있는 리스크 관리방안이 필요하며 이를 위해 본 연구에서는 리스크 관리방안을 제시하였음.
- 첫째, 공제사고율(상조회사 부도율)을 반영한 공제 순보증요율 산출.
- 둘째, 상조시장의 변동성을 반영한 적정 요구 자기자본 산출.
- 이러한 리스크 관리방안이 적용될 수 있는 공제조합 규제방안이 향후 공제조합 규제체계의 방향성으로 볼 수 있음.
- 회계적 투명성과, 적정 수준의 리스크관리가 이루어지기 위한 규제체계가 필요할 것으로 보임.

2. 결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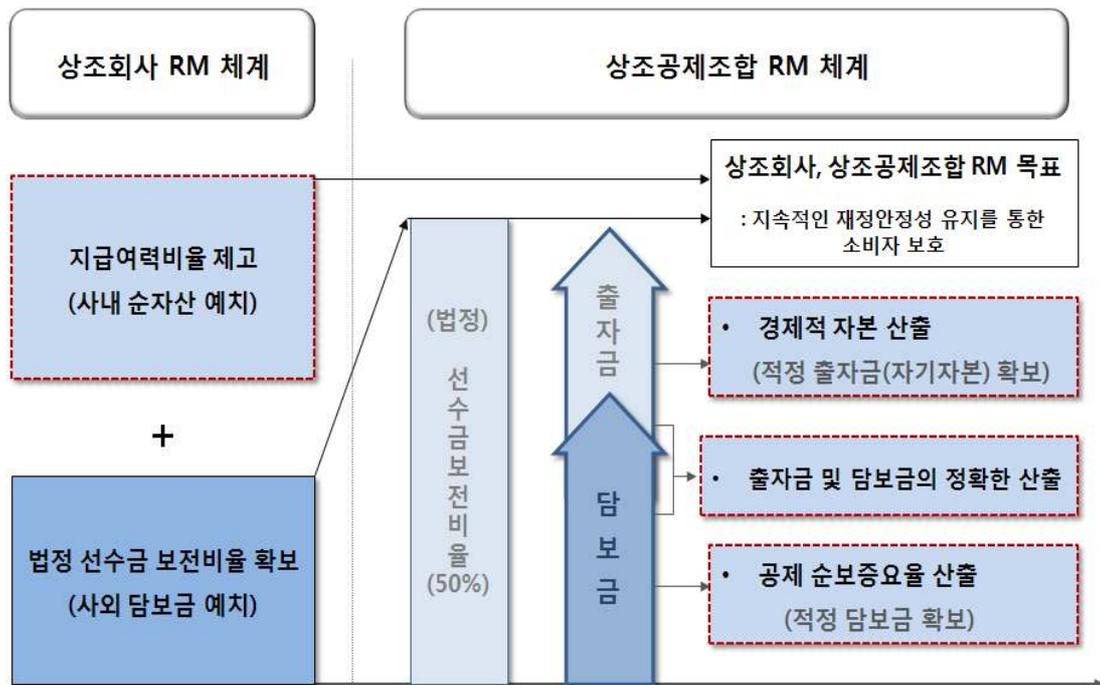
- 상조시장은 선불식 할부거래법에 의해 등록되는 기관이며, 거래의 특성상 준 금융기관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음.
- 상조시장에 대한 단계별 리스크관리(RM) 대상은 아래와 같이 요약됨.



- 상조회사와 상조공제조합은 시장의 충격을 반영하여 점진적으로 국내의 금융기관과 같이 재정안정성을 유지하기 위한 RM이 이루어져야 함.
- 왜냐하면, 현재 전체 상조회사 중 53.3%에 달하는 회사가 자본잠식상태에 놓여 있는 상태에 있음.
- 또한 전체 상조회사 대비 47.1%에 달하는 120개 상조업체가 자산규모 10억원 미만이며, 이들 회사의 자산총액은 전체 상조회사 자산총액의 2.2%에 불과할 정도로 양극화가 심화되어 있는 상태임.
- 소비자 피해보상을 위해 설립된 상조공제조합의 경우 상조회사의 현금 유동성을 확보해주고, 상조회사의 서비스 제공불능 상태 시 소비자 피해보상을 담당하는 기구로서 설립되었으나 현재 RM측면에서는 여러 가지 문제점을 보이고 있음.

- 공제조합은 다양한 상품판매를 통해 risk를 관리해나갈 수 있는 타 공제조합과 달리 동일한 리스크를 가지고 있는 상품만을 판매하는 형식의 구조를 띄고 있다는 점을 고려한 정밀하고 보수적인 리스크관리가 필요.
- 출자금에 예상손실을 반영한 공제료가 포함된 경우 예상손실과 미예상손실의 정확한 산출이 더욱더 중요해짐.
- 본 연구에서 제시한 상조시장(상조회사+ 상조공제조합)의 전체 RM 방안을 아래와 같이 도식화 할 수 있음.

<그림 36> 상조시장 전체적 RM 방안



- 위 그림과 같은 RM 방안을 실행하기 위해 최우선적으로 적용되어야 할 전제조건은 다음과 같음.
- 현재 공제조합이 산출하고 있는 상조회사의 신용등급에 대한 신뢰성이 확보되어야 함.
- 즉, 공제조합은 합리적 담보비율(공제 순보증요율)을 산출하기 위해서 상조회사

에 대한 적합한 신용등급을 산출하는 객관적 내부 프로세스를 확보 혹은 외부 신용평가사의 등급을 활용해야 함.

- 다음으로 상조회사의 재무건전성을 확보를 위해 다음과 같이 상조회사를 그룹핑하여 관리 필요(단, 공정위의 판단에 의해 아래 내용은 조정될 수 있음).
 - 지급여력비율이 50% 이상 100% 미만일 경우 : 경영개선권고 그룹
 - 지급여력비율이 0% 이상 50% 미만일 경우 : 경영개선요구 그룹
 - 지급여력비율이 0% 미만일 경우 : 공정위의 판단에 의해 파산절차 혹은 회생절차를 따름
- 또한 상조회사의 재무건전성을 검증하고 부실한 경영을 방지하기 위해 외부회계 감사를 의무화하고 상조회사 임직원에 대한 대출 및 지배주주 등에 대한 신용공여 등을 금지 또는 제한할 필요가 있음
- 공제조합의 경우, 영세한 상조회사에 대해 현금유동성을 제공하고 소비자에게는 사후적인 피해보상을 해준다는 점에서 상조시장 리스크관리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라고 할 수 있음.
- 두 공제조합 재정안정성을 강화하기 위한 방향을 제시.
 - 첫째, 공제조합은 담보비율의 적정성 확보를 위한 지속적 노력 필요.
 - 담보비율이 낮게 형성될 경우 조합의 안정적인 재무안정성 확보에 우려가 생김.
 - 둘째, 두 공제조합 신용등급평가 등을 위한 전문성 제고에 노력할 필요가 있음.
 - 현재 상조시장 부도율에 대한 통계가 충분하게 축적되어 있지 않으나 향후 상조시장의 부도율에 대한 통계적 유의성을 확보한 후 공제 순보증료 산출을 통한 적정 담보비율이 산출될 필요.

- 다만 상조회사 및 공제조합의 재무건정성 확보를 방안의 시행은 시간을 두고 순차적으로 할 필요.
- 상조시장은 2010. 9월 할부거래법이 개정되면서 선불식 할부거래업에 대한 규제 형태로 규제가 시작되었으므로 시장이 안정화될때까지 어느 정도 시간이 필요할 것으로 보임.
 - 현재 상태에서 상조회사에 대한 급격한 재무건정성 확보 방안의 실시는 오히려 상조회사들의 재정적 부담을 초래하여 상조시장 자체의 부실로 이어질 우려.
- 공제조합의 경우에도 상조시장이 안정화 된 이후에 적정담보율 등을 다시 평가하여 담보비율 등을 결정할 필요.
- 마지막으로 상조회사와 공제조합은 법인이지만 경제적 약자가 상조회사 및 공제조합의 실제적 가입자인 점 그리고 예치금은 원금과 해당이자에 대한 보장이 필요하므로 신탁예치가 아닌 점 등을 고려한다면 장기적으로 예금자보호제도에 편입되도록 제도적 개선이 필요할 것임.

<참 고 문 헌>

- 고형석, 상조업과 소비자보호법, 법문사, 2012
- 김동훈, 보험론, 학현사, 2011
- 김수환, 중소기업협동조합의 공제사업 활성화, 중소기업연구원, 2007
- 바젤Ⅲ에 따른 강화된 자본규제를 국내은행에 시행(보도자료), 금융위원회, 2013
- 박재구 외 2명, 선불식 할부거래 해약환급금, 공정거래위원회, 2011
- 보험회사 위험기준 경영실태평가제도(RAAS) 해설서, 금융감독원, 2012
- 보험회사 위험기준 자기자본(RBC)제도 해설서, 금융감독원, 2012
- 상조업 시장의 법준수 지침 제정에 관한 연구, 한국경제법학회, 2011
- 상조업과 소비자보호법, 고형석, 법문사, 2012
- 상조업체 재무상태 평가 및 대응방안 연구, 한국경제법학회, 2012
- 오영수, 일반공제사업 규제의 합리화 방안, 보험연구원 2011
- 윤평식 외 1명, VaR, 경문사, 2000
- 이건호, 상조서비스 피해방지를 위한 입법적 과제, 국회입법조사처, 2009
- 이기형, 보험산업 진입 및 퇴출에 관한 연구, 보험연구원, 2012
- 장독식 외 1명, 슬벤시 II의 보고 및 공시 체계와 시사점, 보험연구원 2012
- 황진태 외 2명, 보험회사의 상조서비스 기여방안, 보험연구원 2011
- 2013년도 상조업 재무현황·선수금 보전현황 등 주요정보 분석 결과, 소비자정책
국 특수거래과, 2013
- 2013년 금융감독제도, 금융감독원, 2013
-
- 공정거래위원회 보도자료
- 상조보증공제조합약관
- 보험업감독규정
- 자본시장통합법
- 한국상조공제조합공제규정
- 한국기업평가(www.korearatings.com)
- 한국신용평가(www.kisrating.com)
- 할부거래법
- Nice신용평가(www.nicerating.com)

Modern Actuarial Theory and Practice –Second Edition–, Philip Booth, Robert Chadburn, Steven Haberman, Dewi James, Zaki Khorasanee, Robert H. Plumb, Ben Rickayzen, CHAPMAN & HALL/CRC, 2004

日本 割賦販賣法(1961年 7月 1日 法律 第159號)

日本 割賦販賣法施行令(1961年 10月 1日 政令 第341號)

日本 割賦販賣法施行規則(1961年 11月 14日 通商産業省令 第95號)

日本 互助會保證株式會社 業務方法書(經濟産業大臣 申告 2010年 2月 26日)

日本 互助會保證株式會社 審査のポイント(2010年 1月 1日 改訂)

日本 互助會保證株式會社 홈페이지 <http://www.gojokaih.co.jp>

APPENDIX 1. 일본 할부판매법상 선불식 할부판매(상조업) 관련규정

<일본의 선불식 할부판매(상조업) 관련 규정>

I. 할부판매법 : 제2장(할부판매) 제3절 선불식 할부판매

(선불식 할부판매업의 허가)

<제11조> 지정상품을 인도하기에 앞서 구입자로부터 2회 이상에 걸쳐 그 대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수령하는 할부판매(선불식 할부판매)는 경제산업대신의 허가를 받은 자가 아니면 업으로서 영위해서는 아니 된다. 다만 다음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지정상품의 선불식 판매 방법에 의한 연간 판매액이 시행령에서 정한 금액에 미치지 않는 경우
2. 지정상품이 새롭게 정해진 경우에 현재 당해 지정상품을 선불식 할부판매의 방법에 의해 판매하는 것을 업으로 영위하는 자가 그 정해진 날부터 6개월간 (그 기간 내에 다음 조항 1항의 신청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그 신청에 대해 허가 또는 불허가 처분이 있기까지의 기간을 포함) 당해 상품을 판매할 때
3. 전호의 기간이 경과한 후에 그 기간의 말일까지 체결한 같은 호의 지정상품의 선불식 할부판매의 계약에 기초한 거래를 종결할 목적의 범위 내에서 영위하는 경우

(허가의 신청)

<제12조> 전조의 허가를 받으려고 하는 자는 다음 사항을 기재한 신청서를 경제산업대신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명칭
2. 본점 기타 영업소 및 대리점의 명칭과 소재지

3. 자본금 또는 출자금액 및 임원의 이름

② 전항의 신청서에는 정관, 등기사항증명서, 선불식 할부판매계약약관, 기타 경제산업성령에서 정한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다만 경제산업성령에서 정한 경우에는 등기사항증명서의 첨부를 생략할 수 있다.

③ 전항의 경우에 정관이 전자적 기록(전자적 방법, 자기적 방식, 기타 사람의 지각에 의해서는 인식할 수 없는 방식으로 만들어진 기록이고, 전자계산기에 의한 정보처리용으로 제공되는 것을 말한다. 이하 같음)으로 만들어진 경우에는 서면을 대신하여 전자적 기록(경제산업성령으로 정한 것에 한정)을 첨부할 수 있다.

<제13조> 삭제

<제14조> 삭제

(허가의 기준)

<제15조> 경제산업대신은 제11조의 허가를 신청한 자가 다음 각호의 어느 것에 해당하는 것으로 인정되는 때에는 같은 조의 허가를 해서는 아니 된다.

1. 법인이 아닌 자
2. 자본금 또는 출자금액이 구입자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해 필요하고 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금액으로 시행령에서 정한 것에 미치지 못하는 법인
3. 자산의 합계액에서 부채의 합계액을 공제한 금액이 자본금 또는 출자금액의 100분의 90에 상당하는 금액에 미치지 못하는 법인
4. 앞의 2호에 제시한 것 이외에 그 영위하려고 하는 선불식 할부판매에 관련된 업무를 건전하게 수행하기에 충분한 재산적 기초를 갖지 않은 법인
5. 선불식 할부판매계약약관의 내용이 경제산업성령·내각 부령에서 정한 기준에 적합하지 않은 법인
6. 제23조 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해 허가가 취소되어, 그 취소 일로부터 2년이 경과하지 않은 법인
7. 이 법률 규정에 의해 벌금형에 처해져 그 형의 집행에 끝나거나 또는 집행을 받은 일이 없어진 날로부터 2년을 경과하지 않은 법인
8. 임원 중에 다음의 어느 것에 해당하는 자가 있는 법인

가. 파산자로 복권을 얻지 못한 자

나. 금고 이상의 형에 처해지거나 또는 이 법률 규정에 의해 벌금형에 처해져 그 형을 마치거나 또는 집행을 받은 일이 없어진 날로부터 2년을 경과하지 않은 자

다. 제11조의 허가를 받은 자(이하, 「할부판매업자」라고 함)가 제23조 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해 허가를 취소당한 경우에 그 처분이 있었던 날 30일 이전에 그 허가할부판매업자의 임원이었던 자로 그 처분이 있었던 날부터 2년을 경과하지 않은 자

② 전항 제3호의 자산 합계액 및 부채의 합계액은 시행령에서 정한 바에 의해 계산하여야 한다.

③ 경제산업대신은 제11조의 허가 신청이 있었던 경우에 불허가의 처분을 한 때에는 지체없이 그 이유를 명시하여 그 취지를 신청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영업보증금의 공탁 등)

<제16조> 허가할부판매업자는 영업보증금을 주된 영업소 관할의 공탁소에 공탁하여야 한다.

② 허가할부판매업자는 영업보증금을 공탁한 때에는 공탁물 인수의 기재가 있는 공탁서의 사본을 첨부하여 그 취지를 경제산업대신에게 신고해야 한다.

③ 허가할부판매업자는 전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한 후가 아니면 선불식 할부판매의 영업을 개시해서는 아니 된다.

<제17조> 전조 제1항의 영업보증금액은 주된 영업소당 10만엔, 기타의 영업소 또는 대리점에 대해 영업소 또는 대리점 별로 5만엔의 비율에 의한 금액의 합계액으로 한다.

② 전항의 영업보증금은 경제산업성령에서 정한 바에 따라 국채증권, 지방채증권, 기타의 경제산업령에서 정한 유가증권(사채, 주식 등의 대체에 관한 법률 제278조 제1항에 규정한 대체사채를 포함)을 가지고 이에 충당할 수 있다.

<제18조> 허가할부판매업자는 영업 개시 이후 새롭게 영업소 또는 대리점을 설치한 때에는 당해 영업소 또는 대리점에 대해 전조 제1항에 규정하는 금액의 영

업보증금을 공탁하여야 한다.

② 제16조 및 전조 제2항의 규정은 전항의 규정에 의해 공탁하는 경우에 준용한다.

<제18조의2> 허가할부판매업자가 일부의 영업소 또는 대리점을 폐쇄한 경우에 영업보증금액이 제17조 제1항에 규정하는 금액을 초과하게 된 때에는 당해 할부판매업자는 그 초과하는 금액을 회수할 수 있다.

② 전항의 영업보증금의 회수는 당해 보증금에 대해 제20조 제1항의 권리를 가진 자에 대해 6개월을 지나지 않은 일정 기간 내에 신청해야 하는 취지를 공고하고, 기간 내에 그 신청이 없었던 경우가 아니면 할 수 없다. 다만 영업보증금을 회수할 수 있는 이유가 발생한 때부터 10년을 경과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전항의 공고 기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영업보증금의 회수에 관해 필요한 사항은 법무성령·경제산업성령에서 정한다.

(선수금 보전조치)

<제18조의3> 허가할부판매업자는 매년 3월31일 및 9월 30일(이하 이런 날을 「기준일」이라 함)에 선불식 할부판매의 계약을 체결한 자로부터 기준일까지 그 계약에 관련한 상품 대금의 전부 또는 일부로 수령한 선수금 합계액의 2분의 1에 상당하는 금액이 당해 기준일에 제17조 제1항에 규정하는 영업보증금의 금액을 초과한 때에는 다음 항의 선수금 보전조치를 강구하고, 다음 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해 그 취지를 경제산업대신에게 신고한 후가 아니면 기준일의 다음 날로부터 계산하여 50일을 경과한 날 이후에는 새롭게 선불식 할부판매 계약을 체결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선수금 보전조치는 선수업무보증금의 공탁 또는 선수업무보증금 위탁계약의 체결이고, 그 조치에 의해 허가할부판매업자가 기준일에 있어 선불식 할부판매의 계약을 체결한 자로부터 당해 기준일까지 그 계약에 관련한 상품의 대금 전부 또는 일부로서 수령한 선수금 합계액의 2분의 1에 상당하는 금액에서 당해 기준일 제17조 제1항에 규정한 영업보증금의 금액을 공제한 금액에 상당하는 금액(이하 「기준금액」이라 함)을 그 계약에 의해 발생한 채무변제에 충당할 수 있는 것으로 한다.

③ 선수금 보전조치로 체결한 선수업무보증금 공탁위탁계약은 다음 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 익일 다음의 기준일의 익일부터 계산하여 50일을 경과하는 날 (그 날 전에 당해 다음의 기준일에 관련한 기준금액에 대해 같은 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가 있었던 때에는 그 신고일)까지의 기간에 위탁자인 허가할부판매업자가 제27조 제1항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 또는 수탁자가 제20조의3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지시를 받은 경우에 수탁자가 위탁자를 위해 위탁금액에 상당하는 금액의 선수업무보증금을 공탁할 것을 약속한 계약으로 한다.

④ 은행 기타 시행령에서 정한 금융기관 또는 경제산업대신이 지정하는 자가 아니면 전항의 선수업무보증금공탁위탁계약(이하 간단히 「공탁위탁계약」이라 함)의 수탁자가 될 수 없다.

⑤ 제16조 제1항 및 제17조 제2항의 규정은 선수금 보전조치로서 선수업무보증금을 공탁하는 경우에 준용한다.

<제18조의4> 선수금 보전조치를 강구한 허가할부판매업자는 기준일 별로 당해 기준일에 관련한 기준금액에 대한 선수금 보전조치에 대해 서면으로 경제산업대신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② 허가할부판매업자가 새로운 선수금 보전조치를 강구하여 전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한 경우에는 당해 선수금 보전조치가 선수업무보증금의 공탁인 때에는 공탁물 인수의 기재가 있는 공탁서 사본을, 공탁위탁계약의 체결인 때에는 당해 계약서의 사본을 각각 같은 항의 서면에 첨부하여야 한다.

<제18조의5> 선수금 보전조치를 강구한 허가할부판매업자는 기준일에 선불식 할부판매의 계약을 체결한 자로부터 당해 기준일까지 그 계약에 관련한 상품대금의 전부 또는 일부로 수령한 선수금 합계액의 2분의 1에 상당하는 금액이 당해 기준일에 제17조 제1항에 규정한 영업보증금의 금액 이하로 된 때에는 다음 기준일까지 선수업무보증금의 전부를 회수하거나, 또는 공탁위탁계약의 전부를 해제할 수 있다.

② 전항에 규정한 경우를 제외하고, 선수금 보전조치를 강구한 허가 할부판매업자는 기준일에 당해 선수금 보전조치에 의해 선불식 할부판매의 계약에 의해 발생한 채무변제에 충당할 수 있는 금액이 당해 기준일에 관련한 기준금액을 초과하게 된 때에는 다음 기준일까지 그 초과한 금액에 대해 선수업무보증금을 회수

하거나, 또는 공탁위탁계약의 전부 혹은 일부를 해제할 수 있다.

③ 앞 2항의 규정에 의한 선수업무보증금의 회수는 경제산업성령에서 규정한 바에 따라 경제산업대신의 승인을 받지 않으면 할 수가 없다.

④ 전항에 규정한 것 외에 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선수업무보증금의 회수에 관해 필요한 사항은 법무성령·경제산업성령에서 정한다.

⑤ 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공탁위탁계약의 해제는 경제산업성령에서 정한 바에 따라 경제산업대신의 승인을 받지 않으면 그 효력이 발생하지 않는다.

⑥ 선수금 보전조치로서의 공탁위탁계약은 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경우 외에 그 전부 또는 일부를 해제할 수 없다. 다만 당해 공탁위탁계약의 일부를 해제한 경우에, 또한 당해 공탁위탁계약이 제18조의3 제3항에 규정한 요건을 충족한 것인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⑦ 전항의 규정에 반하는 특약은 무효로 한다.

(승계)

<제18조의6> 허가할부판매업자가 사업 전부를 양도하거나, 또는 허가할부판매업자에 대해 합병 혹은 분할(당해 사업의 전부를 승계시키는 것에 한함)이 있었던 때에는 당해 사업의 전부를 양수한 법인 또는 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 혹은 합병에 의해 설립한 법인 혹은 분할에 의해 당해 사업의 전부를 승계한 법인은 그 허가할부판매업자의 지위를 승계한다. 다만 당해 사업의 전부를 양수한 법인 혹은 합병에 의해 설립한 법인 혹은 분할에 의해 당해 사업의 전부를 승계한 법인이 제15조 제1항 제2호 또는 같은 항 제6호에서 제8호까지 어느 것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전항의 규정에 의해 허가할부판매업자의 지위를 승계한 자는 지체없이 그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그 취지를 경제산업대신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변경의 신고 등)

<제19조> 허가할부판매업자는 제12조 제1항 각 호에 기재한 사항에 대해 변경이 있었던 때에는 지체없이 그 취지를 경제산업대신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② 허가할부판매업자는 선불식 할부판매계약약관을 변경하려 할 때에는 그 취지

를 경제산업대신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③ 경제산업대신은 전항의 규정에 의한 변경 신고가 있었던 경우에 그 변경 후의 선불식 할부판매계약약관의 내용이 제15조 제1항 제5호의 경제산업성령·내각 부령에서 규정한 기준에 적합하지 않은 것으로 인정한 때에는 당해 허가할부판매업자에 대해 그 내용의 변경을 명할 수 있다.

④ 제12조 제2항의 규정은 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변경 신고를 한 경우에 준용한다.

(장부의 비치)

<제19조의2>

허가할부판매업자는 경제산업성령에서 정한 바에 따라 장부를 비치하고, 선불식 할부판매의 계약에 대해 경제산업성령에서 정한 사항을 기재하여 이를 보존하여야 한다.

(계약체결의 금지)

<제20조> 경제산업대신은 허가할부판매업자가 제1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해당하게 된 때에는 당해 허가할부판매업자에 대해 선불식 할부판매의 계약을 체결해서는 아니 된다는 취지를 명하여야 한다. 다만 그 명령을 함으로써 구입자의 보호를 해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경제산업대신은 전항의 규정에 의한 명령을 한 경우에 그 허가할부판매업자가 6개월 이내에 그 명령의 요건에 해당하지 않게 된 때에는 그 명령을 취소하여야 한다.

(개선명령)

<제20조의2> 경제산업대신은 허가할부판매업자의 재산상황 또는 선불식 할부판매에 관련한 업무운영이 다음 각호의 어느 것에 해당하는 경우에 구입자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해 필요하고 적당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그 필요한 한도에서 당해 허가할부판매업자에 대해 재산상황 또는 선불식 할부판매에 관련한 업무운영을 개선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취할 것을 명할 수 있다.

1. 1사업연도의 수익금액의 비용금액에 대한 비율이 경제산업성령에서 정한 비율을 하회한 경우
2. 유동자산 합계액의 유동부채 합계액에 대한 비율이 경제산업성령에 정한 비율을 하회한 경우
3. 앞에서 기재한 경우 외에 구입자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한 재산상황 또는 선불식 할부판매에 관련한 업무운영에 대해 시정을 가할 필요가 있는 경우로서 경제산업성령에서 정한 경우
 - ② 전항 제1호의 수익금액 및 비용금액과 같은 항 제2호의 유동자산 합계액 및 유동부채의 합계액은 경제산업성령에서 정한 바에 따라 계산하여야 한다.
 - ③ 경제산업대신은 허가할부판매업자의 선불식 할부판매에 관련한 업무운영이 제1항 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에 같은 항의 규정에 의한 명령을 하려 할 때에는 사전에 내각 총리대신과 협의하여야 한다.
 - ④ 내각 총리대신은 허가할부판매업자의 선불식 할부판매에 관련한 업무운영이 제1항 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에 구입자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해 필요가 있는 것으로 인정되는 때에는 경제산업대신에게 같은 항의 규정에 의한 명령에 관해 필요한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공탁위탁계약의 수탁자의 공탁 등)

<제20조의3> 경제산업대신은 선수금 보호조치로 공탁위탁계약을 체결한 허가할부판매업자가 제27조 제1항 제1호에서 제4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 또는 제21조 제1항의 권리를 갖는 자 혹은 당해 허가할부판매업자로부터 당해 허가할부판매업자가 제27조 제1항 제5호 혹은 제6호에 해당하는 취지의 신청이 있었던 때에는 지체없이 제21조 제1항의 권리를 갖는 자에 대해 60일 이상의 일정한 기간 내에 경제산업대신에게 채권의 신청을 할 것과 그 기간 내에 채권의 신청을 하지 않는 때에는 당해 공시에 관련한 선수금 보전조치에 대한 권리 실행의 절차에서 제척될 것임을 공시하여야 한다.

② 경제산업대신은 전항의 규정에 의한 공시를 한 때에는 지체없이 당해 허가할부판매업자에 관련한 공탁위탁계약의 수탁자에 대해 당해 공시에 관련한 채권의 신청을 하여야 할 기간의 말일까지 당해 공탁위탁계약에 기초한 선수업무보증금

을 공탁할 것을 지시하여야 한다. 다만 당해 수탁자가 다음 항의 규정에 의한 지시를 받은 선수업무보증금을 공탁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경제산업대신은 전항 본문에 정한 경우 외에 허가할부판매업자와 선불식 할부판매의 계약을 체결한 자의 그 계약에 의해 발생하는 채권을 보전하기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된 때에는 당해 허가할부판매업자에 관련한 공탁위탁계약의 수탁자에 대해 기한을 지정하여 공탁위탁계약에 기초한 선수업무보증금을 공탁할 것을 지시할 수 있다.

④ 공탁위탁계약의 수탁자는 제2항 본문의 규정에 의한 지시를 받았을 때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시에 관련한 채권의 신청을 해야 할 기간의 말일까지로, 전항의 규정에 의한 지시를 받았을 때에는 같은 항의 규정에 의해 지정된 기한까지로, 당해 공탁위탁계약에 기초한 선수업무보증을 공탁하여야 한다.

⑤ 공탁위탁계약의 수탁자는 전항의 규정에 의해 선수업무보증금을 공탁한 때에는 경제산업대신에게 공탁물 인수의 기제가 있는 공탁서의 사본을 제출하여야 한다.

⑥ 제16조 제1항의 규정은 제4항의 규정에 의해 공탁하는 경우에 준용한다. 이 경우에 같은 조 제1항 중 「주된 영업소」라고 한 것은 「허가할부판매업자의 주된 영업소」로 대체한다.

<제20조의4> 전조 제2항 본문의 규정에 의한 지시를 받아 선수업무보증금을 공탁한 공탁위탁계약의 수탁자는 같은 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시에 관련한 채권의 신청을 해야 할 기간 내에 그 신청이 없었던 경우에는 그 공탁한 선수업무보증금을 회수할 수 있다.

② 전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지시를 받아 선수업무보증금을 공탁한 공탁위탁계약의 수탁자는 같은 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시를 한 경우에는 당해 공시에 관련한 채권의 신청을 해야 할 기간 내에 그 신청이 없었을 때, 당해 공시를 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경제산업성령에서 정한 바에 따라 경제산업대신의 승인을 받은 때에는, 그 공탁한 선수업무보증금을 회수할 수 있다.

③ 앞 두 조항의 규정에 의한 선수업무보증금의 회수에 관해 필요한 사항은 법무성령·경제산업성령에서 정한다.

(영업보증금 및 선수업무보증금의 환급)

<제21조> 허가할부판매업자와 선불식 할부판매의 계약을 체결한 자는 그 계약에 의해 발생한 채권에 대해 당해 허가할부판매업자 또는 당해 허가할부판매업자와 공탁위탁계약을 체결한 수탁자가 공탁한 영업보증금은 선수업무보증금에 대해 그 채권의 변제를 받을 권리는 갖는다.

② 전항의 권리의 실행에 관해 필요한 사항은 시행령에서 정한다.

(권리의 실행이 있었던 경우의 조치)

<제22조> 허가할부판매업자는 전조 제1항의 권리를 가진 자가 그 권리를 실행하였기 때문에 영업보증금이 제17조 제1항에 규정하는 금액보다 부족하게 된 때에는 그 사실을 안 날 이후 지체없이 그 부족액을 공탁하여야 한다.

② 선수금 보전조치를 강구하고 있는 허가할부판매업자는 전조 제1항의 권리를 가진 자가 그 권리를 실행하였기 때문에 당해 선수금 보전조치에 의해 선불식 할부판매의 계약에 의해 발생한 채무변제에 충당할 수 있는 금액이 그 권리를 실행한 날 직전의 기준일에 기준금액에 부족이 생기게 된 때에는 그 사실을 안 날 이후 지체없이 그 부족액에 대해 새롭게 선수금 보전조치를 강구하여 서면으로 그 취지를 경제산업대신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③ 제16조 제2항 및 제17조 제2항의 규정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해 공탁하는 경우에, 제18조의4 제2항의 규정은 전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에 준용한다.

(영업보증금 및 선수업무보증금의 보관 대체 등)

<제22조의2> 허가할부판매업자 또는 공탁위탁계약의 수탁자는 금전만을 가지고 영업보증금 또는 선수업무보증을 공탁하고 있는 경우에 허가할부판매업자의 주된 영업소의 소재지에 대해 변경이 있었기 때문에 그 관할의 공탁소가 변경된 때에는 지체없이 영업보증금 또는 선수업무보증을 공탁하고 있는 공탁소에 대해 비용을 예납하고 소재지 변경 후의 허가할부판매업자의 주된 영업소의 관할 공탁소로 영업보증금 또는 선수업무보증금의 보관 대체를 청구하여야 한다.

② 허가할부판매업자는 제17조 제2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유가증권 및 금전을 가지고 영업보증금 또는 선수업무보증금을 공탁하고 있는 경우에 주된 영업소의 소

재지에 대해 변경이 있었기 때문에 그 관할 공탁소가 변경된 때에는 지체없이 당해 영업보증금 또는 선수업무보증금의 금액과 같은 금액의 영업보증금 또는 선수업무보증금을 소재지 변경 후의 주된 영업소의 관할 공탁소에 공탁하여야 한다. 그 공탁을 한 때에는 법무성령·경제산업성령에 정한 바에 따라 소재지 변경 전의 주된 영업소의 관할 공탁소에 공탁한 영업보증금 또는 선수업무보증금을 회수할 수 있다.

③ 제17조 제2항의 규정은 전항의 규정에 의해 공탁하는 경우에 준용한다.

(허가의 취소 등)

<제23조> 경제산업대신은 허가할부판매업자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허가를 취소하여야 한다.

1. 제15조 제1항 제2호, 제7호 또는 제8호의 규정에 해당하게 된 때
2. 제2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명령이 있었던 경우에 그 명령의 날로부터 6개월 이내에 같은 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취소가 행하여지지 않은 때

3. 제2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명령에 위반한 때
4. 부정 수단에 의해 제11조의 허가를 받았을 때

② 경제산업대신은 허가할부판매업자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당해 허가할부판매업자에 대해 3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해 선불식 할부판매의 계약을 체결해서는 아니 된다는 취지를 명하거나 또는 그 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1. 제16조 제3항(제18조 제2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의 규정에 위반하여 영영을 개시한 때

2. 제18조의3 제1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새롭게 선불식 할부판매 계약을 체결한 때

3. 제19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명령에 위반한 때

4. 제20조의2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명령에 위반한 때

5. 제2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탁을 하지 않은 때

6. 제2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선수금 보전조치를 강구하지 않은 때

③ 경제산업대신은 허가할부판매업자가 전항 제4호의 명령(당해 허가할부판매업자의 선불식 할부판매에 관련한 운영이 제20조의2 제1항 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

인 것에 한함. 다음 항 및 제40조 제2항에서 같음)에 위반한 경우에, 전항의 규정에 의한 처분을 하려고 하는 때는 사전에 내각 총리대신에게 협의하여야 한다.

④ 내각 총리대신은 허가할부판매업자가 제2항 제4호의 명령에 위반한 경우에 구입자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경제산업대신에게 같은 항의 규정에 의한 처분에 관해 필요한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⑤ 경제산업대신은 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해 허가를 취소한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이유를 명시하고 그 취지를 당해 허가할부판매업자였던 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처분의 공시)

<제24조> 경제산업대신은 제2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명령을 하거나 혹은 같은 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해 이를 취소한 때, 또는 전조 제1항 혹은 제2항에 의해 허가를 취소한 때에는 경제산업성령에서 정한 바에 따라 그 취지를 공시하여야 한다.

(허가의 실효)

<제25조> 허가할부판매업자가 선불식 할부판매의 영업을 폐지한 때에는 허가는 그 효력을 상실한다.

(폐지 신고)

<제26조> 허가할부판매업자는 선불식 할부판매의 영업을 폐지한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취지를 경제산업대신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② 제24조의 규정은 전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가 있는 경우에 준용한다.

(계약의 해제)

<제27조> 허가할부판매업자가 다음 각호의 어느 것에 해당하는 때에는, 당해 허가할부판매업자와 선불식 할부판매의 계약을 체결하고 있는 자로서 그 계약에 관한 상품의 인도를 받지 않은 자는 그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1. 기준일의 다음 날부터 계산하여 50일일 경과하는 날까지의 기간에 당해 기

준일에 관련한 기준금액에 대해 선수금 보존조치를 강구하지 않았을 때

2. 제2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명령을 받았을 때
3. 제23조 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해 허가가 취소된 때
4. 제25조의 규정에 의해 허가가 효력을 잃었을 때
5. 파산절차 개시, 재생절차 개시 또는 갱생절차 개시를 제기하였을 때
6. 지불을 정지한 때

(허가의 취소 등에 따른 거래의 종결 등)

<제28조> 허가할부판매업자가 제23조 제1항 혹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해 허가를 취소당했을 때, 또는 제25조의 규정에 의해 허가가 효력을 상실한 때에는 당해 할부판매업자였던 자 또는 그 일반 승계인은 당해 허가할부판매업자가 체결한 선불식 할부판매의 계약에 기초한 거래를 종결할 목적의 범위 내에 있어서는 여전히 허가할부판매업자로 본다.

<제29조> 허가할부판매업자가 제23조 제1항 혹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해 허가를 취소당했을 때, 또는 제25조의 규정에 의해 허가가 효력을 상실한 때에는, 허가할부판매업자였던 자 또는 그 승계인(전조의 규정에 의해 허가할부판매업자로 간주되는 자를 제외함)은 당해 허가할부판매업자였던 자가 공탁한 영업보증금 또는 선수업무보증금을 회수할 수 있다.

② 전항의 영업보증금 또는 선수업무보증금의 회수는, 당해 영업보증금 또는 선수업무보증금에 대해 제21조 제1항의 권리를 가진 자에 대해 6개월을 지나지 않는 일정 기간 내에 신청해야 하는 취지를 공고하고, 그 기간 내에 그 신청이 없었던 경우가 아니라면 할 수가 없다. 다만 영업보증금 또는 선수업무보증금을 회수할 수 있는 이유가 발생한 때부터 10년을 경과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전항의 공고 기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영업보증금 또는 선수업무보증금의 회수에 관해 필요한 사항은 법무성령·경제산업성령에서 정한다.

II. 할부판매법 시행령

(허가에 관련한 선불식 할부판매업자 등의 연간 판매금액 등)

<제4조> 법 제11조 제1호 및 제35조의3의61 제1호의 시행령에서 정하는 금액은 1천만엔으로 한다.

(선불식 할부판매업자 등의 자본금 또는 출자금액)

<제5조> 법 제15조 제1항 제2호(법 제35조의3의62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에 규정한 금액은 50개 이상의 영업소 또는 대리점을 가진 법인인 경우에는 1억 엔, 10개 이상 50개 미만의 영업소 또는 대리점을 가진 법인인 경우에는 5천만 엔, 기타 법인인 경우에는 2천만엔으로 한다.

② 법 제33조의2 제1항 제2호(법 제33조의3 제2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에 규정한 금액은 2천만엔으로 한다.

(자산 및 부채 금액의 계산)

<제6조> 법 제15조 제2항(법 제33조의2 제2항, 제33조의3 제2항, 제35조의3의26 제2항, 제35조의3의27 제2항 및 제35조의3의62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에 규정한 자산의 합계액 또는 부채의 합계액은, 법 제12조 제1항(법 제35조의3의62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의 규정에 의한 허가 신청일, 법 제32조 제1항 혹은 제35조의3의24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 신청일, 법 제33조의3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변경등록의 신청일 또는 법 제35조의3의27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갱신 신청일 또는 법 제35조의3의27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갱신 신청일 전 1개월 이내의 일정한 날(이하 「계산일」이라 함)에 장부가액(자산 중 수취어음, 외상대금, 미수입금 및 대부금에 대해서는 부실채권충당금을, 유형고정자산(토지 및 건설계정을 제외함)에 대해서는 감가상각충당금을 공제한 금액. 이하 같음)에 의해 계산하는 것으로 한다. 다만 자산인 경우에는 그 장부가액이 당해 자산을 계산일에 평가한 금액을 초과한 때, 부채인 경우에는 그 장부가액이 당해 부채를 계산일에 평가한 금액을 하회하는 때에는, 그 평가한 금액으로 계산하는 것으로 한다.

(금융기관)

<제7조> 법 제18조의3 제4항(법 제35조의3의62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의 시행령에서 정하는 금융기관은 (주)상공조합중앙금고, 보험회사, 신용금고, 노동금고 및 노동금고연합회 아울러 신용협동조합에서 출자 총액이 5천만엔 이상인 것으로 한다.

(확인서)

<제8조> 법 제21조 제1항(법 제35조의3의62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 이하 같음)의 권리의 실행을 위해 영업보증금 또는 선수업무보증금의 환급을 받으려 하는 자는, 그 영업보증금 혹은 선수업무보증금을 공탁하거나 또는 그 선수업무보증금에 관련한 선수업무보증금 공탁위탁계약(이하 「공탁위탁계약」이라 함)을 체결해 있는 허가할부판매업자 또는 법 제35조의3의61의 허가를 받은 자(이하 「허가할부판매업자 등」이라 함)의 주된 영업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경제산업국장에 대해 확인서의 교부를 청구할 수 있다.

② 경제산업국장은 다음에 열거하는 경우에는 확인서를 교부해서는 아니 된다.

1. 전항의 규정에 의한 청구를 한 자가 법 제21조의 제1항의 권리를 가진 것이 분명하지 않은 경우

2. 전항의 규정에 의한 청구를 수리한 날(이하 「수리일」이라 함)부터 계산하여 10일을 경과하는 날 이전에 법 제20조의3 제1항(법 제35조의3의62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 이하 같음) 또는 법 1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시로 당해 허가할부판매업자 등에 관련한 당해 영업보증금 또는 선수업무보증금에 관련한 것으로 된 경우

3. 수리일 이후 수리일부터 계산하여 10일을 경과하는 날까지 된 당해 허가할부판매업자 등에 관련한 확인서 교부의 청구 중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것에 관련한 금액의 합계액이, 그 날에 당해 허가할부판매업자 등이 공탁하고 있는 영업보증금 및 선수업무보증금액 아울러 당해 할부판매업자 등에 관련한 공탁위탁계약의 수탁자가 선수업무보증금으로 공탁하거나 또는 공탁하는 것으로 된 금액의 합계액(수리일 전에 확인서 교부의 청구를 하고 아직 영업보증금 또는 선수업무

보증금의 환급을 받지 않은 자의 환급을 받아야 할 금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제외함)을 초과하는 경우

<제9조> 법 제21조 제1항의 권리를 가진 자가 영업보증금 또는 선수업무보증금의 환급을 받는 경우에는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배당 실시의 절차에 따라 영업보증금 또는 선수업무보증금의 환급을 받는 경우를 제외하고, 확인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공시)

<제10조> 영업보증금을 공탁하고 있는 허가할부판매업자 등 또는 선수업무보증금을 공탁하고 있는 허가할부판매업자 등(선수금 보전조치로 공탁위탁계약을 체결해 있는 자를 제외함)의 주된 영업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경제산업국장은, 당해 허가할부판매업자 등이 법 제27조 제1항 제1호에서 제4호까지(법 제35조의3의62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의 어느 것인가에 해당하는 때, 또는 법 제21조 제1항의 권리를 가진 자 혹은 당해 허가할부판매업자 등으로부터 당해 허가할부판매업자 등이 법 제27조 제1항 제5호 혹은 제6호(법 제35조의3의62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에 해당하는 취지의 신청이 있었던 때에는 지체없이 법 제21조 제1항의 권리를 가진 자에 대해, 60일 이상의 일정한 기간 내에 당해 경제산업국장에게 채권의 신청을 해야 할 것과 그 기간 내에 채권의 신청을 하지 않은 때에는 당해 공시에 관련한 영업보증금 또는 선수업무보증금에 대한 권리 실행의 절차에서 제척되어야 함을 공시하여야 한다.

② 경제산업국장은 제8조 제2항 제3호의 규정에 따라 확인서를 교부하지 않기로 한 때에는 지체없이 법 제21조 제1항의 권리를 가진 자에 대해, 60일 이상의 일정 기간 내에 당해 경제산업국장에게 채권 신청을 해야 할 것과 그 기간 내에 신청을 하지 않은 때에는 당해 공시에 관련한 영업보증금 및 선수금 보전조치에 대한 권리 실행의 절차에서 제척되어야 함을 공시하여야 한다.

③ 경제산업국장은 법 제20조의3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시가 되었고, 또는 앞 2개항의 규정에 의한 공시를 한 때에는 그 취지를 허가할부판매업자 등(그 자가 공탁위탁계약을 체결해 있는 경우에는 그 자 및 당해 공탁위탁계약의 수탁자. 제12조 제1항 및 제2항에서도 같음) 및 제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청구를 한 자

에게 통지하여야만 한다.

④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공시가 있었던 후에는 제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청구를 한 자가 그 청구를 취하한 경우에도 절차 진행은 방해받지 않는다.

(권리의 조사)

<제11조> 경제산업국장은 법 제20조의3 제1항 또는 전조 제1항 혹은 제2항의 기간이 경과한 후 지체없이 권리의 조사를 하여야만 한다.

② 경제산업국장은 미리 기일 및 장소를 공시하거나 혹은 허가할부판매업자 등에 통지하여 제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청구를 한 자, 법 제20조의3 제1항 또는 전조 제1항 혹은 제2항의 기간 내에 채권의 신청을 한 자 및 허가할부판매업자 등에 대해 권리의 유무 및 그 권리에 의해 담보되는 채권금액에 대해 증거를 제시하거나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배당표의 작성 등)

<제12조> 경제산업국장은 법 제20조의3 제1항 또는 제10조 제1항 혹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공시에 관련한 채권의 신청을 한 자(제10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공시를 한 후 법 제20조의3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시가 되고 또한 제1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시를 한 경우에 다음 항에 규정하는 경우 이외의 경우에는, 법 제20조의3 제1항 또는 제1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시 및 같은 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공시에 관련한 채권의 신청을 한 자)에 관련한 전조의 규정에 의한 권리 조사의 결과에 기초하여 신속하게 배당표를 작성하여 이를 공시하거나 혹은 허가할부판매업자 등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 경제산업국장은 제10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공시에 관련한 배당표의 공시를 한 날 이후 당해 공시를 한 날부터 계산하여 80일을 경과하는 날 이전에 법 제20조의3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시가 되고 또한 제1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시를 한 때에는 법 제20조의3 제1항 또는 제1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시 및 같은 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공시에 관련한 채권 신청을 한 자에 관련한 전조의 규정에 의한 권리 조사의 결과에 기초하여 신속하게 당해 배당표를 바르게 수정하여 이를 공시하거나 혹은 허가할부판매업자 등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 배당표는 법 제20조의3 제1항 또는 제10조 제1항 혹은 제2항의 기간 말일까지 공탁된 영업보증금 및 선수업무보증금에 대해 작성하거나 또는 바르게 수정하는 것으로 한다.

(배당의 실시)

<제13조> 배당은 전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시를 한 날(전조 제2항에 규정한 경우에는 같은 항의 규정에 의한 공시를 한 날)부터 80일을 경과한 후, 배당표에 따라 실시하는 것으로 한다.

(통지를 필요로 하지 않는 경우)

<제14조> 허가할부판매업자 등의 행방을 알 수 없는 때에는 제10조 제3항, 제11조 제2항 및 제12조 제1항과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허가할부판매업자 등에 대한 통지는 할 필요가 없다.

(유가증권의 환가)

<제15조> 경제산업국장은 유가증권(사채, 주식 등의 대체에 관한 법률 제278조 제1항에 규정한 대체채권을 포함)이 공탁되어 있는 경우에 필요가 있는 때에는 이를 환가 할 수 있다. 이 경우에 환가의 비용은 환가대금에서 공제한다.

(시행령에의 위임)

<16조> 이 시행령에서 정한 것 외에 법 제21조(법 35조의3 및 제35조의3의62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의 규정에 의한 권리의 실행에 관해 필요한 사항은 법무성령·경제산업성령에서 정한다.

III. 할부판매법 시행규칙 : 제1장(할부판매) 제2절 선불식 할부판매

(허가의 신청)

<제12조> 법 제12조 제1항의 신청서는 양식 제1에 의하는 것으로 한다.

② 법 제12조 제2항의 경제산업성령에서 정하는 서류는 다음과 같다.

1. 허가신청서 제출일 전 1개월 이내의 일정한 날 현재에 양식 제2에 의해 작성한 재산에 관한 조서 및 양식 제3에 의해 작성한 허가신청서 제출일의 직전 사업연도의 수입지출에 관한 조서와 함께 허가신청 서류 제출일의 직전 5사업연도(사업연도가 6개월인 법인인 경우에는 직전 10사업연도)의 대차대조표(관련하는 주기(注記)를 포함), 손익계산서(관련하는 주기를 포함. 같은 호에 있어 같음) 및 주주자본 등 변동계산서(관련하는 주기를 포함. 같은 호에 있어 같음) 또는 이들에 같음하는 서면

2. 다음 사항을 기재한 허가 후 5사업연도(사업연도가 6개월인 법인의 경우에는 허가 후 10사업연도)의 업무계획서

- 가. 선불식 할부판매의 방법에 의해 판매하려고 하는 지정상품의 판매계획
- 나. 수지계획
- 다. 자금계획

3. 임원의 이력서

4. 법 제15조 제1항 제6호에서 제8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지 않음을 서약하는 서면

5. 선불식 할부판매에 관한 대리점을 갖는 때에는 대리점 계약서의 사본

6. 신청일 전 1년간 지정상품의 종류별 선불식 할부판매의 방법에 의한 판매금액

③ 법 제12조 제3항의 경제산업성령에서 정한 전자적 기록은 행정절차에 있어 정보통신 기술의 이용에 관한 법률(2002년 법률 제151호) 제3조 제1항에서 정한 행정기관 등의 사용에 관련한 전자계산기로부터 입수되어 기록된 것으로 한다.

(선불식 할부판매 계약약관의 기준)

<제13조> 법 제1조 제1항 제5호의 경제산업성령에서 정하는 사업은 다음과 같

다.

1. 다음 사항이 기재된 란(欄)이 있을 것

가. 판매자의 성명 및 주소

나. 구입자의 이름

다. 계약번호

라. 계약 연월일

마. 상품명

바. 상품의 상표 또는 제조자명 및 기종 또는 형식

사. 상품의 수량

아. 선불식 할부판매 가격

자. 할부금의 금액, 횟수, 지불시기 및 지불방법

2. 제1조 제1항 제2호 표의 상란(上欄)에 열거한 용어를 각각 같은 표의 하란(下欄)에 열거하는 정의에 의해 이용할 것

3. 다음 표의 상란(上欄)의 사항(상품 인도를 받기 전에 대금의 일부를 지불하는 취지를 정한 선불식 할부판매계약약관에 있어서는 같은 란(欄)의 1에서 5까지의 사항)이 기재되어 있고, 또한 그 내용이 같은 표의 하란(下欄)의 기준에 합치할 것이며, 기재해야 할 사항 및 내용의 기준은 다음과 같다.

가. 영수증의 발행에 관한 사항 : 지불 방법이 수금 또는 지참의 경우에는 영수증을 발행하는 취지가 정해져 있을 것

나. 상품의 인도 시기에 관한 것 : 인도 시기로서 상품의 인도를 받기 전에 지불해야 할 대금의 완납 후 30일 이내의 일정기간이 정해져 있을 것

다. 계약의 해제에 관한 것 : 구입자의 지불의무 불이행에 의해 계약을 해제하는 경우에는 판매자가 정한 일정기간에 걸쳐 의무 불이행이 있었던 경우로서, 판매자가 20일 이상의 상당한 기간을 정하고 그 지불을 서면으로 최고하고, 그 기간 내에 그 의무가 이행되지 않은 경우에 한한다는 취지 및 판매자의 귀책사유에 의해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게 된 경우에 구입자는 당해 계약을 해제할 수 있는 취지가 정해져 있을 것

라. 계약의 해제에 따른 손해배상 등의 금액에 관한 것 : 구입자의 귀책사유에 의해 계약을 해제하는 경우에는, 계약 해제일로부터 60일 이내의 일정 기간 내에

구입자가 이미 지불한 금액에서 계약의 체결 및 이행을 위해 통상 필요로 하는 비용의 금액을 공제한 금액을 환급하는 취지가 정해져 있고, 또한 그 금액이 구입자가 용이하게 계산할 수 있는 방법에 의해 명확히 표시되어 있을 것, 아울러 판매자의 귀책사유에 의해 계약을 해제하는 경우에는 지체없이 지불완납금액 및 지불완납금액에 법정이율을 곱한 금액 이상의 일정 금액의 합계액을 환급하는 취지가 정해져 있을 것

마. 대금잔액의 일괄지급에 관한 것 : 구입자는 할부금의 지불 도중에 계약에 관련된 상품의 현금판매가격에서 지불완납금액 및 지불완납금액에 법정이율을 곱한 금액 이상의 일정 금액의 합계액을 공제한 금액을 현금으로 지불한 경우에는 당해 상품의 인도를 받아, 계약을 종결할 수 있는 취지가 정해져 있을 것

바. 지불완납 전의 상품 인도에 관한 것 : 구입자는 판매자가 정하는 일정 회수 이상 할부금을 지불한 경우로서, 판매자가 정하는 조건에 적합한 때에는 당해 할부판매계약의 내용을 변경하여 상품인도를 받을 수 있는 취지 및 그 경우에 판매자는 지불완납금액 및 지불완납금액에 법정이율을 곱한 금액 이상의 일정 금액의 합계액을 변경 후 대금의 일부에 충당하는 취지가 정해져 있을 것

4. 다음 사항이 기재되어 있지 않을 것

가. 선불식 할부판매계약약관을 재교부하는 경우에 그 재교부에 통상 필요로 하는 비용을 넘어 수수료를 징수하는 것

나. 계약 체결 후에 판매자가 소비세 및 지방소비세의 증액 이외의 이유로 가격의 인상을 할 수 있는 것

다. 계약 체결 후에 판매자가 계약에 관련된 상품을 변경할 수 있는 것

라. 구입자로부터의 계약 해제를 할 수 없다는 취지의 특약

마. 법 제27조 제2항에 규정하는 특약

바. 당해 계약에 관련된 소송의 소속 법원의 관할에 대해 구입자에게 현저하게 불리하게 되는 특약

사. 가에서 바까지 열거한 것 외에 법령에 위반하는 특약 또는 구입자에게 현저하게 불리하게 되는 특약

5. 일본공업규격Z8305에 규정하는 8포인트 이상 크기의 문자 및 숫자를 이용할 것

(영업보증금 공탁의 신고)

<제14조> 법 제16조 제2항(법 제18조 제2항 및 제22조 제3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의 규정에 의한 신고는 양식 제4에 의한 신고서를 제출하여 하여야 한다.

(영업보증금 등에 충당 가능한 유가증권)

<제15조> 법 제17조 제2항(법 제18조 제2항, 제18조의3 제5항, 제22조 제3항 및 제22조의2 제3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의 경제산업성령에서 정하는 유가증권은 다음 각호에 열거하는 것으로 한다.

1. 금융상품거래법 제2조 제1항 제1호에서 제3호까지에 규정하는 채권
2. 전호에 열거한 것 외에 담보부사채신탁법에 의한 담보부사채권 및 법령에 의해 우선변제를 받는 권리가 보증되어 있는 사채권(자기의 사채권 및 회사법에 의한 특별 청산 개시의 명령을 받아 특별청산 종결 결정의 확정 없는 회사, 파산법에 의한 파산 절차 개시의 결정을 받아 파산 종결 결정 혹은 파산 폐지 결정의 확정 없는 회사, 민사재생법에 의한 재생 절차 개시의 결정을 받아 재생 절차 종결 결정 혹은 재생 절차 폐지 결정의 확정 없는 회사 또는 회사갱생법에 의한 갱생 절차 개시의 결정을 받아 갱생 절차 종결 결정 혹은 갱생 절차 폐지 결정의 확정 없는 회사가 발행한 사채를 제외함)
3. 사채, 주식 등의 대체에 관한 법률 제88조에 규정하는 대체국채

(영업보증금 등에 충당 가능한 유가증권의 가액)

<제16조> 법 제17조 제2항(법 제18조 제2항, 제18조의3 제5항, 제22조 제3항 및 제22조의2 제3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의 규정에 의해 전조의 유가증권을 영업보증금 또는 선수업무보증금에 충당하는 경우에 있어 당해 유가증권의 가액은 다음 각호에 열거하는 유가증권의 구분에 따라 각각 당해 각호에 열거하는 금액으로 한다.

1. 전조 제호 또는 제3호에 열거한 유가증권에 대해서는 그 액면금액의 100분의 95

2. 전조 제2호에 열거한 유가증권에 대해서는 그 액면금액의 100분의 90

② 할인의 방법에 의해 발행한 채권으로 공탁일로부터 상환기한까지의 기간이 5년을 넘는 것에 대해서는 전항의 규정의 적용에 있어 그 발행가액에 별도 산식에 의해 산출한 금액을 더한 금액을 액면금액으로 간주한다.

(선수금 보전조치)

<제17조> 법 제18조의4 제1항 및 제2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는 양식 제5에 의한 신고서를 제출하여 하여야 한다.

<제18조> 법 제18조의5 제3항의 승인 신청은 양식 제6에 의한 신청서를 제출하여 하여야 한다.

② 법 제18조의5 제5항의 승인 신청은 양식 제7의 신청서를 제출하여 하여야 한다.

③ 전항의 신청서는 공탁위탁계약을 해제한 것을 증명하는 서면을 첨부하여야 한다.

(승계의 신고)

<제19조> 법 제18조의6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는 양식 제8에 의한 신고서를 제출하여 하여야 한다.

② 법 제18조의6 제2항의 사실을 증명하는 서면은 다음과 같이 한다.

1. 등기사항증명서와 임원의 이력서 및 제12조 제2항 제4호에 규정하는 서면
2. 사업의 전부를 양도 받은 것에 의해 허가할부판매업자의 지위를 승계한 법인에 대해서는 사업양도계약서의 사본

(변경의 신고)

<제20조> 법 제1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는 양식 제9에 의한 신고서를 제출하여 하여야 한다.

② 법 제19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는 양식 제10에 의한 신고서를 제출하여 하여야 한다.

③ 법 제19조 제4항에서 준용하는 법 제12조 제2항의 경제산업성령에서 정하는

서류는 다음과 같이 한다.

1. 법 제1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에 있어서는 다음에 열거하는 것

가. 그 변경에 관련한 사항을 증명하는 서류

나. 그 변경이 새로이 취임한 임원에 관련한 것인 때에는 당해 임원의 이력서 및 제12조 제2항 제4호에 열거한 서면(법 제15조 제1항 제8호에 관련한 것에 한함)

다. 그 변경이 새로이 선불식 할부판매에 관한 대리점을 설치한 것에 관련한 것인 때에는 대리점 계약서의 사본

2. 법 제19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에 있어서는 변경 전 및 변경 후의 선불식 할부판매계약약관

(장부의 비치)

<제21조> 법 19조의2의 장부는 주된 영업소(주된 영업소에 비치하는 장부에 제3항 각호에 열거하는 사항을 모두 기재하는 것이 곤란한 경우에는 주된 영업소 및 종된 영업소로서 경제산업대신에게 양식 제11에 의한 신고서의 제출이 있었던 것)에 비치하여야 한다.

② 장부는 폐쇄일로부터 계산하여 2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③ 법 제19조의2의 경제산업성령에서 정하는 사항은 다음과 같이 한다.

1. 선불식 할부판매의 계약을 체결한 자의 이름 및 주소

2. 계약번호

3. 상품명

4. 선불식 할부판매의 계약에 관련한 상품 대금의 전부 또는 일부로서 수령한 선수금(이하 「예약선수금」이라 함)의 잔고

5. 영업소 또는 대리점 별 월말 예약선수금의 합계액 및 계약건수

④ 주된 영업소 및 제1항에 규정하는 종된 영업소에 장부를 비치한 경우에는 주된 영업소에 비치하는 장부에는 장부를 비치하는 영업소 별 월말 예약선수금의 합계액 및 계약건수를 기재하여야 한다.

(개선명령에 관련한 수지울 등)

<제22조> 법 제20조의2 제1항 제1호의 경제산업성령에서 정하는 비율은 100분의 100으로 한다.

② 법 제20조의2 제1항 제2호의 경제산업성령에서 정하는 비율은 100분의 90으로 한다.

③ 법 제20조의2 제1항 제3호의 경제산업성령에서 정하는 비율은 다음과 같이 한다.

1. 자산의 합계액에서 부채의 합계액을 공제한 금액이 자본금 또는 출자금액에 미치지 않는 때
2. 예약선수금의 합계액 또는 부채의 합계액이 재산의 상황에 비추어 현저하게 과대한 때
3. 선불식 할부판매에 관련한 이연비용을 과대하게 계상하고 있는 때 기타 경리처리가 불건전한 때
4. 기준일에 선수금 보전조치에 의해 선불식 할부판매의 계약에 의해 발생한 채무의 변제에 충당할 수 있는 금액이 당해 기준일에 관련한 기준금액을 하회한 때
5. 판매원, 수금원 기타 종업원에 대한 지도감독이 충분하지 않은 때
6. 대리점(대리점이 법인인 때에는 그 업무를 집행하는 사원, 임원, 집행임원 기타의 법인 대표자)에 대한 지도가 충분하지 않은 때
7. 구입자에 대해 선불식 할부판매의 계약에 관한 사항으로 그 판단에 영향을 미치게 되는 중요한 것에 대해 사실을 알리지 않은 때, 또는 부실의 사실 혹은 오해를 불러 일으킬 사실을 알린 때
8. 구입자에 대해 불이익이 되는 사실을 알리지 않고, 이미 성립한 선불식 할부판매 계약을 소멸시켜 새로운 선불식 할부판매 계약의 청약을 시키거나, 또는 새로운 선불식 할부판매 계약의 청약을 시켜 이미 성립한 선불식 할부판매 계약을 소멸시키는 행위를 한 때
9. 선불식 할부판매계약약관에 기재된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때
10. 선불식 할부판매계약약관의 내용이 제13조의 기준에 적합하지 않은 때

(수익 금액 등의 계산)

<제23조> 법 제20조의2 제2항에 규정하는 수익금액은 순매출액(역무수익을 포함)의 금액 및 영업외수익금액을 합계하여 계산하는 것으로 한다. 이 경우에 할부 판매에 관련한 미실현이익을 대차대조표의 부채 계정에 계상한 허가할부판매업자에 대해서는 그 미실현이익의 당해 사업연도에 있어 증가액은 수익금액에서 공제하고, 수익금액에 산입하는 것으로 한다.

② 법 제20조의2 제2항에 구정한 비용금액은 매상원가(역무원가를 포함)의 금액, 판매비 및 일반관리비의 금액 및 영업외비용의 금액을 합계하여 계산하는 것으로 한다.

③ 전 2항의 경우에 전기(前期) 손익수정 기타 통상 영업활동 이외의 원인에 의해 발생한 특별한 이익 또는 손실의 금액은 수익 또는 비용의 금액에 산입하지 않는 것으로 한다.

④ 법 제20조의2 제2항에 규정한 유동자산의 합계액은 다음 각 호에 열거하는 자산금액을 합계하여 계산하는 것으로 한다.

1. 현금
2. 예금
3. 수취어음
4. 외상대금
5. 유가증권(투자유가증권을 제외함)
6. 투자유가증권(제15조 제1호 및 제2호에 열거한 것(같은 조 제1호에 열거한 것에 대해서는 금융상품거래법 제2조 제1항 제3호 규정한 채권에 한함) 및 증권 투자신탁과 대부신탁의 수익증권에 한함)
7. 상품
8. 제품
9. 반제품
10. 원재료
11. 제조 과정에 있는 물건
12. 저장품
13. 계약금
14. 선납비용(1년 이내에 상각되어 비용이 될 것에 한함)

15. 단기 대부금
 16. 대신 치른 비용(입체금)
 17. 미수입금
 18. 미수 수익
 19. 선불식 할부판매에 관련한 이연비용
 20. 법 제16조 제1항 및 18조 제1항과 제2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해 공탁된 영업보증금
 21. 법 제18조의3 제1항 및 제2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해 선수금 보전조치로서 공탁된 영업보증금
 22. 전 각 호에 열거한 것 이외의 자산(1년 이내에 현금화 할 수 있는 것으로 인정된 것에 한함)
- ⑤ 법 제20조의2 제2항에 규정한 유동부채의 합계액은 다음 각 호에 열거하는 부채를 합계하여 계산하는 것으로 한다.
1. 지불어음
 2. 외상매입금
 3. 단기 차입금
 4. 미지급금
 5. 미지급 비용
 6. 선수금
 7. 맡은 돈(수탁금)
 8. 선수 수익
 9. 미납 법인세 등
 10. 전 각 호에 열거한 것 이외의 부채(1년 이내에 지불 또는 변제될 것으로 인정되는 것에 한함)
- ⑥ 제4항 또는 전항에 규정하는 자산 또는 부채금액은 그 계산을 하려고 하는 날(이하 「계산일」이라 함)에 있어 장부가액(제4항 제3호, 제4호, 제15호 및 제17호에 열거하는 자산에 대해서는 부실채권준비금을 공제한 금액, 이하 같음)에 의해 계산하는 것으로 한다. 다만 자산에 대해서는 그 장부가액이 당해 자산을 계산일에 있어 평가한 금액을 초과한 때, 부채에 대해서는 그 장부가액이 당해 부채

를 계산일에 있어 평가한 금액을 하회한 때에는 그 평가한 금액에 의해 계산하는 것으로 한다.

(공탁위탁계약의 수탁자가 공탁한 선수업무 보증금의 환급)

<제24조> 법 제20조의4 제2항의 승인 신청은 양식 제12에 의한 신청서를 제출하여 하여야 한다.

(처분의 공시)

<제25조> 법 제24조(법 제26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의 규정에 의한 공시는 관보에 게재하여 하는 것으로 한다.

(폐지의 신고)

<제26조> 법 제2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는 양식 제13에 의한 신고서를 제출하여 하여야 한다.

APPENDIX 2. 일본 호조(상조)회 보증주식회사 업무방법서

1. 호조(상조)회 시스템의 개요

□ 호조회(관혼상제 호조회)=선불식 특정거래업이란?

관혼상제를 목적으로 한 호조회 등은 할부판매법상 「선불식 특정거래업」이라는 것이 된다. 선불식 특정거래업이라 함은 「2개월 이상 또한 3회 이상 분할하여 회비 등의 명목으로 선수금을 수령함으로써 관혼상제 서비스의 제공을 업으로 영위하는 사업」으로, 관혼상제 호조회가 이에 해당된다.

□ 할부판매법의 적용

1958년 8월에 창설된 호조회는, 1972년 이전에는 어떤 법률의 대상도 되지 않았고, 누구라도 임의로 영업할 수 있었으나, 선수금의 보전 등 법률규제도 없었기 때문에 가입자(회원)에게는 일말의 불안감이 있었다. 그러나 1972년 할부판매법의 개정으로 새롭게 선불식 특정거래업으로서 할부판매법의 적용을 받게 되었고, 다음과 같은 법적 정비가 이루어졌다(시행은 1973년 3월 15일).

1. 영업은 통상산업대신(현 경제산업대신)의 허가가 필요
2. 법인화의 의무화
3. 선수금 보전조치의 의무화

이에 따라 할부판매법 개정 전에 호조회 등의 수는 347개사, 선수금은 약 222억엔에 달했으나, 그 사업이 사회적으로나 법률적으로 인정되고 또한 가입자의 선수금도 법적 보전조치가 취해지게 되어, 가입자(회원)에 대해 큰 신뢰감과 안심을 줄 수 있게 되었다.

□ 호조회회원(가입자)에 대한 보증(선수금의 보전)

호조회 등은 가입자로부터 선납금(호조회로 보면 선수금)을 맡아 사업을 운영하는 것이나, 가입자에 대해 선수금의 보전을 의무화하게 되었다.

합부판매법에서는 이를 선수금 보전조치라 하고, 「매년 3월 31일 및 9월 30일 2회의 기준일에, 가입자로부터 맡아 놓은 금액의 2분의 1에 상당하는 금액에 대해 보전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다.

다시 말해서 호조회 등이 도산 등 만일의 사태에 이른 경우에도 가입자는 선납금의 절반은 보증되는 것이다. 보전의 방법은 다음의 3가지 방법이 있다. 실제로는 이 3가지 방법 중 어느 하나, 혹은 이들의 조합으로도 지장이 없다.

1. 법무국의 공탁소에 공탁한다.
2. 경제산업대신이 지정하는 자(지정수탁기관-호조회 보증주식회사 등)와 선수업무보증금 공탁위탁계약(공탁위탁계약)을 체결한다.
3. 은행 또는 신탁회사 기타 시행령에서 정하는 금융기관과 선수업무보증금 공탁위탁계약을 체결한다.

□ 공탁위탁계약

법무국 등에 대한 공탁 이외의 선수금 보전조치인 공탁위탁계약이라 함은 호조회 등이 위탁자가 되고, 지정수탁기관(예를 들면, 호조회 보증주식회사)이 수탁기관이 되어 계약을 체결하는 방법이다.

호조회 등에 도산 등 법률에서 정한 일정한 다음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지정수탁기관 등은 호조회 등을 대신하여 대위공탁을 하고, 그 공탁금은 가입자에게 환급되는 구조로 되어 있다.

따라서 호조회 등은 선수업무보증금의 공탁(선수금 총액의 2분의 1 상당액)을 하지 않아도 가입자 보호 효과를 받을 수 있고, 가입자도 적립된 금액의 절반은 보증되는 것이다.

- 도산 등 법률에서 정하는 일정한 사유라 함은 다음과 같은 경우이다.
 - － 법정기한까지 선수금의 보전조치를 강구하지 않았을 때
 - － 신규계약 체결의 금지명령을 받았을 때

- 허가가 취소된 때
- 영업을 폐지한 때
- 파산, 재생절차개시, 정리개시 또는 갱생절차개시의 신청이 있었을 때
- 지급을 정지한 때

2. 호조(상조)회 보증주식회사의 개요

호조회 보증주식회사는 1972년 6월 「할부관매법의 일부를 개정하는 법률」이 성립되어, 호조회 사업이 동법의 대상이 됨에 따라 호조회 사업에 있어 가입자로부터의 선수금 보전조치인 공탁위탁계약의 수탁을 사업목적으로 하여 1973년 2월 22일 설립되었다.

이후 호조회 사업의 발전에 따라 공탁위탁계약의 수탁금액이 대폭 증가되면서 이 회사의 규모도 확대되었고, 자본금은 39억 8천만엔이며, 출자자는 금융기관 12개사가 50%, 호조회 등 144개사가 50%를 출자하였다.

출자 금융기관으로는 미즈호은행, 미쓰이스미토모은행, 미쓰비시동경UFJ은행, 리소나은행, 미쓰이스미토모신탁은행, 미쓰비시UFJ신탁은행 등 대형 은행 중심으로 이루어져 있다.

(주)호조회보증은 2013년 3월 현재 전국 290개 호조회 중 약 58%인 168개사와 공탁위탁계약을 체결해 있으며, 290개사의 전체 보전액 1조 1907억엔 중 7172억엔(60.2%)을 공탁위탁계약 잔고로 보유 중에 있다.

3. 호조(상조)회 보증주식회사의 역할

□ 선수금의 보전과 회원(소비자)에 대한 서비스 사업활동의 확보

(주)호조회보증은 1972년의 할부판매법 개정에 따라 호조회가 규제대상으로 되면서 호조업계의 총의에 기초하여 동법의 소비자 보호를 목적으로 한 공탁환급제도에 대응하여 보증기관으로서 설립된 주식회사이다. 많은 호조회의 출자를 받아 계약한 호조회로부터의 보증료의 납부, 수탁사업기금에의 각출을 재무기반으로 하여, 할부판매법에서 정한 보전조치를 확보하기 위한 공탁위탁계약을 체결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매년 3월 31일 및 9월 30일 현재의 선수금 잔고를 기준으로 하여, 연 2회, 1회에 대해, 반년간의 보전조치로서 공탁위탁계약을 체결하고 있다.

이를 통해 계약한 호조회는 법정 선수금 보전조치를 실시함과 동시에 선수금의 활용에 의한 회원(소비자)에 대한 양질의 서비스를 확보하기 위한 사업활동을 영위할 수 있게 된다.

□ 상세한 데이터에 기초한 경영분석과 경영자와의 협의

(주)호조회보증은 각 계약한 호조회와의 일상적인 업무협의 가운데 경영현황, 선수금 관리상황 등의 상세한 데이터를 받고 있다. (주)호조회보증은 이러한 데이터를 분석하여 현재의 경영상황의 진단지표나 경영의 목표가 되는 지표 등으로 제공하고, 경영상 눈에 띄는 점을 찾아 내어 계약한 호조회의 경영자와 논의하고 있다. 호조회 경영의 안정화 및 향상에 의해 한층 회원(소비자)의 보호가 이루어지도록 도움을 주고 있다.

□ 파탄위험의 조기발견과 인수기업의 알선

(1) (주)호조회보증은 호조회의 전문보증기관으로서 풍부한 데이터를 축적하고

있는 유일한 기관이다. 계약한 호조회의 경영 불안정화의 조기발견에 노력함과 동시에, 제3자적인 입장에서 전문적인 지식에 의한 어드바이스를 하거나, 경영과탄 위험이 발생한 경우에는 그 회복을 위해 조언 등도 하고 있다.

(2) (주)호조회보증은 계약한 호조회에 예상 못한 사태가 발생하여 할부판매법에 기초한 법정환급의 사태가 된 경우에는 공탁위탁계약에 따라 선수업무보증금의 공탁을 하고 있다. (주)호조회보증은 업계가 구축한 「호조회 가입자 의무 보증기구」나 「호조회 계약자 보호기구」와 연대하면서 법정환급에 이르기 전까지 원활한 경영권 양도나 이적에 의한 회원 인수를 실현하여, 회원(소비자)의 권리보호가 이루어지도록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4. 호조(상조)회 보증주식회사의 활동

(주)호조회보증은 계약한 호조회와의 의사소통의 원활화와 문제파악의 조기화를 이루기 위해 적극적으로 활동을 펼치고 있다.

(1) 각 호조회와 연 1~4회 경영상의 문제점, (주)호조회보증에서 호조회로의 정보제공 방법 등에 대해 의견교환을 하고 있다.

(2) 방문에 있어서는 (주)호조회보증에서 파악한 데이터 분석에 의한 해당 호조회의 종합평가자료를 사전에 제시하고, 강점, 약점을 정리한 「경영상 발견한 점」을 지참하여 의견교환을 하고 있다.

(3) (주)호조회보증과의 계약액이 많은 회사에 대해서는 임원이 방문하고, 특히 후계경영자와 대화를 하려고 노력하고 있다.

(4) (주)호조회보증의 종합평가 등은 확정 후 1주일 이내에 피드백하도록 하고 있다.

(5) 각종 정보를 제공함과 동시에 정보의 수집도 하고 있다. 예를 들면,

① (주)호조회보증에서 제공하는 정보 : 호조회의 경영상 도움이 되는 정보

② 호조회로부터 받는 정보 : 향후 비즈니스 확대의 방향, 공제나 보험사업에 대한 대응 등

(6) 보증기반의 강화를 위한 관점에서 리스크가 적은 미가입 호조회에 대해 계약을 권고하고 있다.

5. 호조(상조)회 보증주식회사의 업무방법서

(업무)

<제1조> 당 회사의 업무는 이 업무방법서의 정한 바에 따른다.

(업무의 운영)

<제2조> 당 회사가 정관에 기초하여 행하는 수탁사업은 선수업무 보증금 공탁위탁계약(이하 「공탁위탁계약」이라 함)의 위탁자를 공평하고 엄정하게 선정함으로써 선불식 특정거래업의 건전한 발전에 기여하도록 운영하는 것으로 한다.

(수탁사업 목적의 범위)

<제3조> 당 회사의 수탁사업은 할부판매법(이하 「법」이라 함) 제35조의3의61에 기초하여 허가를 받은 선불식 특정거래업자 또는 법 칙 제7조 제1항에 의해 허가를 받은 것으로 간주되는 선불식 특정거래업자로서, 당 회사에 출자한 자 또는 수탁사업기금을 예탁한 자가 행하는 선불식 특정거래업에 관련한 수탁사업으로 한다.

(수탁한도)

<제4조> 당 회사의 수탁한도는 직전 기준일 현재에 당 회사의 자기자본(자본금, 자본잉여금, 이익잉여금 및 기타 항목의 합계액을 말한다. 제5조에서도 같음) 및 수탁사업기금 합계액의 25배에 상당하는 금액을 초과할 수 없는 것으로 한다.

(일반 공탁자에 대한 수탁한도)

<제5조> 공탁위탁계약의 위탁자(이하 「위탁자」라 함) 1인에 관련한 당 회사의 수탁 한도액은 직전 기준일 현재에 당 회사의 자기자본과 수탁사업기금에 50% 이하의 율을 곱한 금액의 합계액에 상당하는 금액으로 한다.

다만 당해 한도액을 초과하는 부분에 상응하여 원칙적으로 유가증권이 담보로서 제공된 때에는 당해 한도액을 초과하여 수탁할 수 있는 것으로 한다.

(공탁위탁계약의 신청 및 체결에 관한 절차)

<제6조> 당 회사와의 사이에 공탁위탁계약을 체결하려 하는 자는 미리 당 회사가 별도로 정한 선수업무 보증금 공탁위탁 기본계약서에 다음에 열거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신청하는 것으로 한다.

다만 당해 신청자가 간주 허가 선불 특정거래업자인 경우에는 당 회사에 별도로 본조 본문에 준하여 정한 서류를 첨부하여 신청하는 것으로 한다.

1. 법인경력서(과거의 사업실적 개요 및 임원의 경력이 기재된 것)
2. 최근 결산기의 대차대조표, 손익계산서 및 주주자본 등 변동계산서
3. 법인 등기부 등본
4. 선불식 특정거래업의 허가를 받은 사실을 명확히 하는 서면
5. 기타 심사에 필요한 서류

② 당 회사는 전항의 서류 기타 필요한 사항에 대해 공정한 심사를 하여 적당하다고 인정된 경우에 신청자와의 사이에 선수업무 보증금 공탁위탁 기본계약(이하 「기본계약」이라 함)을 체결하는 것으로 한다.

(공탁위탁계약의 체결에 관한 절차)

<제7조> 전조의 기본계약을 체결한 자로, 당 회사와의 사이에 법 제35조의3의62에 준용하는 법 제18조의3에 정한 선수금 보전조치로서 공탁위탁계약을 체결하려는 자는 당 회사가 별도로 정한 선수업무 보증금 공탁위탁 개별신청서에 전조 제1항의 각호에 열거한 서류 중 당 회사가 필요로 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신청하는 것으로 한다.

② 당 회사는 공정한 심사를 하여 적당하다고 인정된 경우에 신청자와의 사이에 공탁위탁계약을 체결하는 것으로 한다.

(담보 및 보증인)

<제8조> 당 회사는 공탁위탁계약 체결시 선수업무 보증금 공탁위탁 계약액(이하 「수탁금액」이라 함)을 보전함에 필요한 금액의 유가증권 또는 부동산을 담보로서 제공하게 하고, 담보차입증 등의 서류의 차입을 받는 것으로 한다. 다만 담보

를 제공하게 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당 회사는 공탁위탁계약 체결시 원칙적으로 당 회사가 적당하다고 인정되는 보증인을 세우는 것으로 하고, 연대보증서의 차입을 받는 것으로 한다.

(위탁수수료)

<제9조> 위탁자는 당 회사에 대해 다음에 정한 금액을 당 회사가 정한 기일까지 지불해야 하는 것으로 한다.

1. 공탁위탁계약의 수탁금액에 대해 연이율 0.1%에서 1.0%의 범위 내에서 정한 위탁수수료를 계약기간에 곱해 산출한 위탁수수료

이 요율은 당 회사의 수익상황 등에 상응하여 이사회결정에 의해 변동시킬 수 있는 것으로 한다.

2. 공탁위탁계약 체결에 필요한 비용

(공탁위탁계약 체결 거부의 기준)

<제10조> 당 회사는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해서는 공탁위탁계약의 체결을 거부하는 것으로 한다.

1. 제6조 및 제7조의 제출서류에 중요한 것을 기재하지 않거나 또는 부실한 것을 기재한 자

2. 당 회사가 정한 심사기준에 합치되지 않는 자

3. 기타 당 회사의 내규에 의해 적당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된 자

(위탁자의 업무 및 재산상황의 조사방법)

<제11조> 당 회사는 위탁자의 경영에 관해 필요가 있는 때에는 위탁자의 설명을 요구하고, 필요서류(제3자 작성의 것을 포함)를 열람할 수 있는 것으로 한다.

② 당 회사는 공탁위탁계약에 관해 필요가 있는 때에는 입회조사를 할 수 있는 것으로 한다.

③ 당 회사는 선수업무 보증금 공탁위탁계약약관에 기초하여 공탁에 관해 필요가 있는 때에는 위탁자에게 설명을 요구하고 필요서류에 대해 조사를 할 수 있는 것으로 한다.

(책임준비금의 계상)

<제12조> 당 회사는 사업연도 말에 아직 경과하지 않은 공탁위탁계약이 있는 때에는 다음 각 호에 열거하는 금액 중 어느 것인가 많은 금액을 사업연도 별로 책임준비금으로 계상해야 하는 것으로 한다.

1. 당해 공탁위탁계약의 계약기간 중 아직 경과하지 않은 기간에 대응하는 위탁수수료의 총액에 상당하는 금액
2. 당해 사업연도에 수령한 위탁수수료 총액에서, 당해 수수료에 관련한 공탁위탁계약에 기초하여 공탁한 선수업무 보증금(당해 선수업무 보증금의 공탁에 의한 위탁자로부터의 수입금을 제외함), 당해 위탁수수료에 관련한 공탁위탁계약을 위해 적립해야 할 공탁준비금 및 당해 사업연도의 사업비 합계액을 공제한 잔액에 상당하는 금액

(공탁준비금의 적립)

<제13조> 당 회사는 결산기 별로 다음 각 호의 하나에 열거하는 금액이 있는 경우에는 공탁준비금으로서 당해 각 호에 열거하는 금액을 적립한다.

1. 공탁위탁계약에 기초하여 공탁해야 할 선수업무 보증금의 금액 중 결산기까지 그 공탁이 끝나지 않은 것이 있는 경우에는 그 금액
2. 공탁위탁계약에 기초하여 공탁할 의무가 생긴 것으로 인정되는 선수업무 보증금의 금액이 있는 경우에는 그 공탁해야 하는 것으로 인정되는 금액
3. 현재 선수업무 보증금의 금액에 대해 소송이 계속되고 있기 때문에 공탁하지 않은 것이 있는 경우에는 그 금액

(재산의 운용방법)

<제14조> 당 회사는 그 재산을 다음에 열거하는 방법에 의해 운용하는 것으로 한다.

1. 현금, 우편저금, 은행예금 또는 금전신탁
2. 국채, 지방채, 특수채, 금융채, 사채, 저당증권 또는 대부신탁의 수익증권
3. 투자신탁의 수익증권, 유가증권의 신탁 또는 주식

4. 외화예금(다만 외환 예약이 있는 것) 또는 엔화 표시 외국채
5. 재매입조건부 매매 운용

다만 제3호~제5호의 운용비율은 전 운용자산(위의 제1호~제5호 해당분)의 20%를 초과할 수 없는 것으로 한다.

6. 호조(상조)회 보증주식회사의 심사포인트

당사에서는 계약한 호조(상조)회 및 연결 대상의 관계회사 등의 결산서 데이터 등을 토대로 정량요인을 판정하고, 아울러 정성요인을 가미한 다음 종합평가를 결정하여, 그 종합평가에 따라 계약조건(담보율 및 보증인)을 결정한다.

1. 정량요인 항목

(1) 안정성

순자산 대 선수금 비율, 자기자본비율, 외부차입금 대 매출액 비율 등에 의해, 건전성, 변제능력 등을 판정한다.

(2) 수익성 · 효율성

매출액 경상이익율(단년도), 매출액 경상이익율(3년간 평균) 등에 의해, 현재 수익이 올랐는가 또는 안정적으로 수익을 올리고 있는가를 판정한다.

(3) 성장성

선수금 잔고 신장율, 매출액 신장율(3년간 평균) 등에 의해, 장래의 매출로 이어지는 선수금을 신장시키고 있는가, 또는 안정적으로 매출을 신장시키고 있는가를 판정한다.

2. 정성요인 항목

경영관리 상황, 내부관리 체제, 회원관리 상황 및 기업 기반의 안정 · 장래성 등 정량요인으로 반영되지 않는 항목을 평가한다.

3. 종합평가

정량요인에 정성요인을 가미하여 종합평가를 결정한다.

APPENDIX 3. 신용평가 3사 과거 10년 부도율

한국신용평가 공시 과거 10년 부도율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AAA	0.00%	0.00%	0.00%	0.00%	0.00%	0.00%	0.00%	0.00%	0.00%	0.00%
AA	0.00%	0.00%	0.00%	0.00%	0.00%	0.00%	0.00%	0.00%	0.00%	0.00%
A	0.00%	0.00%	0.00%	0.00%	0.00%	0.00%	0.00%	0.00%	0.00%	0.00%
BBB	0.00%	0.00%	0.00%	0.00%	1.52%	0.00%	0.00%	2.86%	2.78%	2.56%
BB	6.67%	0.00%	0.00%	0.00%	11.11%	9.09%	8.33%	9.09%	0.00%	10.00%
B	13.33%	0.00%	0.00%	0.00%	5.71%	5.71%	3.85%	6.67%	12.50%	0.00%
CCC	100.00%	0.00%	0.00%	0.00%	0.00%	20.00%	27.27%	12.50%	16.67%	0.00%
CC	-	-	-	-	-	-	-	-	-	-
C	0.00%	0.00%	0.00%	0.00%	-	-	42.86%	0.00%	50.00%	0.00%

주) 한국신용평가 홈페이지

한국기업평가 공시 과거 10년 부도율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AAA	0.00%	0.00%	0.00%	0.00%	0.00%	0.00%	0.00%	0.00%	0.00%	0.00%
AA	0.00%	0.00%	0.00%	0.00%	0.00%	0.00%	0.00%	0.00%	0.00%	0.00%
A	0.00%	0.00%	0.00%	0.00%	0.00%	0.00%	0.00%	0.00%	0.83%	0.00%
BBB	0.00%	0.00%	1.03%	0.00%	0.00%	0.00%	0.00%	0.00%	0.00%	3.57%
BB	24.00%	0.00%	4.35%	0.00%	9.09%	8.70%	13.33%	0.00%	0.00%	5.88%
B	18.18%	9.52%	5.26%	0.00%	10.00%	5.00%	3.45%	15.38%	0.00%	0.00%
CCC	50.00%	33.33%	0.00%	0.00%	0.00%	9.09%	0.00%	11.11%	50.00%	0.00%
CC	-	-	-	-	-	-	-	-	-	0.00%
C	0.00%	50.00%	-	-	-	50.00%	50.00%	0.00%	100.00%	100.00%

주) 한국기업평가 홈페이지

Nice 신용평가 공시 과거 10년 부도율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AAA	0.00%	0.00%	0.00%	0.00%	0.00%	0.00%	0.00%	0.00%	0.00%	0.00%
AA	0.00%	0.00%	0.00%	0.00%	0.00%	0.00%	0.00%	0.00%	0.00%	0.00%
A	0.00%	0.00%	0.00%	0.00%	0.00%	0.00%	0.00%	0.00%	0.85%	0.00%
BBB	0.00%	0.00%	1.23%	0.00%	1.59%	0.00%	0.00%	2.50%	2.33%	4.26%
BB	11.54%	0.00%	0.00%	0.00%	0.00%	9.09%	0.00%	0.00%	13.33%	4.17%
B	7.69%	7.69%	0.00%	0.00%	2.94%	0.00%	10.53%	10.00%	12.50%	0.00%
CCC	100.00%	50.00%	0.00%	0.00%	0.00%	10.00%	37.50%	16.67%	0.00%	0.00%
CC	-	-	-	-	-	-	0.00%	0.00%	-	-
C	0.00%	33.33%	0.00%	0.00%	0.00%	66.67%	66.67%	0.00%	66.67%	50.00%

주) Nice신용평가 홈페이지

한국신용평가, 한국기업평가, Nice 신용평가 공시 과거 10년
부도율 평균 및 표준편차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평균	표준 편차
AAA	0.00%	0.00%	0.00%	0.00%	0.00%	0.00%	0.00%	0.00%	0.00%	0.00%	0.00%	0.000
AA	0.00%	0.00%	0.00%	0.00%	0.00%	0.00%	0.00%	0.00%	0.00%	0.00%	0.00%	0.000
A	0.00%	0.00%	0.00%	0.00%	0.00%	0.00%	0.00%	0.00%	0.56%	0.00%	0.06%	0.002
BBB	0.00%	0.00%	0.75%	0.00%	1.04%	0.00%	0.00%	1.79%	1.70%	3.46%	0.87%	0.012
BB	14.07%	0.00%	1.45%	0.00%	6.73%	8.96%	7.22%	3.03%	4.44%	6.68%	5.26%	0.044
B	13.07%	5.74%	1.75%	0.00%	6.22%	3.57%	5.94%	10.68%	8.33%	0.00%	5.53%	0.044
CCC	83.33%	27.78%	0.00%	0.00%	0.00%	13.03%	21.59%	13.43%	22.22%	0.00%	18.14%	0.252
CC	-	-	-	-	-	-	0.00%	0.00%	-	0.00%	23.60%	0.275
C	0.00%	27.78%	0.00%	0.00%	-	58.34%	53.18%	0.00%	72.22%	50.00%	29.06%	0.298

APPENDIX 4. 타 공제조합 운영사례 : 콘텐츠공제조합

- 콘텐츠공제조합은 조합원간 상호부조적 효과를 기초로 하여 콘텐츠산업의 진흥 및 영세 콘텐츠사업자의 재무적 지원을 도모하며, 사업의 지속가능성이 함께 고려되어야 함.
- 공제조합의 운영상품은 보증상품과 대여(용자)상품으로 구분계리(semi-separate accounts)하여 관리함.
- (조합원)출자금과 (정부 및 대기업·금융기관)출연금에 의해 공제조합의 기금이 형성되며 운영손익은 연도 말에 구분계리하고 기금에 반영됨. 단, 정기적으로 납입하는 공제부금은 없음.
- 보증상품별 보증요율과 대여상품별 용자요율은 (유사 공제조합에 대해) 가격 경쟁적 요율로 설정되며, 이를 위해 소프트웨어 공제조합의 보증요율과 용자요율을 전략적으로 주로 벤치마크함.
- 보증상품별 보증요율은 신용등급과 무관하게 단일율(single rate)을 적용함으로써 우량사업장과 영세사업장간의 상호부조(cross subsidization, mutuality)효과를 제고함. 단, 신용등급별로 보증한도(출자금×최대보증배수)를 차별적으로 설정함으로써 상호부조와 같은 공공성 특성을 일정부분 보완함.
- 영세사업장(신용등급 CC, C)에 대해서는 “소액공제(한도 500만원)”사업을 실시하여 영세사업장에 대한 공제효과를 제고함. 이는 소프트웨어공제조합과 차별적 특성으로 평가됨.
- 대여상품별 용자요율은 자금 차입의 특성을 반영하여 신용등급별로 차등적 요율을 적용함. 즉, 보증상품의 상호부조효과는 배제함.
- 신용등급별로 용자한도(출자금×최대용자배수)를 차별적으로 설정함으로써 조합원의 자금 수요에 따라 출자금을 납입하도록 유도함.

- 신용등급은 보증상품과 대여상품 모두 9개로 분류함: AAA, AA, A, BBB, BB, B, CCC, CC, C

<보증 및 대여 상품 요율>

보증상품		보증요율	대여(용자)상품		요율				
일반	입찰보증	0.015%	대 여 자 금	계약진행	5.30~7.1				
	계약보증	0.345%			0%				
	하자보증	0.310%		신용운영자금	4.30%				
	선금급보증	0.475%			어음할인	4.30~5.9			
	지급보증	1.30%		0%					
	채무보증	1.00~1.50%		매출채권	4.30~6.7				
소 액	입찰보증	추가 보증분 : 보증요율×2	0%						
	계약보증		매출채권 보험청구권담 보부	4.30%					
	하자보증								
	선금급보증								
신용등급별 최대보증배수(안)									
신용등급	AA	AA	A	BBB	BB	B	CC	소액공제	
	A						C	CC	C
입찰보증	18	16	14	12	11	10	6	3	2
계약보증	18	16	14	12	11	10	6	3	2
하자보증	18	16	14	12	11	10	6	3	2
선금급보증	15	14	13	10	9	8	6	3	3
지급	10	9	8	7	6	5	4	3	2
채무보증	10	9	8	7	6	5	4	3	2
계약진행	10	9	8	7	6	5	4	3	2
신용운영자금	출자금의 70%								
어음할인	26	24	20	18	17	16	14	12	10
매출채권	26	24	20	18	17	16	14	12	10
매출채권 보험청구권담 보부	일석e조 보험금액의 100%								